

자료 A-30 (동아, 92.4.15.)

**민중정당인 규판 집행**  
 二黨基勳씨 무죄석방을 위  
 한 공중대회위원회(의원  
 장 咸世進 申 秀 燾 11개  
 재야단체의원과 대인선 1  
 백오명은 11월 13일 6시 15  
 분 서울중구 명동성당앞에  
 서 藥씨의 무죄석방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  
 핵을 강요할 것과 대하하  
 오후 7시 50분 5사진해산  
 했다. 대회는 이날 성명  
 에서 南基勳씨를 2명  
 이 藥씨가 부로했던 유근모  
 부대로 찾아가 당시 藥씨와  
 친하게 지냈던 徐기신 徐사  
 의 수첩에서 藥씨가 적어  
 준 자필주소, 전화번호 등  
 을 열거한 뒤 藥씨가 담신 수첩  
 한 장을 찢어 냈다. 藥씨의  
 계유리한 증거로 판단되고  
 의로 수사기록에서 제외시  
 졌다』고 주장했다.

**유서대판** 公正 재판  
**金추기경** 추기  
 1. 유서대판 公正 재판  
 2. 유서대판 公正 재판  
 3. 유서대판 公正 재판  
 4. 유서대판 公正 재판  
 5. 유서대판 公正 재판  
 6. 유서대판 公正 재판  
 7. 유서대판 公正 재판  
 8. 유서대판 公正 재판  
 9. 유서대판 公正 재판  
 10. 유서대판 公正 재판  
 11. 유서대판 公正 재판  
 12. 유서대판 公正 재판  
 13. 유서대판 公正 재판  
 14. 유서대판 公正 재판  
 15. 유서대판 公正 재판  
 16. 유서대판 公正 재판  
 17. 유서대판 公正 재판  
 18. 유서대판 公正 재판  
 19. 유서대판 公正 재판  
 20. 유서대판 公正 재판  
 21. 유서대판 公正 재판  
 22. 유서대판 公正 재판  
 23. 유서대판 公正 재판  
 24. 유서대판 公正 재판  
 25. 유서대판 公正 재판  
 26. 유서대판 公正 재판  
 27. 유서대판 公正 재판  
 28. 유서대판 公正 재판  
 29. 유서대판 公正 재판  
 30. 유서대판 公正 재판  
 31. 유서대판 公正 재판  
 32. 유서대판 公正 재판  
 33. 유서대판 公正 재판  
 34. 유서대판 公正 재판  
 35. 유서대판 公正 재판  
 36. 유서대판 公正 재판  
 37. 유서대판 公正 재판  
 38. 유서대판 公正 재판  
 39. 유서대판 公正 재판  
 40. 유서대판 公正 재판  
 41. 유서대판 公正 재판  
 42. 유서대판 公正 재판  
 43. 유서대판 公正 재판  
 44. 유서대판 公正 재판  
 45. 유서대판 公正 재판  
 46. 유서대판 公正 재판  
 47. 유서대판 公正 재판  
 48. 유서대판 公正 재판  
 49. 유서대판 公正 재판  
 50. 유서대판 公正 재판  
 51. 유서대판 公正 재판  
 52. 유서대판 公正 재판  
 53. 유서대판 公正 재판  
 54. 유서대판 公正 재판  
 55. 유서대판 公正 재판  
 56. 유서대판 公正 재판  
 57. 유서대판 公正 재판  
 58. 유서대판 公正 재판  
 59. 유서대판 公正 재판  
 60. 유서대판 公正 재판  
 61. 유서대판 公正 재판  
 62. 유서대판 公正 재판  
 63. 유서대판 公正 재판  
 64. 유서대판 公正 재판  
 65. 유서대판 公正 재판  
 66. 유서대판 公正 재판  
 67. 유서대판 公正 재판  
 68. 유서대판 公正 재판  
 69. 유서대판 公正 재판  
 70. 유서대판 公正 재판  
 71. 유서대판 公正 재판  
 72. 유서대판 公正 재판  
 73. 유서대판 公正 재판  
 74. 유서대판 公正 재판  
 75. 유서대판 公正 재판  
 76. 유서대판 公正 재판  
 77. 유서대판 公正 재판  
 78. 유서대판 公正 재판  
 79. 유서대판 公正 재판  
 80. 유서대판 公正 재판  
 81. 유서대판 公正 재판  
 82. 유서대판 公正 재판  
 83. 유서대판 公正 재판  
 84. 유서대판 公正 재판  
 85. 유서대판 公正 재판  
 86. 유서대판 公正 재판  
 87. 유서대판 公正 재판  
 88. 유서대판 公正 재판  
 89. 유서대판 公正 재판  
 90. 유서대판 公正 재판  
 91. 유서대판 公正 재판  
 92. 유서대판 公正 재판  
 93. 유서대판 公正 재판  
 94. 유서대판 公正 재판  
 95. 유서대판 公正 재판  
 96. 유서대판 公正 재판  
 97. 유서대판 公正 재판  
 98. 유서대판 公正 재판  
 99. 유서대판 公正 재판  
 100. 유서대판 公正 재판

자료 B-19

###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00인 선언

작년 5월, '백골단'에 의하여 꽃다운 한 젊은이가 타살된 사건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거대한 항의의 파도를 몰아왔다. 이때 '6공최대의 위기' 속에서, 검찰에 의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른바 '유서대 필사건'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며, 결국 범인으로 지목된 강기훈씨는 조사도 받기전부터 언론의 집중포화로 고립된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끝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강기훈씨에 대한 공소장은 유서를 대필했다는 시기는 커녕 장소와 경위조차 밝히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주장에서 불행하게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성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삼으려했다"는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당시의 억지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부도덕한 집권세력이 위기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젊은이의 명예와 인권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만큼은 진실이 밝혀지고 강기훈씨의 결백이 입증되어 결국 그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므로써 우리의 순진한 기대를 짓밟고 말았다.

재판부는 기각했어야 마땅한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막연하고도 부실한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채 자의적 결론만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홍성은씨의 법정증언 대신 검찰에서의 강압적 분위기와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채택해 버리므로써 범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팽개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1심판결은 '의심스러운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마저도 무시한 채 비약과 억측으로 일관된 검찰의 주장에 동조해버린 것이다.

이제 유서사건은 다시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법원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강기훈씨의 유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과 인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 사건에 관한 한 사법부가 부도덕한 공권력과 공범관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서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강기훈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일 수 없다. 그것은 공권력이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가 자신의 독립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양심과 진실의 궁극적 승리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강기훈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무고한 개인의 양심과 결백이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이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첫째, 강기훈씨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짓밟힌 그의 명예와 인권은 즉각 회복되어야 한다.
- 둘째,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보신적 태도를 벗어나 오직 엄밀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이 만약 검찰의 사실오인이 아니라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조작된 것이라면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넷째, 검찰은 최근 드러난 김기설씨 필적은폐행위에 대해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강기훈씨의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했고 1심재판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이 마르도록 보증했던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은 허위감정비리의 장본인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또한 유서를 강기훈씨가 썼다고 강변해온 검찰이 유서와 유사한 김기설씨의 필적을 은폐해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제 검찰은 한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양심과 비양심,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끝내 양심과 진실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강기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1992. 4. 16

증교계(87명)

불교(15명)

지 선(스님, 통불협 의장)	진 관(스님, 정토승가회 의장)	종 대(스님, 천은사)
법 안(스님, 정토승가회)	지 운(스님, 승가대 동문회)	종 립(스님, 혜림정사)
법 성(스님, 대승원 원장)	송연택(통불협 집행위원장)	조성렬(통불협 정책실장)
박정기(유가협 회장)	이은영(외대 교수)	유정길(한국사회연구소)
이문옥(전 감사원 감사관)	윤창화(민족사 사장)	김성제(청년여대회 회장)

천주교(28명)

김승훈(신부)	김병상(신부)	함세웅(신부)	문정현(신부)	이수현(신부)
안충석(신부)	류강하(신부)	송기인(신부)	박승원(신부)	장용주(신부)
호인수(신부)	남국현(신부)	연제식(신부)	박찬길(신부)	배종호(신부)
허철수(신부)	배은하(신부)	박대웅(신부)	오용호(신부)	
이돈명(천정련 인권위원, 변호사)	유현석(천정련 인권위원, 변호사)	윤순녀(천정련 인권위원)		
최병모(천정련 인권위원)	김형태(천정련 인권위원)	이성재(천정련 인권위원)		
최동배(천정련 인권위원)	장주영(천정련 인권위원)	최옥순(천정련 인권위원, 수녀)		

기독교(23)

강신석(목사, 광주인권위 위원장)	강원하(목사, NCC인권위원)	금영균(목사)
김경남(NCC인권위 사무국장)	김경식(목사, NCC인권위원)	김동완(목사, 형제교회)
김영주(목사, 통일사업국장)	김제민(목사, 대구인권위 위원장)	김찬국(목사, 연세대 부총장)
박광재(목사, NCC인권위원)	박종기(신부, NCC인권위원)	박형규(목사, 제일교회)

백찬홍(EYC총무)	송봉규(목사, NCC인권위원)	안성례(장로, NCC인권위원)
오충일(목사)	은명기(목사)	이근복(목사, 목협총무)
이명남(목사, NCC인권위원)	장기천(감독, 동대문교회)	정영문(목사, NCC인권위원)
허종현(신부, KSCF총무)	현순호(목사, 대구인권위 총무)	

성공회(21명)

박종기(신부)	박경조(신부)	이대용(신부)	윤정현(신부)	유요선(신부)
최은식(신부)	박노근(신부)	천용욱(신부)	안봉식(신부)	이수상(신부)
김홍일(신부)	양권석(신부)	이재복(신부)	김기석(신부)	주성식(신부)
강관석(신부)	이철우(신부)	최상석(신부)	장기용(신부)	정길섭(신부)
장광하(신부)				

학 계(62명)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승규(전주우석대)	강정구(동국대)	고홍식(전북대)
권기홍(영남대)	김민웅(광주대)	김상곤(한신대)	김상기(경북대)	김세균(서울대)
김의수(전북대)	김정기(서원대)	김진균(서울대)	김진철(동국대)	김태준(동국대)
김하림(조선대)	나간채(전남대)	문병란(조선대)	박거용(상명여대)	박노영(충남대)
박대석(목포대)	박동혁(전 덕성여대)	박영근(중앙대)	박영일(인하대)	박재우(외국어대)
박정원(상지대)	박종주(원광대)	박진도(충남대)	박태영(원광대)	박현채(조선대)
배동인(강원대)	배영동(전북대)	배영목(충북대)	서창호(목포대)	성인수(울산대)
손명환(충남대)	송기숙(전남대)	신현직(계명대)	심희기(영남대)	안현수(경기대)
양재혁(성균관대)	염무웅(영남대)	오상훈(부산대)	위상복(전남대)	유초하(충북대)
윤세준(연세대)	이경수(인제대)	이광우(전남대)	이병천(강원대)	이현창(경기대)
임종대(한신대)	장상환(경상대)	장임원(중앙대)	정석종(영남대)	정초시(청주대)
정하영(이화여대)	조원래(순천대)	주경복(건국대)	최갑수(서울대)	최유진(경남대)
하일민(부산대)	황현기(경기대)			

법조계(변호사)(30명)

고영구	김갑배	김동균	김선수	김인만	김진국	김한주	김향동	김형태	문병호
문재인	박성민	박인제	박주현	안영도	유선호	윤종현	이경우	이덕우	이상수
이양원	이오영	이원영	이재명	이종걸	정미화	천정배	하영석	홍성우	황인철

정 계(22명)

민주당(21명)			
고광진(지구당위원장)	김달룡(당무위원, 당선자)	김병오(당선자)	
김상현(당무위원, 당선자)	김영진(국회의원)	김종완(국회의원)	

문동환(국회의원)	박계동(당선자)	박상천(국회의원)
박석무(국회의원)	박영숙(최고위원)	신계륜(당선자)
원혜영(당선자)	유인태(당무위원, 당선자)	이길재(대의협력위원장, 당선자)
이부영(최고위원, 당선자)	이해찬(국회의원)	임채정(당무위원)
장기욱(당기위원장, 당선자)	장영달(통일국제위 부위원장, 당선자)	제정규(당선자)

신정치개혁당  
박찬중(당 대표, 국회의원)

언론출판계(4명)

김중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겨레신문 이사)	송건호(한겨레신문 회장)
김승균(출판인)	나병식(출판인)

문화예술계(146명)

강신형(시인)	강요배(미술)	강형철(시인)	강혜숙(춤)	고 은(시인)
공광규(시인)	곽재구(시인)	구중서(문학평론가)	김규동(시인)	김남일(소설가)
김남주(시인)	김명인(문학평론가)	김명환(시인)	김사인(시인)	김상철(음악)
김서정(소설가)	김성동(소설가)	김영현(소설가)	김용태(미술)	김용택(시인)
김윤수(미술)	김윤환(시인)	김용교(시인)	김인순(미술)	김재용(문학평론가)
김정환(소설가)	김정현(미술)	김정현(영화)	김주대(시인)	김진경(시인)
김창규(시인)	김창남(음악)	김채현(건축, 사진, 춤)	김태수(시인)	김태정(시인)
김하기(소설가)	김한수(소설가)	김형수(시인)	남정현(소설가)	노동은(음악)
도종환(시인)	문대남(시인)	문무명(극, 국)	문호근(음악)	민 영(시인)
박공배(시인)	박광수(영화)	박남원(시인)	박선옥(시인)	박영근(시인)
박용수(한글학자)	박종권(시인)	박 철(시인)	방현석(소설가)	배성호(시인)
백낙청(문학평론가)	백진기(문학평론가)	성완경(미술)	손경목(문학평론가)	손장섭(미술)
송 영(소설가)	송기원(시인)	송제홍(시인)	신경림(시인)	신동원(시인)
신학철(미술)	심광현(미술)	심정수(미술)	안도현(시인)	안종관(희곡작가)
양문규(시인)	오봉옥(시인)	오우열(시인)	오철수(시인)	원동석(미술)
원명희(소설가)	원창연(음악)	위기철(소설가)	윤범모(미술)	윤재철(시인)
윤정모(소설가)	윤중호(시인)	이 적(시인)	이강산(시인)	이건용(음악)
이경자(소설가)	이규배(시인)	이기형(시인)	이남희(소설가)	이병훈(문학평론가)
이산하(시인)	이선관(시인)	이소리(시인)	이승철(시인)	이시영(시인)
이영철(시인)	이오덕(아동문학가)	이원섭(소설가)	이은봉(시인)	이은식(시인)
이인휘(소설가)	이장호(영화)	이재무(시인)	이재현(문학평론가)	이철송(시인)
인병선(시인)	임동확(시인)	임옥상(미술)	임진택(극, 국)	임현영(문학평론가)
장선우(영화)	전무용(시인)	정도상(소설가)	정동석(건축, 사진, 춤)	정동영(시인)

정수남(소설가)	정수리(소설가)	정우영(시인)	정원도(시인)	정종목(시인)
정지영(영화)	정태춘(음악)	정화진(소설가)	정희성(시인)	조건영(건축, 사진, 춤)
조기원(시인)	조선희(소설가)	조성국(극, 국)	조태일(소설가)	주완수(미술)
주제완(미술)	차정미(시인)	채희완(극, 국)	천규석(극, 국)	천승세(소설가)
최두석(시인)	최민화(미술)	최유찬(문학평론가)	최인석(소설가)	최일남(소설가)
최하림(시인)	한 들(음악)	함일선(건축, 사진, 춤)		현기영(소설가)
현준만(문학평론가)	홍일선(시인)			

사회단체(52명)

강기중(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계훈제(전국연합 지도위원)	고광석(전민련 의장)
고애선(기독여민회 공동대표)	곽병준(서울민통련 고문)	권낙기(민가협 공동의장)
권영길(언노련 위원장)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권중대(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처홍(민가협 공동의장)	김광원(동아일보 노조위원장)	김명식(전국연합 자통위 부위원장)
김병걸(서울민통련 고문)	김정남(서울민통련 이사장)	김정숙(민가협 공동의장)
김택성(서울민통련 부의장)	김현준(전국연합 사무처장)	김희선(전국연합 자통위 위원장)
남영진(한국일보 노조위원장)	마권수(KBS노조위원장)	박용길(민가협 공동의장)
배종렬(전농의장)	백기완(전국연합 지도위원)	변상욱(CBS노조위원장)
변형운(경실련 공동대표)	선명규(서울민통련 지도위원)	신대균(경실련 조직위원장)
신창균(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건모(병원노련위원장)	예춘호(한사연 이사장)
오정수(서울민통련 고문)	유기홍(민청련 의장)	유춘지(여성단체연합 회계)
윤석인(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윤영규(전국연합 공동의장)	이미경(여성단체연합 부회장)
이영순(여성단체연합 부회장)	이완기(MBC노조위원장)	이현배(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효재(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이희수(서울민통련 지도위원)
인재근(서울민통련 상임부의장)	임종인(전국연합 인권위 부위원장)	임종철(서울민통련 지도위원)
장명국(노동운동가)	정동익(서울민통련 지도위원)	조화순(여성단체연합 회장)
채만수(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이사)	최규성(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최민화(민족민주운동연구소장)	최장학(서울민통련 의장)	한명숙(여성단체연합 부회장)

(이상 403명)

자료 B-20

안녕하십니까?

지금 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커다란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강기훈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심과 건전한 양식의 수준을 심판하는 중요한 재판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을 예의주시해 온 우리는 그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유일한 증거가 '필적'이었던 바, 우리가 아무리 유심히 보아도 결코 같을 수 없는 유서 필적과 강기훈씨 필적을 "같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세인의 양식을 납득시킬 수 없는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를 놀라게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의 주인공인 김형영씨가 강기훈씨 필적을 감정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깊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기훈씨가 당연히 무죄석방되리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최소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대원칙마저 무시되어버린 1심재판 결과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양식의 승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법정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진실과 양심을 엄정히 가려주심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도를 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2년 4월 15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장 귀하

소속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명 김수환

유서사건 공정재판 촉구 서명자 명단

- 계훈제(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권영길(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김대중(민주당 대표최고위원)
- 김성수(대한상공회 서울고구장)
- 김수환(천주교 추기경)
- 김진균(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서울대 교수)
- 김찬국(연세대 부총장)
- 김형태(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 박형규(KNCC인권위원, 제일교회 목사)
- 백기환(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 송건호(한겨레신문 회장)
-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주지)
- 신창균(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이돈명(전 조선대 총장, 변호사)
- 이부영(민주당 최고위원)
- 이영희(전국고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이우정(민주당 최고위원)
- 이효재(전 여성단체연합회장)
- 임택진(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 장기천(감독, 등대문교회 목사)
- 장울병(성균관대 총장)
- 조화순(여성단체연합회장, 목사) \*재판부에 직접 우송
- 한승헌(변호사)
- (가나다순)(23명)

☐자료 다-6-1 (공판기록 3853~3854)

서울고등법원  
**공판 조서**

제 6 회

사 건 92 노401 자살방조 등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판사 윤 석 종  
판사 부 구 옥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피 고 인 강 기 훈  
검 사 신상규, 윤석만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기 일 1992. 4. 20. 14:00  
장 소 제 309 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출석·퇴정  
각 출 석  
각 출석·퇴정

재판장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도중, 변호인들이 임의로 퇴정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임의로 퇴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법원 및 상소 법원 고지.

1992. 4. 20.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자료 다-6-1 (공판기록 3855~3927)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92 노 401 가. 자살방조  
나.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강 기 훈 (姜基勳, 일명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총무부장  
1964. 3. 29.

주 거 서울  
본 적 서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신상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변호인 변호사 별지 변호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20. 선고  
91고합1126, 132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에 처한다.  
원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

(1)항소이유 제1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그 공소장에는 김기설이 언제 어떻게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고인은 언제 어떤 경위로 그 자살의도를 알게 되었으며 유서대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은 어떠한지의 점 등에 대해 그 구체적 상황 등이 적시되어야 하는 데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러한 사정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고 1991. 4. 26.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

건이 발생할 무렵 김기설이 분신자살할 결심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기재되었을 뿐인데 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대필 사실만으로 바로 자살방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에는 범죄가 필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 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또한 이 부분 공소장에는 막연히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부재증명 등에 관한 무죄의 항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도 위반된 것이므로 이점에서 판결로서 공소기각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항소이유 제2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죄에 관하여는 그 구성요건적 범죄사실이라 할, 첫째 김기설이 분신자살하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 피고인이 그 자살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품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원심이 그 증거로서 인용한 것들은 조작된 자료들로서 특히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는 그 접수과정에서 자의적인 접수 생략,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감정사항 변경, 회보누락, 감정방법의 비과학성(특히 'ㅎ'의 필법 누락) 감정의뢰된 필적들에 관한 작성시기의 현격한 차이 무시, 그 필적을 기재한 사람수에 대한 착오 내지 무지, 주심감정인이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어 그 감정인으로서의 도덕적 기초를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아무런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감정인이 수시로 검사와 상의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11-1호(김기설의 수첩,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가 조작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서의 기재도 수첩 본래의 완전한 형태나 제반형상에 관한 과

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것이고, 이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 역시 동인이 변호인 제출의 증제8호(김기설의 노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수첩은 김기설이 생전에 사용하던 수첩 그대로임이 명백하고, 검사 제출의 증제7-1호(홍성은의 수첩)에 피고인이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홍성은의 검찰 제2회 진술은, 피고인이 왜 어떤 경위로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과 동인의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의 진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유서 2장(검사 제출의 증제1-6호)을 김기설이 직접 썼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서 그 관계자의 증언들에 의하여 모두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원심은 일방적이고도 근거가 박약한 논리를 내세우거나 검사에게 입증책임 있음을 무시하고 이에 관한 필적감정 결과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배척하는 반면 오히려 위 믿을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그릇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그 주장의 증거판단을 항소이유 제3점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포함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본원은 그 제3점까지를 제2점에 포함시켰다).

(3) 항소이유 제3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남북한이 이미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고, 남과 북 사이에 국가간의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발효되어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나 이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규범력을 상실하여 가벌성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모두 끝난 사안으로서 위 자살방조에 관한 공소사실에 장식적으로 덧붙여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원심판결

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은 1985. 11. 18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 방화사건을 주동하여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을 뿐더러 단국대학교 재학 당시 이미 약칭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래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각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좌경폭력 혁명분자이고, 이 사건에서는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야기된 극도의 사회혼란을 이용하여 민중봉기를 유도, 기폭제로 삼기 위하여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주어 그의 자살을 부추긴 점에서 목적을 위하여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도 겉으로는 도덕성 운운하면서 내심으로는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등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

첫째 형법 제 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이를 실행케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에겐 예컨대 총, 칼 등을 빌려준다거나 독약을 제조해 주는 등의 방법이거나, 조언, 격려 등의 방법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기타 그 방법의 여하를 묻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자살방조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공소장 적시 상황에서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이 그 자살결행을 용의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소장 적시의 리포트 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그 내용이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유서내

용에 의하여 위 김기설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도 서준식, 김선택 등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 전민련, 이하 전민련이라 부른다) 등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動因)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케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공소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에 자살방조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변호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둘째 위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가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유서 작성 등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유서대필이 문제로 되는 한 이는 자살자와 유서대필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결국 그 유서가 대필된 것인지 여부가 그 범죄성립의 핵심적인 사항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살이 이미 실행되어 버렸고 그 유서가 압수되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은 그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증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릴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서대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재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현장부재 등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거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어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2점

(가) 김기설의 분신자살경위

피고인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홍성은, 장병호, 김정렬, 이재구, 이영미, 박경민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안혜경, 이보은, 이지혜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는 일부진술, 서울형사지방법원(91초 1844사건)의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검사 작성

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홍성은, 이영미, 장병호, 김정렬, 이재구, 장병호, 장병숙, 이보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임근재, 양경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홍성은, 이지혜, 송국영, 이보은 작성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의 각 진술 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현장검증조서 및 의사 김승호 작성이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압수된 유서 2장(증제1-6호)의 현존 및 기재를 종합하면, 김기설은 1965. 11. 27.생으로서 6세 무렵에 생모를 여윈 채 아버지와 계모슬하에서 성장하였고 경기 파주군 소재 광탄상고 1학년때 부, 모 슬하를 떠나 상경하여 서울의 큰누나 김화자 집에서 그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한때 대학입학시험자격 검정고시 준비를 하다가 1985. 12.경부터 1988. 6.경까지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 1989.경부터 성남민주화청년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90. 12. 말경부터는 서울 종로5가에 사무실을 둔 소위 재야운동권 단체인 전민련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면서 1991. 4. 26.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되어 전국적인 시위열기가 고조되고 재야운동권 인사들에 의하여 그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면서 전민련도 그 대책회의에 참가하게 되자 전민련 파견자로서 위 대책회의 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연세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김기설은 처음 전민련 총무국에 근무할 때에 실제와는 다르게 학력을 속여 한양대학교 3학년 중퇴자로 행세하였고 이미 그 전부터 그 총무국에 근무하던 피고인과 일상접촉을 통해 친하게 되자 1991. 1. 20.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이영미의 소개로 동 이영미의 대학동창생인 홍성은을 소개받아 동 홍성은과 교제하기에 이르렀는데 김기설은 홍성은에게도 한양대학교 3학년 중퇴자로 행세한 사실, 그후 김기설은 홍성은과 주 1, 2회 가량 만나 교제하면서 같은 해 3. 17. 함께 춘천 청평사에 놀러갔을 때에는 귀로에 춘천시내 식당에서 홍성은에게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였고(그달 말경에는 중학교 동창생인 조원혁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중순경에는 둘째 누나인 김화경에게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여 그 누나들이 결혼하면 방을 얻어 주어야겠다고 상의하기도 하였다), 홍성은도 위 청혼에 대해 대답은 하지 않

았으나 같은 해 4 말경에서 5 초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사실,

한편 김기설은 한국방송통신대생으로서 같은 대학 학생들이 모임 '소리새벽' 회원인 박경민으로부터 위 모임의 진로를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5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박경민, 송국영, 이지혜 기타 위 모임회원들과 첫모임을 갖고 자기소개와 모임의 진로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김기설은 위 모임의 지도자로 추대되어 있는 셈이고 그 회원들보다 대체로 6, 7세 정도 나이가 많은 사회인인데도 그 모임 도중에 위 모임의 성격이나 체신에 걸맞지 않게 두 차례나 술을 사오게 하여 낮부터 술을 많이 마셨는가 하면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회원들과 식당, 술집 등을 옮겨다니며 대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끝내는 여자들인 이지혜, 송국영과 함께 술을 사들고 백제장여관에 들어가 그곳에서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김기설은 노래를 하는가 하면 가족들 이야기 등 신변잡담을 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울기까지 하면서 '5.8에 자살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 하겠고 처음하는 말이다'라고 2-3일 후인 5.8에 자살하려는 결심을 토로하였고 그때 왜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의문이 난다는 취지로 물어보는 송국영의 따귀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개새끼들' '죽는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며, 5.6 오후까지 함께 있으면서 자살을 만류하는 이지혜에게 다시 5.8 자살할 계획을 확인해 준 사실,

또한 김기설은 같은달 7.19:30경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위 홍성운을 만나 '분신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분신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같은가'라는 등의 심각한 말을 하여 홍성운은 그 전날과 그날 김기설이 두 차례 전화통화할 때에도 '당분간 못 만날것 같다. 잘 살아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때는 소위 강경대군 치사 사건으로 잇다른 분신자살이 있었던 사회적 상황여서 김기설이 자살을 하려는 것으로 눈치채고 울면서 '우리는 왜 이제까지 만났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나'고 애원조나 항의조 등 방법으로 자살하

려는 결심을 돌리도록 노력하였으나 김기설은 끝내 그날 22:30경 홍성운을 부근 아현전철역 프랫홈에 밀어 넣다시피 들여보낸 뒤 홍성운가 헤어져 버린 사실,

또한 이지혜와 박경민 등이 전민련측에 알리고 전민련을 통하여, 김기설이 위와같이 이지혜, 송국영에게 같은 해 5.8 자살할 계획을 토로한 사실을 알게 된 임근재(동인은 김기설, 장준호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74의 2에 소재한 강병숙의 집 옥상방을 빌려 함께 자취하고 있었다)는 5.7. 22:00경 그 자취방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 자취방으로 들어오는 김기설을 만나 부근 포장마차로 데려가 술을 마셨고 임근재의 전화연락으로 그곳에 온 전민련 관계자인 이보은(여)과 함께 그곳에서 대학로에까지 가서 함께 지냈는데 김기설은 5.8. 05:30경 전화를 걸겠다고 그곳 공중전화 박스로 간 뒤 그곳에서 잠적하였고 그날 06:30경에는 홍성운에게 신촌 이대 부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뒤 신나 두통을 신문에 싸들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 올라가 그날 08:07경 신나를 몸에 뿌리고 라이타불을 붙인 뒤 약16미터 아래 땅바닥에 떨어져 분신자살하였고 그때에 이 사건 유서 2장이 김기설이 위 옥상에 벗어놓은 상의에 넣어져 있는 채 발견된 사실 및 그 유서내용은 공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바, 이 사건 유서 2장 중 부모에 대한 유서는 김기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 1년 중퇴 후부터 의지를 해 왔고 특히 자살 7개월전경 금 2,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공판조서 234정)483) 당연히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을 큰누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특히 어버이날을 골라 부모에게 인륜상 차마 하여서는 안될, 건전한 일반인이 가장 불효라고 보는 자살을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한 효도를 마지막으로 하려 한다고 하고, 그 자살 후의 처리를 부모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말미에 그 이름만을 기재하고 다른 존칭을 쓰지 않으면서 그 제3자에게는 '제 목숨 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유서내용 자체로 김기설 본인이 쓴 마지막 유서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점에서 김기설은 이

483) 총자료집 I 책 95쪽 참조.

지혜 등을 만난 1991. 5. 5. 전에 이미 자살을 계획한 뒤 5.5에 이지혜 등을 만났을 때 내심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뒤 이지혜 등에게 5.8 자살계획을 털어놓은 것이지 그날 즉흥적으로 자살을 하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5.8 자살을 고집할 사정이 없는데도 결혼까지 염두에 둔 여자의 간절한 만류까지 끝내 뿌리치고 이지혜 등에게 공언한 대로 5.8 쫓기듯이 분신자살을 한 점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뛰어넘은 자살로서 그 자체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련에서 자살하려 한 것임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첩의 조작

위 장병호, 김경철, 홍성운의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까지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체에 의하면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후 김기설의 유해가 안치된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영안실 내에서 그날부터 김기설의 둘째, 셋째 누나들에 의하여 이 사건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1991. 5. 10.에는 김기설의 셋째 매형인 장병호가 그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 사망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이 있는 책표지 2장(검사 제출의 증제3-1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날 김기설이 소속되었던 전민련 관계자에 대하여 김기설의 평소 필적자료를 요구하여 전민련 측에서 같은 달 11. 김기설이 기재하던 일지라고 하면서 업무일지(검사 제출의 증제5-1호)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검찰은 같은 달 16.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위 홍성운이 김기설의 분신자살전날 김기설로부터 동인의 수첩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전민련측에 그 수첩을 교부해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전민련 관계자에게 그 수첩의 제출을 요구하여 전민련 측에서는 같은 달 20. 그 수첩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첩이 바로 김기설이 홍성운에게 주고 홍성운이 전민련에 전달한 그 수첩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수첩 및 이와 동일한 형태의 것인 홍성운의 수첩(검사 제출의 증제7-1호)의 각 형상,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형영 작성의 1991. 5. 25.자 및 같은 달 29.자 각 감정서(위 각 감정서들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같이 각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수첩의 절취선 일치 여부 감정에 관한 신빙성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에 첨부된 각 확대사진(수사기록 제562, 590정)의 각 영상, 증인 김형영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304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첩은 원래 전민련에서 '조국은 하나'라는 표제로 1991년분 수첩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서 원래는 앞 표지, 누런색의 앞 간지(백지) 1장, 속표지(백지, 조국은 하나) 1장, 1991. 1992(6월까지) 달력 외에 월, 일자(요일), 시간이 각 인쇄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일자별 종합 또는 시간별로 기재할 수 있는 일지식의 메모용지와 그 다음에 민족민주운동단체 주소록, 전민련 창립선언문, 전민련 규약 등이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인쇄된 규약 끝부분은 그 부분 종이 한 장의 전면까지로 끝나고 그 인쇄된 규약 끝부분의 뒷면(반장), 그 다음의 앞뒷면 완전한 4장과 그 다음장 한장의 앞면까지는 가로줄이 쳐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용지, 그 전화번호 기재용지 마지막면 1장의 뒷면(반장)과 그 다음장부터 앞뒷면 완전한 3장까지는 세로, 가로로, 직각으로 일정한 줄이 쳐져 있는 모눈종이가 있고 그 다음 누런색의 뒷간지(백지) 1장과 수첩 뒷표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첩이 원심법정에 제출될 때까지의 형태는 월별, 일자(요일)별, 시간별로 인쇄되어 있는 일지식 메모용지 부분 중 5.5까지의 부분은 그 수첩 표지와 붙어 있으나 그 다음 장(4. 29.부터 5.5까지 시간별로 인쇄되어 있는 메모용지)부터의 위와 같은 일지식 메모용지와 인쇄된 민족민주운동단체 주소록 중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 협의회까지의 주소록이 인쇄되어 있는 면까지의 부분 한 묶음, 그 다음장 인쇄된 주소록 부분부터 뒷표지 앞의 뒷 간지 부분까지의 한 묶음 등 두 묶음이 각기 수첩본체에서 한 묶음씩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뒷 부분 한 묶음 중 위 전민련 규약 맨 끝부분이 인쇄되어 있는 장의 앞면과 그 뒷면 전화번호 기재용지 한장은 떨어져 나가 없어졌고, 전화번호 기재용지의 앞·뒷면에 각 성명과 각 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용지 3장이 각기 수첩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순서를 알 수 없이 끼워져

있고, 전화번호 등이 실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 기재용지 앞·뒷면 1장과 앞면은 전화번호 기재용지 뒷면은 모눈종이로 된 용지 1장 모두 2장이 서로 이어진 채 수첩 본체에 붙어 있었고(그후 위 2장도 1심 재판 도중 어떤 경위로인지 수첩 본체에서 떨어져 현재는 위 2장도 수첩에서 분리된 상태이다) 그 뒷장에는 누런색의 간지 두장이 떨어져 있는 뒷부분 한 묶음에 붙어 있으며(위 홍성은의 수첩의 원래 형상과 비교하면 뒷 간지 한장은 원래 뒷 표지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간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뒷 표지에서 떨어져 있어 간지처럼 되어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한 위 판시 제본순서로 보아 떨어져 나가 없어진 전민련 규약 끝부분이 인쇄되어 있는 장을 기준으로 그 장이 첫째 장이고, 그 뒤 둘째 장부터 넷째 장까지 앞뒤 완전한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이 떨어져 나갔고, 다섯째 장(앞·뒷면 완전한 전화번호 기재용지), 여섯째 장(앞면 전화번호 기재용지, 뒷면 모눈종이)이 수첩에 붙어 있는 채 남아 있고, 일곱째 장부터 아홉째 장까지 모눈종이 3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서 이 사건 수첩 본체에 붙어 있었던 위 다섯째 장, 여섯째 장의 전화번호 기재용지와 모눈종이 2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 네장이 각기 떨어져 나가 첫째 장(전면 인쇄된 규약, 뒷면 전화번호 기재용지) 한장은 완전히 없어졌고, 원래대로라면, 실제로 각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끼워져 있는 3장이 순서는 알 수 없으나 그 떨어져 나간 둘째 장부터 넷째 장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의 위 2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뒷부분에서 간지 앞까지 앞 뒤 완전한 모눈종이 석장이 떨어져 없어졌음이 명백한 사실, 그런데 위 수첩에 붙어 있었던 다섯째 장, 여섯째 장 2장을 기준으로 그 다섯째 장 앞 부분과 여섯째 장 뒷 부분이 각기 떨어져 나간 용지의 잔류 부분이 수첩 본체를 제본할 때 사용한 접착제 조각과 함께 붙어 있으나 뒷부분 잔류부분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맨 뒷부분에서 떨어져 없어져 버린 모눈종이 3장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다섯째 장 앞부분 잔류부분을 보면 위 감정서(수사기록 530정)의 잔류부분표시 (1), (2), (3)은 각기 다른 용지의 잔류부분임이 명백하고 현재 떨어져 끼워져 있는 3장의 전화번호

기재용지의 절취선은 위 감정서 표시(위 530정) 1, 2, 3(왼쪽 사진의 왼쪽 부분 1, 2, 3, 오른쪽사진의 오른쪽 부분 1, 2, 3)인데 위 잔류부분 (1), (2), (3)과 전화번호 기재용지 1, 2, 3의 절취면을 서로 완전히 바꾸어 가며 맞춰보아도 같은 높이 부위에서 각 어느 것이나 서로 겹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떨어져 없어져버린 첫째 장(전면 인쇄된 규약, 뒷면 전화번호 기재용지) 한장까지 포함하여 대조하여 본다 하더라도 위 (1), (2), (3)장의 잔류부분과 1, 2, 3 석장의 찢어져 끼워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용지가 어느 것이나 서로 겹치는 한 적어도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 중 2장은 이 사건 수첩에서 원래 떨어져 나간 전화번호부 용지가 아닌 것임이 또한 명백하므로 이는 원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끼워져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5. 25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의 여러 곳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문자 밑에 강한 필압형태가 나타나 있으나 그 어느 부분에도 아래 부분(뒷장)에 나타나 있어야 할 필압흔적이 필흔재생기에 의하여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위 수첩을 김기설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전민련에 제출한 홍성은의 검찰 제2회 이래 원심법정에까지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원심판결문 41정 여덟째줄부터 42정 아래에서 셋째줄(484)까지의 사실 즉 전화번호 기재용지 등에 기재된 글자의 필기구와 색깔이 원래와 다른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다), 중인 안혜정의 당시법정에서의 진술과 불광전화국장 작성의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첩전화번호 기재용지에 적혀 있는 안혜정은 김기설의 광탄중학교 동창생으로서 여자 이긴 하나 서로 절친하게 지내오면서 김기설이 1991. 4. 초순경까지 위 안혜정이 근무하고 있었던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과로 수시로 전화를 하곤 하였고 그 전화번호는 386-3766인데도 위 전화번호 기재용지 안혜정란에는 이와 다르게 그 전화번호가 386-2776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같이 위 김형영 작성의 1991. 5. 25자 및 5. 29자 감정서(뒤에서

484) 총자료집 II책 333쪽 참조.

판단하는 바와같이 그 신빙성이 있음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수첩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고 피고인의 필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첩은 원래 김기설이 남긴 수첩 그대로가 아니고 김기설의 분신자살 후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첫째로 위 감정인 김형영은 이 사건 수첩의 절취선 감정에서 그 절취된 면수가 몇장인지 그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몰랐을 뿐더러 원래대로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홍성은의 수첩을 참고조차 하지 않고 감정을 한 것으로서 이를 믿을 수 없고, 또한 홍성은의 위 진술(당심인용의 원심판시 진술)부분은 동인이 변호인 제출의 증제8호 중(김기설노트)에 관하여 사실과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하는 등으로 그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음을 드러낸 점으로 보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다루고 있으나 위 감정인은 떨어져 나가 끼워져 있는 3장의 전화번호 기재용지의 절취선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잔류부분과의 일치여부와 연필로 기재한 부분의 필압유무에 관하여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 적외선현미경, 필흔재생기 등에 의한 그 각 절취선의 일치 여부를 감정한 것이므로 본원이 위 감정서를 토대로 어느모로 보나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중 적어도 2장이 원래의 것과 다르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여기에 위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수첩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였음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 위 감정인이 떨어져 나간 수첩면수나 순서를 잘 몰랐다가나 홍성은의 수첩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감정서의 신빙성이나 위 사실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홍성은은 당초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이 사건 수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또 기타 사실일부를 은폐하기까지 하려다가 검찰 제2회 진술시부터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검찰진술에서 이 사건 수첩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의 청구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최초 이 사건 수첩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또한 위 본원이 인용한 원심판시 기

재와 같이 피고인도 피고인의 애인인 이영미로부터 당초 김기설의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용지란의 기재가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같이 그 각 절취선이 겹치는 점 등에 비추어 홍성은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둘째로 변호인 제출의 증제20호중-1, 2(수첩복사본 2장)가 원래대로의 김기설의 수첩을 복사한 것으로서, 현재의 이 사건 수첩과 같은 것이라고 다루고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수첩은 원래의 것이 아니고 조작된 것임이 명백하고 위 복사본이 이 사건 수첩의 복사본임이 그 주장에 비추어도 명백하여 그것이 원래의 김기설수첩의 복사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심 중인 이효경, 최경환, 당시중인 한송흙, 권범제, 이지혜의 각 진술 부분 역시 이를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일지의 조작

앞에서 나온 전민련 제출의 업무일지(검사 제출의 증제5-1호)의 내용은 표지를 제외한 단 석장에 1991. 3. 20부터 같은해 4. 15까지 그 행사내용 등이 날짜를 뒤어넘거나 날짜 선후가 뒤바뀌어 적혀 있는 것으로서 그 첫장에는 3. 20. 행사분만 기재되어 있는 채 그 아래 부분이 찢어져 없어져 있고, 셋째장(마지막 장)에는 상단에 4. 15. 행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채 그 아래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져 있으며, 둘째 장 다섯째칸 상단(행사내용 기재 11행) '4. 9. 4월혁명기념대회 준비' 부분만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석장) 모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위 업무일지에 관하여 전민련 조직국부장(전민련내에서는 실무자들을 모두 부장으로 호칭하고 있어 김기설도 사회국부장으로 피고인도 총무국부장으로 불렀다) 김현수는 검찰진술에서 전민련 상임의장 신창근과 서울민회회장 최규성 등으로부터 업무일지를 찾으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김기설의 책상위 책꽂이에서 업무일지를 찾아 피고인 및 김형민 등과 함께 살펴 보았는데, 3장중 첫째 장이 3분의 1정도 남아 있는데 3



분의 2정도가 찢어져 있었고 그 기재내용은 연필로 쓰여지고, 동인이 검찰에서의 진술서에서 파란색 펜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에 관해 기술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파란색 펜으로 쓰여진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부장인 정윤서는 검찰진술서에서 전민련 사무실에 들렀다가 업무일지를 받아 위 최규성에게 전달해줄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뜯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 기재내용은 연필로 쓰여졌다고 기재하고 있고, 전민련 사회국부장인 임무영은 검찰진술서에서 위 업무일지는 공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위 김기철이 편상 만들어 기재하여 왔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이 기록한 일은 없고, 그 둘째 장의 파란색 볼펜글씨가 자신의 글씨체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기재한 것인지 언제, 왜 기재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민련 사회국부장 이동진은 원심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어 작성시거나 기간모양은 알 수 없고, 사회국 업무진행표를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수사기록 922, 923정485)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회국 업무일지의 첫째 장 첫 부분을 기재하였다면 그 업무일지를 동인이 처음 썼는가 아니면 그 앞의 부분을 누가 이미 작성하였는가, 자신이 기재할 때에도 첫째 장의 5분의 4가량이 찢어져 없어졌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맨 첫째 장에 있는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무영은 원심법정에서는 둘째 장 파란글씨는 자신이 썼고 전민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위 업무일지가 전민련 사회국의 공식일지가 아니고 김기철의 개인적인 필요(전민련 사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로 사용되던 것이라면 이동진, 임무영이 그 일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다가 위 일지들은 1991. 3. 20.부터 같은 해 4. 15.까지의 것이어서 이 사건 검찰조사시와 근접한 시기의 것일 뿐더러 그 기재내용이 전민련에 관련된 행사들에 관한 것이므로 만일 이동진, 임무영 등이 그 기재를 하였다면 위 행사내용과 대비하여 동인들이 기

재한 이유를 쉽사리 떠올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보여지는 바, '김기철이 그 업무일지를 기재하는 것을 본 일은 없다', '김기철의 필적을 잘 모른다'는 동인들의 진술까지 종합하면 위 업무일지의 첫째 장 부분과 둘째 장의 파란글씨 부분에 관하여 동인들이 그후 기억이 새롭게 되살아났다는 등의 연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검찰에서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위 필적이 동인들의 것이라고나 동인들이 기재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하여도 이를 쉽사리 믿어 이 부분을 동인들의 각 기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원심법정에서도 임무영은 언제 왜 기재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을 뿐 쓴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동진 역시 위 첫째 장 부분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초 위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다고 허위진술한 점(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그후 진술을 바꿀 때(제6회 피의자 신문조서) 위 첫째 장과 둘째 장의 파란글씨 부분이 이동진과 임무영이 글씨 같다고만 하였고 위와같이 이동진, 임무영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후에 원심법정에서 그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바꿨을 뿐인데도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위 각 부분을 각 이동진과 임무영이 쓴 사실은 부동이라는 전제 아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작성의 감정서 등을 공박하고 있는 점, 위 업무일지 기재에 있어서 오히려 뒤에 치러진 행사내용이 거꾸로 앞에 기재되어 있는 점(예컨대 4. 9.분이 4. 6.분 앞에 기재되어 있다), 4. 9. 파란글씨 부분도 4. 6. 앞에 4. 9.부분 기재가 있는데도 4. 12.란 상단에 4. 12. 기재와 선 등에 의한 구분 없이 추가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서 그 필적이 김기철의 필적이 아니고 피고인의 필적이고 위 김형영 작성의 1991. 5. 15.자 감정서(뒤에서 판시하는 바와같이 그 신빙성 있음이 인정된다)의 기재 등에 의하여 위 업무일지상의 일부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고 김기철이 필적이 아닌 점으로 보아 위 업무일지 역시 피고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485) 총자료집 I 책 517쪽 참조.

(라) 메모지(검사 제출의 증제7-2호)

홍성은 검찰진술서에서 1991. 2. 18. 김기철을 만났을 때 김기철이 위 메모지를 주어 이를 집에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1991. 5. 13. 검찰에 출두할 때에 검사가 김기철의 필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위 메모지가 생각나서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동인은 처음 검찰 제1회 진술시에는 김기철이 위 메모지를 주면서 자기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 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후 제2회 진술에서는 김기철이 자신이 쓴 것이라고 말한 일은 없고, 김기철이 위 메모지를 쓰는 것을 본 일도 없으며 단지 자기가 보기에도 잘 쓴 글이라고 생각된다며 읽어보라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앞에서 판시한 바와같이 홍성은 검찰 제1회 진술시에는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일부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다가 그 제2회 진술시에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이어서 위 제1회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위 메모지는 정서되지 않은 상태로 그 줄도 고르지 않고 한줄로 죽 지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흘려써서 쉽사리 알아볼 수 없는 글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여자관계나 술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홍성은 그 내용이 자기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김기철로부터 이를 받을 때에 기분이 나쁘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회 진술때 뿐 아니라 제1회 진술 때에도 이와같이 진술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수첩 및 위 업무일지가 조작된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작성의 1991. 5. 29.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작된 이 사건 수첩과 위 메모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므로 김기철은 피고인이 쓴 위 메모지를 잘된 글이라고 생각하고 홍성에게 준 것으로 보여질 뿐 위 메모지는 김기철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중인 홍성은, 이영미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위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홍성에게 대한 증인 신문조서, 검

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홍성은, 이영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홍성은, 이영미 작성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5. 5. 14:00경 애인인 이영미 집에서 이영미, 김진수, 홍성은 등과 만났을 때 이영미 집과 호프집, 포장마차 등지에서 그 다음날 00:30경까지 술을 마셨으나 그때에 홍성은 등에게 특별한 실수라고 할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고 따라서 홍성도 그때에 피고인이 어떤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한 일이 없을 뿐더러 홍성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한 일이 없다는 데도 홍성은 이 김기철과 마지막으로 헤어져 집에 돌아온 날인 같은 달 7. 23:30경 참담한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에 피고인은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세번이나 되풀이 하였고(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세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당심법정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가변계 한번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일관된 진술이나, 홍성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홍성은 이 김기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연락해달라고 김기철 부친택 전화번호를 두번이나 불러주었는데도 피고인은 그후 이에 대해 전화번호를 불러준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디 전화번호인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일도 없다고 검찰 이래 진술하고 있어 전화를 통해 당시의 홍성의 참담한 심정이나 김기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집으로 연락해달라는 취지로 보아 같은 전민련 상근 근무자인 김기철에게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쉽사리 간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홍성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거나 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아침 텔레비전뉴스를 보고 김기철이 분신자살을 하였음을 알았다면서 그 직후 애인인 이영미가 전화를 하여 김기철이 분신자살하였는데 알고 있는냐는 취지로 물어보는데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며, 홍성은 물론 피고인의 애인인 이영미까지도 그날 12:00까지는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연세대 영안실에 나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날

1400경에야 그곳에 나타나는 등 자살한 김기설과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는 바, 피고인은 이영미가 전화할 때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김기설의 자살에 따른 기자들 접근, 전화문의 등으로 바빠서 그날 1400경에야 영안실에 들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영안실로 가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에서 이러한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고, 그 영안실에서 홍성은이 전날 왜 미안하다고 했느냐고 그 까닭을 물어본 데 대해 피고인은 5. 5 술을 많이 마시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데 대한 사과라고 대답하였으나 홍성은은 그 변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같은 달 10. 15:00 경 홍성은이 피고인을 찾아와 검찰출두시의 진술대책을 물어본 데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말조심 하고,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 들이지 말라'고 하였고, 홍성은의 수첩(검사 제출의 증제7-1호)에 김기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어 홍성은이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기재해 놓는데 대하여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영미 얘기는 빼자고 서로 합의하였는가 하면, 같은 달 12. 12:00경 종로5가 도이취호프집에서 김진수, 홍성은, 이영미 등이 만나서는 김진수가 '내가 최덕수 등 분신사건 장례 등에 관여하였지만 이번 일(김기설 분신자살사건을 지칭하는 것)에 여자인 홍성은을 개입시킨 것이 최대의 실수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미 잊지려진 물이다'고 말하였는 바, 이는 홍성은의 진술 외에 이영미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한 사실인데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5. 5 이영미 집에서 만난 날에는 홍성은에게 '김기설이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보라'고 말하고는 분신자살 후인 5. 10.에는 홍성은에게 '김기설이 죽기 일주일 전쯤부터 김기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전후 모순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기까지 한 사실, 홍성은이 같은 달 13. 검찰에 1차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그후 같은 달 16. 2차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7.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 홍성은 집에 보내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왜 변호사를 안대느냐, 홍양이 얘기를 잘 하지 못하면 아들 입장이 난처

해진다'고 단순히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홍성은을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과잉대응하도록 적극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고 강경대군 장례행렬에 참가하였다가 그날 연대앞 로타리에서 일간지를 보고 자신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을 처음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달 13부터 귀가하지 않고 그날부터 15.까지는 전민련 사무실에, 같은 달 16. 17. 이틀에는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 범국민대책회의가 설치된 연세대학교 내에, 같은 달 18.부터는 명동성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성에 참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도 검찰의 소환이나 사전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해 오다가 한달이 넘은 같은 해 6. 24.에야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원심법정에서는 그 각 피의자 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는데(중거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그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진술에 있어서 문제로 된 부분이 변호인 점견시에 이루어진 것이 많은 점, 피고인 자신이 위와 같이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 취지로 보아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그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심과 명예를 걸고 결백하다' '과학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해 6. 27. 저녁 변호인과의 점견시에 변호인들에게 '피고인의 글씨와 이 사건 유서 등의 글씨가 똑같아요'라고 말한 일이 있고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이 사건 수첩, 위 업무일지 이 사건 유서의 글씨는 모두 같아 보이는데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고 다른 한 사람의 글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 위 업무일지, 이 사건 수첩의 글씨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검사 제출의 증제8-1호(서울지검 북부지청 85형제43084호 기록)중의 것임) 등의 몇가지 글씨와 똑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7. 8. 변호인 점견시에도 그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되고 이 사건 유서도 김기설 글씨가 아니고 대필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필적전문가가 아니고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작성

의 감정서에 터잡은 검사의 신문에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고하게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피고인 자신의 필적은 그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일이어서 얼마든지 그 감정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데도(검찰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있는 것임은 위에서 판시한 것과 같다) '그 필적은 같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일이 없다'는 답변은 모순되는 것일 뿐더러 피고인은 전민련 제출의 위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그 후 김형영의 진술에 의하여 1991. 5. 10. 전민련 사무실에서 피고인도 위 업무일지를 본 일이 있음이 밝혀진 뒤에야 진술을 번복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당초 허위진술을 하였고 위 업무일지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한 위 판시 부분에서의 실시와 같이 위 업무일지의 첫째 장이 이동진이 작성한 것이고 그 둘째 장의 파란글씨 부분이 임무영이 작성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은 이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감정인이나 그 감정서의 신빙성을 강도 높게 공박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의 변소는 전후 모순되거나 일방적인 전제에 서고 있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유서필적이 이 사건 수첩과 위 업무일지, 피고인 작성의 위 진술서 등의 필적과 같다는 진술부분은 이 사건 위 감정서의 감정결과와 일치함으로써 그 감정서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밖의 피고인의 행적이나 진술 취지 역시 이 사건 유서대필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홍성은의 수첩에 사망한 김기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었다는 홍성은의 검찰에서의 제2회 진술은 홍성은이 그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서와 원심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취지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검찰 제1회 진술시에는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을 감추고, 일부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그 제2회 진술시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아닌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신문 청구절차에서의 증언에서도 5. 10. 피고인이 홍성은의 수첩에 사망한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서나 원심법정에서의 동인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식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로써 동인의 위 검찰 제2회 진술이나 증인신문 청구절차에서의 증언(486)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형영 작성의 감정서의 신빙성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김형영과 공동심의회에 참여한 같은 감정인 양후열은 원심 또는 당시법정에서 한결같이 최초의 감정의회에 관련된 추가감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편의상 그 접수를 생략하고, 여러 건의 감정의회를 한데 묶어 회보해 온 관례가 있어 이 사건에서도 추가감정의뢰 중 일부 의뢰서에 대한 접수 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처리하면서 의뢰공문과의 대호번호기재가 누락된 것일 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회보가 된 것이며, 검사 제출의 증제2-1호(주민등록증본실신고서 1매), 증제3-1호(책표지 2매)와 이 사건 유서와의 필적감정 소견은 당초 대조자료 부족으로 일단 판정을 유보하였다가 추가자료의 현출로 대조자료가 충분해져서 김기설의 필적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 이 사건 유서와 다른 필적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 주장의 접수기재 생략은 추가 관련된 여러 건의 감정의회 중의 하나이고 결국 감정의회 사항에 대한 회보가 누락되었는가 의 문제는 의뢰기관과의 문제일 뿐이며 감정방법을 부동문자로 처리하는 것은 업무의 증가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고, 위 김형영 작성의 1991. 5. 15.자 및 같은 달 25.자 각 감정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제2-1호, 제3-1호의 필적감정 소견에 대한 위 김형영, 양후열의 각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바, 위 접수 등 사항의 여하만으로는 감정내용이 신빙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문제는 그 감정내용의 신빙성에 귀착되는

486) 종자료집 I 책 188쪽 참조.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임감정인인 김형영이나 위 양 후열은 이 사건 필적감정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 비치된 입체현미경, 실체현미경, 필흔재생기 등 외에 일본의 필적감정기관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를 사용하였고 그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서 필의 구성, 배자의 형태, 필세, 필압, 자음과 모음의 구성, 속필정도, 기필부분과 종필습성, 필획간에 연결되는 위치와 간격, 운필각도 등 종합적인 특징에서 일관성 있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현출되면 이를 특징으로 보고 그 공통특징 중에서도 특히 회소성 있는 특징을 현출시켜 이 특징을 회소성 있는 개인의 고유특징으로 보아 이를 중점적으로 감정한 것이며 필적감정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그 특징의 총수를 100으로 기준하여 대조문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수의 비율이 70%이상 일때는 양 문서의 필적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5% 이하이면 상이한 필적으로 판단하되, 그 감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회소성 있는 특징의 동일비율을 감정서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일반판례에 따른 것이며, 감정회보서에 첨부되는 사진은 의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사진촬영하여 감정서에 첨부한 것이지 그 부분만을 특히 주목한 것은 아니고 결국 감정의 중점은 감정인의 고도의 전문경험에 따른 회소성 있는 특징의 선정과 그 비율에 있으며 이 사건 감정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들 4인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에 따라 감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래 필적은 물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점과 선이 합쳐서 성립되는 것이고 그 구성은 개인차에 의하여 천태만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런 점과 선이 합친 대소의 형태에 개인성의 특징이 잠재적 또는 잔존적으로 현출되며 필적감정은 이러한 개인적인 고유의 특징을 발견하여 필적의 이동을 식별하는 것이나 현재 그 필적감정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한계 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여러가지 합당한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바, 이 사건 감정인 김형영이 뽑은 별지 대조필적상의 회소성 있는 특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정

인이 감정경험 및 그 연구와 전문지식에 의하여 선정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비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의 통상적인 필적과는 독특한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특히 이 사건 유서와 검사 제출의 피고인의 필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 'ㅎ', '행' 'ㅎ', '에' 'ㄱ', '위' 'ㄱ', '오' 'ㄴ', 'ㅈ' 'ㄱ', '짓' 'ㄱ', '고' 'ㄱ' 등에서 뚜렷하다), 위 감정인들은 'ㅎ'의 필법은 제출된 김기설이나 피고인의 종전필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에 변형된 필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인 바 피고인의 필적에 있어서 'ㅎ'의 꼭지점과 이와 비슷한 'ㅈ'의 꼭지점을 우하방으로 내리긋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와 다르게 'ㅎ'의 꼭지점을 수직으로 한 것이 발견되고(검사 제출의 위 증제8-1호 수사기록 중 1985. 11. 22자 진술서의 둘째 장 열여덟째 줄 '호', 검사 제출의 증제9-4호 앞장487) 열네째 줄 '히', 뒷장 세째 줄 '호' 등), 'ㅈ'의 꼭지점을 좌하방으로 내리긋는 것도 눈에 띄는 점(검사 제출의 위 증제9-4호 앞장 다섯째 줄 '천', 열다섯째 줄 '청', 뒷장 첫째 줄 '취', 세째 줄 '치', 아홉째 줄 '차', 열네째 줄 '취', 스물한째 줄 '천' 등)에 비추어 이러한 감정인들의 지적을 납득할 수 있으며,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위 업무일지의 필적이 3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가사 이를 3인의 필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정인은 업무일지가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 모르므로 몇 사람이 썼을지 모르는 상태이어서 그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에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그 경우 일반 필적감정상 전체 모두의 이동을 일일히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업무일지 첫째 장과 둘째 장의 파란색 부분에 특별한 관심은 두지 않고 동일한 필적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반드시 명확하다 할 수는 없으나, 이 역시 필적감정의 기술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변호인들이 올바른 감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인 오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변호인들 주장과 같은 필적이동비율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위 감정서는 뒤에서 판시하

487) 총자료집 1책 110쪽 참조.

는 바와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변호인들은 오히려 이를 내세워 위 감정서의 신빙성을 공박하고 있는 점에서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순되는 것임이 명백한데, 결국 변호인들의 주장취지는 그 감정내용 뿐 아니라 위 감정인이 이 사건 감정을 함에 있어서 검찰의 압력 등을 받고 불공정한 감정을 하였으리라는 데에 있는 듯하나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이라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반드시 검찰의 압력을 받아 검찰에 유리하게 불공정한 감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위 감정인 김형영이 뇌물수수사건으로 현재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는 위와같은 사유가 이 사건의 감정의 공정성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감정인의 기본 자질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감정 모두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이 사건에서의 감정의 올바름 여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우리가 존중하여야 할 증거법상의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는 위와같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 외에도 앞서서 판시한 바와같이 이 사건 수첩 등이 조작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유서의 필적 등이 피고인의 필적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 사건 감정서의 신빙성을 보태주는 자료가 되는 점에서 이 사건 감정서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관련하여 오오니시 요시오 작성의 감정서(변호인 제출의 증제19-1, 2호)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측 감정인인 위 오오니시는 ①이 사건 유서 ②이 사건 수첩 ③피고인의 옥중편지(변호인 제출의 증제15-8, 10) ④피고인 최근 필적 ⑤승의여전 메모(변호인 제출의 증제5호) ⑥방명록 노트(변호인 제출의 증제1호) ⑦상황일지(변호인 제출의 증제7호) ⑧봉투 ⑨이력서(변호인 제출의 증제2호)를 감정하면서 ① ② 및 ⑤내지 ⑨가 김기설의 필적이고 ③ ④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양자가 서로 다르다고 감정하고 있으나, 동일인은 원심법정에서 동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ㄱ', 'ㄴ', 'ㄷ'과 같은 한글자모를 알지 못하고 'ㅈ'와 'ㅊ', 'ㅍ'와 'ㅂ', 'ㅅ'와 'ㅆ' 같은 평이한 글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공판조서 738, 746정)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신원불상의 재일교포 4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동일한 모음, 자음의 숫자를 세어 주고 동인들이 한글에 해체체와 행서체가 있다고 하여 스스로는 잘 모르면서 이에 따랐다는 것일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 'ㄴ', 'ㄷ', 'ㅍ'의 필법을 중점으로 감정하고 있는 점에서 한글필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회소성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만 고유한 회소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원래 사본으로 감정하면 필기구의 종류나 복사기의 성능, 상태에 따라 필압의 형태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이 잘 현출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공판기록 712정) 사본으로도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특히 어려운 점이 없었고 이 사건 유서, 이 사건 수첩, 이력서를 사본으로 감정하고도 자신의 감정 결과는 정확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어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감정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감정의뢰서에 각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전제한 필적의 종선에 대하여는 수직과 좌하방으로 그어 내리는 필법만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필적에 대하여는 수직과 우하방으로 그어 내리는 필법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유서 자체에서도 종선이 우하방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필적에서도 그 종선이 모두 좌하방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공판기록 제718정과 제722정), 또한 'ㄴ'받침에 대하여, 피고인의 필적에는 모두 제2획의 횡선을 가필하는 필법을 사용함에 비하여 김기설은 그 횡선을 생략하는 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필적이 상이하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원심법정에서 김기설의 필적에서도 위 횡선을 가필한 것이 있고 피고인의 필적에서도 그 횡선이 생략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727정)에서 결국 동일인은 한글에서 자모가 정서체와 속필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첩, 위 승의여전메모, 방명록노트, 상황일지, 봉투, 이력서 등 6가지 필적이 모두 김기설의 필적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하여 감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오오니시의 위 감정은 감정인으로서의

기본능력과 감정의 기본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사) 기타

중인 안혜정의 당시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김기설과 광탄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중학교 재학 시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1985. 12경 군에 입대하여 1988. 6경 제대한 김기설로부터 그의 군복무 기간 중 10여통 이상 편지를 받았는데 김기설 분신 다음날인 1991. 5. 9. 위 영안실에서 유서 사본 1장을 얻은 뒤 파주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찾아낸 김기설의 카드 및 편지(검사제출의 증제13-1, 2호)와 대조해 보았으나 그 필적이 달라 보여 그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는 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위 필적은 이 사건 유서의 필적과는 상이하다는 것이고 그 상이한 점은 일반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아) 변호인들이 제출한 필적관련 증거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이 제시한 이에 관련된 서류들 중 증제1호(방명록)의 경우 이는 원래 대학노트에 방명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장기본존을 위한 방명록인데도 그 사연을 기재한 부분 두장이 모두 떨어져 있을 뿐더러 위 방명록에 처음 사연을 기재하고 서명한 전현철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방명록의 형상과 기재내용 등이 위 증제1호증과 다르다는 것이고(특히 동인은 두어줄 쓰고 서명을 하였다고 하였고 그것이 보통의 방명록 기재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증제1호는 서명이 먼저 되고 다음에 사연이 기재되어 있다), 증제3호(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의 경우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부분이 떨어져 찢장에 핀으로 철해져 있고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광대순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며, 증제4-1, 2호(대유학보 원고 및 대유학보)의 경우 위 대유학보의 기고자 성명이 이용복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위 대유학보 원고에는 그 기고자 성명이 없는 바, 이용복이 김기설임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더러 도중에 다른 필적임이 분명한 원고(동 원고 9정)도 끼워져 있고, 증제5호

(승의여전 메모)의 경우 이보령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이보령, 민수진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래 1991. 5. 20. 저녁에 그 보관자들인 이보령 등에 의하여 전민련 측에게 전달되었고 그 다음날 동녀들이 이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한 것인데 당시 소위 이 사건 유서대필사건을 둘러싸고 피고인측의 자문에 응하고 있던 변호사들 중 한 사람이 동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일문일답식의 문답을 거치면서 동녀들이 위 증제5호의 원본을 같은 날 21. 기자회견 후에 전민련측에 전달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동녀들이 처음 검찰진술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유서대필이나 이 사건 수첩조작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원본 전달시기에 관한 조작은 결국 그 원본 존재의 신빙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아니할 수 없는 데다가 위 이보령, 민수진 등은 당시 유서대필사건으로 화제가 된 때이어서 위 메모를 찾았을 때 이를 유심히 보았으리라고 보아야 할 터인 데도 각 그 진술서에서 위 원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원본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모른다가나 당초 복사해둔 사본과 원본이 같은 것으로 믿고 있다는 등의 애매한 진술을 하고 있고, 증제10호(방명록)의 경우 이는 각 장수가 다른 5목록의 종이 합쳐져 비정상적으로 제본된 것으로 그 자질이 서로 다르고 제본상태도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앞, 뒤 찢어진 부분이 있는 등 그 방명록 자체로 원래의 것인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증제23-1호(각서)의 경우 그 각서소지자라는 한원석의 경위설명서(증제23-2호)의 기재와 당시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를 뿐더러 동인은 당시법정에서 그 빌려준 사람과 김기설을 단지 소개하기만 하였다고 하면서 동인이 그 돈을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대위변제한 후 김기설의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은 약속어음을 구상도 받지 않고 김기설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거나 그러고도 그 변제시각까지 위 각서에 명기해 꼭 변제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경험칙에 어긋나 그 신빙성이 없고, 증제 20-1, 2호(수첩사본)은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된 후의 복사본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며, 그밖의 증거들은 이 사건

에서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이 명백한 전민련측에서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것들이거나 필체, 자수, 형식 등에 비추어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거나 그 필적 등이 유사필적과 동일 또는 상이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일 뿐더러 본원이 인용한 위 증거들에 어긋나는 것인 점에서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상의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서와 같이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과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서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실조작으로 무고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나 당시의 위 판시 내용 전반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는 입장에서 그 무실함을 호소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스스로의 독선적 판단과 주장에 의하여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에서 서 있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정

현행 헌법부칙 제5조는 동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동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한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것인 바, 국회가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같은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같은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준칙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이 헌정적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0. 4. 2. 선고, 88헌가113사건 결정 취지에 따라 같은 법을 개정하였고, 북한은 소위 그 통일전선진술에 따라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의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대남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바 비록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국제연합에의 동시가입은 분단된 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고 위 합의서의 기본취지 역시 단시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의 첫 시작으로 보아야 할 뿐, 이 합의서에 대한 국제적인 실행보장이 없고 북한이 아직도 위와 같은 대남적화통일의 기본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어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가입이나 위 합의서의 발효사실만으로 곧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부분 사건 공범들에 대한 형사제재가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에 가입하고 판서와 같은 각 서적 및 유인물을 소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단체는 현 정부를 '미·일 제국주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독점제벌의 무한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 등과 독점자본가 놈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서 제반 '파쇼적 악법'과 '권력 기구' '수탈적인 조세제도' 등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어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의회주의적 방식, 점진적 교체의 방식으로는 그 타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그 타도의 방법으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소자산가 등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무장봉기를 통한 임시혁명정부 구성을 제시하면서 군대, 경찰의 해체에 의한 혁명군 창설, 자본 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경제 수립 등을 이루어 공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조직 강령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소지한 위 유인물 등은 그러한 민중혁명을 명시, 묵시적으로 선전, 선동하

는 내용들임을 인정할 수 있어, 헌법이 전혀 상정하지 아니하는 혁명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헌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음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으로써 기수에 도달하는 판시 제2의 각 죄를 판시 첫머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죄의 형기종료예정일인 1987. 11. 30.부터 3년 이내에 저질렀음이 역수상 명백한데도, 원심은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한편 위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자살방조죄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마땅히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본원의 판단

가. 범죄사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중 판시 제1 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시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1. 증인 홍성은, 김형영, 장병호, 김정렬, 이재구, 이영미, 박경민, 임무영, 이동진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형영, 양후열, 안혜정, 이보은, 이지혜의 당시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거나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1.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91초 1844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홍성은, 이영미, 정삼정, 장병호, 김정렬, 이재구, 강병숙, 이보은, 김현수, 임무영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거나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임근재, 양경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홍성은, 김형영, 이지혜, 송국영, 이보은, 이영미, 임무영, 김형민, 정운서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거나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형영 작성의 각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현장검증조서 및 의사 김승호 작성의 사체검안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들의 각 현존 및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 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대호, 노성철, 이종원, 김경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종원, 김경숙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 기재 물건들의 각 현존 및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91년 형제46779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서(제579정), 형기 종료일자 확인수사보고서(제982정)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 중 판시 제1의 자살방조의 점은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에, 판시 제2의 가의 이적단체 가입의 점은 개정된 국가보안법(1991. 5. 31. 법제4373호)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7조 제3항, 제1항에, 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은 위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각 해당되는 바, 판시 제2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죄와 관계에서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되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위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별지 기재물건들은 판시 제2의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20.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중  
판사 부구욱

별지 목록

증제번호	물 건	수량
9-1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	1매
9-91	들불 창간호	1권
9-95	노동자의 진실비판(혁명의 불꽃 7호)	1권
9-98	혁명의 불꽃 2, 3, 4호	각1권
9-100	혁명의 불꽃 10호	1권
9-101	혁명의 불꽃 8호	1권
9-103	혁명의 불꽃 10호 독립보충판	1권
9-104	혁명의 불꽃(44년 5월 22일)	1권
9-111	혁노맹 창간 선언문 및 재건대회 의 내지 116	각1매
9-123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혁명의 불꽃" 창간호)	1권
9-125	1. 혁명의 불꽃 제6호(신세비비판) 2. 혁명의 불꽃 제10호 독립보충판 3. 6월 이후의 정치정세와 통일투쟁(민족민주혁명 학생투쟁연맹) 4. 현 정치상황의 이해를 위하여(같은 명의) 5. 현재의 정세와 피티의 전술적 결의(같은 명의) 6.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혁노맹 명의)	각1권

(판결문 72, 73 누락) 공판기록 3926쪽)

변호인 명단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이범열, 이세중, 함정호, 조준희, 고영구, 홍성우, 최영도, 황인철, 조영환, 박재승, 한기찬, 박용일,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이종걸



■자료 B-21

### 성명서

우리는 지금 거짓과 비양심이 판을 치는 암흑의 왕국에 살고 있다.

사법부의 양심을 가늠하는 이 '유서사건'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는 오늘 드디어 만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스스로 추악한 범죄집단임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전과정을 처음부터 예의 주시해온 우리는 그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경악하면서 오늘의 이 비상식적인 판결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비리사건이 공개되기 전, 그리고 검찰에 의한 고 김기설씨 필적은폐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우리는 1심 재판부는 그나마 주저하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범죄집단'이라는 규정을 삼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고 김기설씨의 모든 필적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기훈씨가 썼다고 단정해버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뻔뻔스러운 작태는 마땅히 '범죄집단'으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사법부에 대하여 그 어떤 정도도 공정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재판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을 것이다. 강기훈씨를, 아니 우리 사회의 진실과 양심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힘 이외에는 없음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

공권력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에 의해 덮여지고 그 큰 거짓말은 다시 더 큰 거짓말에 의해 은폐된다. 그리하여 견잡을 수 없는 이 거짓말의 행렬은 언제가는 끝내 온 국민의 힘에 의해 그 초라한 물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범죄자는 강기훈씨가 아니다. 강기훈씨는 결백하며 범죄자는 공권력의 위신을 위해 무고한 한 인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이요, 국과수요, 그리고 법원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뒤에 승리하는 법이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과 건전한 양식이 승리할 그날까지 기꺼이 더욱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릴 것이며,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00인 선언이 아닌 4000인 선언이 될 것이고, 4000만인 선언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92년 4월 20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다-6-2 (공판기록 3928~3929)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사 민 동 기

### 상 고 장

\* 상고재기 통지서 영수증 <생략>

사 건 92나 401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 기 훈 (姜 基 勳)

위 사건에 대한 1992. 4. 20.자 서울고등법원 제2형  
사부의 판결은 모두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함(상고이  
유서는 추후 제출할 것임).

1992. 4. 22.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 현 석

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귀 중

\* 상고재기 통지서 영수증 <생략>

■자료 다-6-3 (공판기록 3930~3931)

### 상 고 장

대법원장 귀하

재감인 강 기 훈

사 건 자살방조 등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1992년 4월 20일 서울 고등  
2부 법원에서 징역 3년, 통산 295일의 판결을 받았으  
나 불복이므로 상고함.

1992년 4월 21일

위 강 기 훈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 KOREA**  
**Appeal on behalf of**  
**Kang Ki-hun**



April 1992  
 AI Index: ASA 25/13/92  
 Distr: SC/CO/GR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8DJ, UNITED KINGDOM

**SOUTH KOREA**

**Appeal on Behalf of Kang Ki-hun**



Kang Ki-hun, 27-year-old staff member of *Chonminnyon*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of Korea) was arrested on 24 June 1991 and sentenced to three years imprisonment for aiding and abetting the suicide of Kim Ki-sol, also a staff member of *Chonminnyon* who committed self-immolation on 8 May 1991. He was also convicted with membership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Kang Ki-hun may not have received a fair trial and is urging the authorities to review his case.

On 26 April 1991 student Kang Kyung-dae was beaten to death by riot police during an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His death provoked violent demonstrations throughout South Korea by students, workers and dissident groups who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comprising some 55 dissident groups,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funeral and to campaign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ies. During the following weeks many protests and demonstrations were organized by the committee and by other student and dissident groups. A number of people, including Kim Ki-sol, committed self-immolation as a gesture of protest against the death of Kang Kyung-dae and against government policies.

In late May police obtained a warrant for the arrest of Kang Ki-hun who sought sanctuary in the grounds of Myongdong Cathedral and gave himself up to the police on 24 June. The most important charge against him, under the Criminal Code, was one of aiding and abetting the suicide of Kim Ki-sol and specifically of writing Kim Ki-sol's suicide note. He was also charg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membership of the group *Hyokimaeng* (Revolutionary Workers' Federation) which is seen by the authorities as an anti-state, pro-North Korean group. Regarding the charges against Kang Ki-hun, Senior Prosecutor Kang Shin-uk is reported to have said "Formal charges were filed even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case could be thrown out of court for lack of evidence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Kang is the most likely person to have abetted Kim in his suicide". Kang Ki-hun denied the charges against him saying "As I am innocent, there is no choice for me but to turn myself in honourably". Soon after the arrest friends and supporters formed a "Joint Taskforce Committee" to protest his innocence and work for his release. It claimed that the police had fabricated a case



against Kang Ki-hun in order to discredit the dissident movement at a time of social unrest.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evidence in this case may not have produced conclusive proof of Kang Ki-hun's guilt on charges of aiding and abetting the suicide of Kim Ki-sol. In delivering his sentence the court judge is reported to have said that he was not sure whether the accused actually wrote the suicide note or actively took part in the fabrication of the suicide note.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Korea Herald* of 6 December, shortly before the verdict was delivered the bench told press reporters that "the court will have to approach the case for 'relative' truth rather than the whole truth for lack of objective evidence to prove claims of each side." The same article went on to say that "Both sides, however, failed to submit evidence crucial to the solution of the case while simply denying and denouncing allegations made by the other side." In his appeal to the High Court Kang Ki-hun quoted the judge as saying "We do not believe that our judgement i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and absolute truth, but . . ."

The main evidence in this case consisted of a handwriting analysi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NISI) which supported the prosecution's charge that Kang Ki-hun had written Kim Ki-sol's suicide note. The NISI compared the handwriting on the suicide note and in a notebook and other texts allegedly written by Kang Ki-hun and concluded the handwriting on the suicide note was that of Kang Ki-hun. In its verdict the court praised the work of the Chief of the Document Analysis Department of the NISI. Two months later, in February 1992, this same official was arrested on charges of accepting bribes in return for false appraisals. Although these corruption charges relate to different cases,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incident casts some doubt on the reliability of the NISI's analysis of the handwriting on Kim Ki-sol's suicide note.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is appears to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evidence used to convict Kang Ki-hun.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commissioned an independent analysis of the suicide note and other written texts by a Japanese graphology expert, Yoshio Onishi, who testified before the court on 28 November. Yoshio Onishi claimed that the suicide note had been written by Kim Ki-sol himself and not by Kang Ki-hun. Prosecutor Shin Sang-kyu is reported to have discredited Onishi's evidence on the basis that he was unfamiliar with the Korean alphabet saying "How is possible for a foreigner who is quite unfamiliar with the Korean alphabet to have accurate analysis of the handwriting . . . The Nat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 Bureau is the sole authoritative body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handwriting." When announcing the verdict, the presiding judge is reported to have said that the court found valid the results of a forensic examination by the NISI.

Kim Ki-sol's girlfriend, Hong Song-un, was also presented as an important witness. She was reportedly interrogated for long periods by the police and held *incommunicado*, although she was later released. During interrogation she is reported to have implicated Kang Ki-hun in the suicide, but she apparently retracted this statement when under cross-examination by the court.

On 20 December Kang Ki-hun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imprisonment for aiding and abetting the suicide of Kim Ki-sol and writing his suicide note and for membership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n his appeal to the High Court Kang Ki-hun said:

"The Court would not sentence guilty someone who is innocent, would it? The Court would not accept the sham handwriting appraisal of the NISI before all the evidence pointing to the clear truth and fact, would it? These were the thoughts that ran through my mind as I moved to and from the detention centre in the mountains of Poil-dong and the courthouses in Socho-dong for the first trial. I wanted to convince myself again and again that the trial would lead to a rational conclusion. However, the court accepted without altering one word the argument of the prosecution which was based on evil distortion of the facts and outlandish assertions. The moment that I heard the decision of the judge I felt despair falling on me with the weight of the sky caving in all around me. This land became a land struck with calamity full of falsehood and deceit with no glimpse of truth."

On 20 April Kang Ki-hun's three year sentence was upheld by Seoul High Court.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evidence used to convict Kang Ki-hun of aiding and abetting the suicide of Kim Ki-sol does not appear to provide conclusive proof of his guilt. It believes that the authorities should review the case of Kang Ki-hun and release him on these charges if there is an absence of conclusive evidence to convict him.

#### ACTION REQUESTED

Please write appeals to the South Korean Minister of Justice urging a review of Kang Ki-hun's case:

Mr Kim Ki-Choon, Minister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1 Chungang-dong  
Kwachon-myon, Shihung-gun  
K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영문 번역)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실무자인 강기훈씨(28세)는 1991년 6월 24일 당시 전민련의 실무자였던 김기설씨 분신(1991. 5. 8)과 관련하여 자살방조 및 교사혐의로 체포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이적단체의 가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강기훈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의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1991년 4월 26일 반정부시위도중에 강경대 학생이 전투경찰에 의하여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한 전역에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으며, 그 시위에는 학생, 노동자외에도 강경대군 장례식 준비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목적으로 55개의 재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참가했다. 수많은 항의와 시위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 외중에서 김기설씨를 포함한 여러명의 사람들이 강경대군의 죽음과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분신 자살하였다.

5월말 경찰은 당시 명동성당내에 피신중이던 강기훈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강기훈씨는 6월 24일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였다. 그에 대한 형법상 가장 큰 죄는 김기설씨 자살방조 및 교사와 김기설씨의 유서대필이었다. 그는 또한 당국에 의하여 친북적인 단체로 지목된 혁노맹(혁명적 노동자 동맹)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강기훈씨에 대한 기소와 관련하여 부장검사 강신욱은 "우리는 강기훈씨가말로 김기설이 자살하도록 교사한 가장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본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정식으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한다. 강기훈씨는 "나는 결백하다. 그러기에 나에게서는 명예로운 자진출두의 길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기소내용을 부인하였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그의 친구들과 지원자들은 그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의 석방운동을 위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불안시기를 맞아 경찰이 반정부운동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강기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사건에서의 어떤 증거도 강기훈씨에 대한 김기설씨 자살교사 방조죄를 결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가 실제로 유서를 대필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한다. 1991년 12월 6일자 '코리아 헤럴드'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판결에 앞서 재판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측(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진리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기사는 "양측 모두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비난하기만 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강기훈씨는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장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가 실시한 필적감정이었으며, 이것은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썼다는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과수는 유서의 필적과 수첩의 필적 및 강기훈이 썼다고 주장되고 있는 문서들의 필적을 비교하고 나서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감정결과를 칭찬한 바 있다. 그런데 두달 후인 1992년 2월에 바로 그 실장은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감정을 하여준 혐의로 체포되었다. 비록 국과수에 의한 이 같은 허위감정이 다른 사건들에 관련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과수의 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는 사실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OC)는 독자적으로 오니시 요시오라는 일본인 필적감정 전문가에게 유서필적과 그 밖의 필체들을 감정하였으며, 오니시씨는 유서가 강기훈씨가 아닌 김기설씨 자신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상규 검사는 오니시씨가 한글문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글체에 전혀 문외한인 외국인이 어떻게 정확한 필적감정을 할 수 있겠는가... 국과수만이 필적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반박하며 오니시씨의 증언을 불신하였다 한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국과수가 행한 법정감정의 결과에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는 또한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홍성은씨는(나중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경찰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취조를 받은 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당해 있었다고 한다. 취조를 받는 동안 홍성은씨는 강기훈씨가 이 자살과 관련하여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법정에서의(변호인) 반대신문때 이같은 진술을 분명하게 철회하였다.

1991년 12월 20일 강기훈씨는 김기설씨 자살교사 및 방조, 유서대필, 그리고 이적단체가입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강기훈씨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쓰고 있다.

'설마 무고한 사람에게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너무나 명백한 진실과 사실을 웅변해줄 수 많은 증거를 두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엉터리 필적감정을 인정하겠는가.'

'제가 1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포일동 산자락과 서초동을 오가며 수없이 되뇌이던 상념의 주제들입니다. 모순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몇번이고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에 찬 사실왜곡과 억석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을 한획, 한자의 고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1심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실은 한뼘도 비치지 않고 허위와 가식이 판을 치는 재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992년 4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은 강기훈씨에 대하여 원심대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강기훈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근거가 되었던 증거들이 그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강기훈씨 사건과 관련하여 당국이 재조사를 해야하며 강기훈씨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못한 경우 강기훈씨는 석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시다.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강기훈씨의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장관 김기춘

☐자료 라-0-1 (공판기록 ???~???)488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92도1148  
피고인 강 기 훈

대 법 원 형 사 3 부 귀중

## 상 고 이 유 서

사건번호 : 92도1148  
죄 명 : 자살방조 등  
본 적 : 서울 강동구 자양3동 227-158  
직 업 : 전민련 총무부장  
생년월일 : 1964년 3월 29일  
성 명 : 강 기 훈

### 요 지

본 상고인은 상기 죄명으로 1992년 4월 2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다 음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488) 대법원 관련 기록들은 공판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자료복사신청을 한 관계로 공판기록 정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 필적감정이 정당했다는 전제 아래, 모든 사실들을 꿰어맞추어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인정한 것인데, 1심때와 다르게 유난히 인용 강조하는 바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유서필적자들이 피고인의 필적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판결문 52쪽 등에서 인용) 이기에 우선 2심 재판부의 이 교활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실왜곡을 해명, 질타하는 것으로 본 상고의 이유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위 인용문에 따른다면 제가 유서의 필적이 본인 필적이기에 같다고 인정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필적이니까 같다고 했지 않겠느냐'는 것이며 이는 결국 유서대필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는 나름의 심중(?)을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그렇기에 2심 재판부는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임의대로-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나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고 판결문 곳곳에다 기재해 놓은 듯합니다). 어쩌면 2심 재판부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애초부터 왜곡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이같은 왜곡된 사실(중의 하나에 불과한)이 검찰의 수사과정과 1, 2심을 통해 나타났던 무수한 자의적 판단(국과수의 감정을 절대시한 가운데 부수적인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다보니 필연적으로 수반된 주먹구구식 논리)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버린 전형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다음의 대화를 보십시오.

변호인 : 당신이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본 인 : 국과수의 필적감정서는 글씨의 비슷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유서 등의 글씨와 본인의 글씨) 이를 대조사진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검찰이 시필(유서 등의 내용을 같은 필기구로 똑같은 크기로 쓰는 것)을 강요해서 처음엔 거부하다가 검사와 함께 유서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 글씨보다 검사의 글씨가 유서글씨와 같아 보이더군요(웃음).

변호인 : (함께 웃음).

본 인 : 그런 식으로 대조사진을 만들어 붙이면, 웬만한 누구의 글씨도 유서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글씨는 똑같더군요.

변호인과 제가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 검찰 청사 10층에서 접견하며 이루어진 대화 중 일부입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수사담당인 신상규검사도 함께 있었고, 그는 나의 설명이 변호인의 웃음을 자아내자(억지로이긴 하지만)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4-5일 정도 지났으리라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 사 : 피고인은 지난 0월 00일 변호인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유서의 글씨와 자신의 글씨가 같아보인다고 하였지요?

본 인 : 그것은 지나가는 농담 비슷한 것이었는데요.

검 사 : 그런 말 한적이 있나 없나를 묻고 있어!

본 인 : 그런 말 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하며 설명하려 하자)

검 사 : 예, 그런 말 한적이 있습니다(라고 타이핑 하라는 뜻으로 참여한 재장에게 불러줌).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할 기회줄게(라고 내게 말함).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2심 판결문에 인용한 바와 같은 내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과수 감정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로 또다시 인용됩니다(후술함).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다시 '글씨가 같아 보인다'는 게 사실이나, 무슨 뜻이나에 대한 신문을 받았을 때까지 그리고 이후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어리석게도 저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공판조서에는 '그런 말이 한적이 있다' 정도로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무슨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양 여기 저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게 국과수의 기자재가 있다면 글씨들의 비슷한(답아보이는) 부분을 취하여 10명중 7-8명 가량은 감정서에 인용한 것과 같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회소성이라고 명명하면 될 것입니다. 기실 다음의 내용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국과수의 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지리할 정도로 설명한 부분에서도 감정이 결국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 (이동비율에 대한 설명 : 70% 이상이면 동일 ... 후) ... 특징의 동일비율을 감정서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일반관계에 따른 것이며 ... 감정회보서에 첨부되는 사진은 의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즉, 일반적 특징 : 회소성)을 사진촬영한 것이며 그 부분만을 특히 주목한 것은 아니고, 고도의 전문경험에 따른 회소성 있는 특징의 선정과 그 비율에 있으며..." (판결문 48쪽 인용).

도대체 어떤 것이 고도의 전문경험(자의적 판단이라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임)이며, 그에 따른 비율이 어떤 것인지, 결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서에 붙이는 사진을 판결문에서 인용하듯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다가 '회소성 특징'을 나열한 것이라고 하다가 급기야는 '필적감정이 한계가 있음'(판결문 48쪽 하단)을 인정하면서도 몇가지 글자를 예로 들며(49쪽)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통상적인 필적과는 다른 독특한 것'(49쪽 인용)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을 들어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소적 특징, 소위 '회소성'이란 무엇입니까? 판결문 49쪽의 8가지 예가 대표적인 것이라 한다면 이 글을 보는 법관들 중에 이런 식으로 글씨쓰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볼 일입니다. 결국 국과수 김형영 등이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바대로 고도의 전문경험에 따른 회소성과 그 비율이 필적감정의 요체라고 한다면 1)고도의 전문경험 = '개인의 주관적 판단 및 자의성', 2)회소성 및 비율 = '비율은 설명 못하니 글씨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모아서 회소적 특징으로 이름붙이기' 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귀때고 기름때면 무엇이 남습니까. 첫번째는 국과수라는 성역을 사수하고 도저히 무너져 내려서는 안되는 몇몇의 비도덕적 권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쯤은 무방하다는 생각과 둘째로, 이를 확고한 잣대로 나머지 모든 것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김형영을 비롯한 수명의 허위감정 뇌

물수수 문제를 대하던 검찰의 태도에서도 나타났던 (권력의 권위가 손실받을 것같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마크)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있는 재판에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판절차를 밟는다면 그것을 누가 '공인'된 권위로 떠받치고 인정하겠습니까. 2심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교묘하게, 그리고 논리적임을 가장하여 대필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까를 '유서사건'의 당 재판부에 배당되던 그 지점부터 판결하는 날 아침까지 내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 서두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분신전 정황을 그토록 지리하게 설명했고, 1심 재판부가 "우리의 판단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고민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으며, 허위감정 뇌물사건으로 흔들리는 김형영의 필적감정서와 국과수의 권위를 복원키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충실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를 교활함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업무일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감정인은 업무일지가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 모르므로 ... 2)여러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을 ... 강조하되 ... 3)일반 필적감정상 일일이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 ... 4)반드시 정확하다 할 수는 없으나 이 역시 ... 5)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판결문 50, 51쪽 발췌 인용), 한편으로는 6)업무일지의 필적이 세 사람의 것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감정결과에 따라 제가 조작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면,

1)1심 법정에서 감정인의 진술과 명백한 모순관계가 있습니다. 김형영은 반대신문의 과정에서 이미 업무일지가 여럿에 의해 쓰여진 것을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했고,

2)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강조하였다면, 첫째장과 둘째장의 파란색 글씨에 대해서는 감정서중 적절 한 표현(예를 들어 '이들을 제외하고' 하는 식이)이

있어야 하며,

3)일일이 대비(일일이 대비한다는 게 아닐 뿐더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상술한 바와 같이 비과학성과 무능에 기인한 김형영의 필적감정의 자의성과 치명적 오류로서, 그리고 국과수 감정이 허위라는 증거로 질타되어 마땅하며,

4)이는 법원도 이런 사실을 단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에서 '가재는 계편'이라는 우리 전래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허위감정을 하여 한 인간의 명예와 일생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자의 치명적 오류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같은 편이라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6)에 대해서는 업무일지가 문제가 된 경위부터 다시 더듬어보며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발은 무리한 검찰의 억지(대부분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들이지만) 수사에 따른 필연으로의 무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업무일지의 필적이 유서필적과 같다'는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검찰이 본인의 수사시 진술에 의해 3인에 의해 작성된 것(김기철, 이동진, 임무영)임을 알게 되자 업무일지 작성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후 강신옥 부장검사가 저의 사무실 동료인 임무영의 필적들을 어디선가 가져와 노발대발하였고(이때는 아마도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후에 수사방향이 선회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진술한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이즈음에 자신들의 영터리 가설과 상상에 기초한 장난을 반성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저와 후에 검거된 임무영에 대한 협박을 통해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되는 이 부분을 흐리게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나갑니다. 동료인 무영에게는 "업무일지 중간 글씨가 본인이 쓴 것이라고 하면 너를 대필범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그리고 체계는 "네게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달콤한 회유와 뼈터제 등의 협박으로써 업무일지의 증거력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법정에서도 약간은 진술한 바 있지만 검사의 저에 대한 회유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너를 지목한 것이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린 사과하고 웃을 벗겠다.

2)암시 등. 부장검사가(임무영의 글씨와 유서 등의 글씨를 비교하며) "이 글씨 맞는데 말야."

3)"이 업무일지는 조작된 게 틀림없다. 네가 만일 조작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네가 조작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4)(무영의 연행 후에 대질신문을 마치고) 검사가 저를 보며 "넌 참 바보같은 놈이야(무영을 스스로 닮아세우지 않는다며)" 하면서 저를 대필자로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

5)"분명 네가 10일 보았던 것과는 성상(업무일지의)이 다를 것이다. 기억이 차이나는 것만 자술서 형식으로 써라. 그래야 네 무고를 믿지 않겠느냐."

판결문 33쪽의 "... 피고인의 자술서에서 ..." 부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을 가끔씩 객관적으로 드러내려 한 위의 글은 검찰수사 방식에 대한 전경이며(대부분 이런 방식을 취했음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저의 부끄럽고 아픈 기억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위를 통해서 저는 한때나마 검찰의 '대필성'에 동조하고, 심지어는 동료를 대필자라고까지 생각하였으니까요.

어떤 잘못된 인식이 사실로 인식되는 과정(그것이 객관화되어버리는)의 예를 하나만 들고자 합니다.

甲과 乙이 '왕자와 거지'라는 마크트웨인의 소설을 어떤 선입관(아마도 같은 서양인이어서 그랬는지)에 의해 찰스 디킨즈가 썼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甲이 이것을 확인하고자 乙에게 질문합니다.

甲 : 왕자와 거지 누가 쓴 거지?

乙 : 아마 찰스 디킨즈가 썼을 걸.

甲 : (내심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을 확인받았기에) 맞아. 찰스 디킨즈야. 이제야 생각나는군.

乙 : (甲으로부터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왕자와 거지'가 디킨즈의 작품임을 확인한다).

아마도 당분간 甲과 乙은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위의 경우에는 다행하게도 저자가 '마크 트웨인'임을 많은 이들이 알기에 이들이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얼마후엔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박홍 총장의 '분신배후설' 운운 발언

에서 시작한 허위와 편견의 순환이 이를 이어받은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예 속에도 '유서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편견은 또다른 편견과 희생의 악순환을 부릅니다. 이젠 멈추어야 합니다.

지난 2월경에 터져나온 일단의 국과수 비리, 허위감정 뇌물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안기부 후속유인물 살포사건 등에서 나타난 검찰의 태도는 누구나 인정하듯 충실한 정권의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판결문에도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국과수의 허위감정, 뇌물수수 사건과 본건 감정의 공정한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식의 발상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한창 국과수 필적감정의 공정성 여부를 시험대에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정말(?) 우연하게도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을까,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지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권력에 대해 항상 한편되어 왔고 폐쇄적 자기이익(후술함)을 위한 집단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꿀을대도 꿀은 비리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더이상 이길 수 없는 하중으로 인해, '허위감정'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 사건과 국과수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될 무더기 재심청구 사태와 관련하여 '국과수 뇌물감정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언론보도의 일단만 보아도 허위감정과 관련된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이런 검찰 주장에 발맞추어 '뇌물은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아니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없다'고 (백번 양보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면서 누가 보아도 허위감정(전적으로 무능과 비과학성에 기인한)이 명백한 '필적감정'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염치입니다. 논리적 연관을 편향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법관에 부여된 자유입니까? 앞서 밝힌 몇몇의 예를 통해서 사실왜곡의 전형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는 법원이(정말 부끄럽도 없이) 국과수 등에 대해서는 그토록 이해심 넓고, 야랑 있고, 관대하며, 친절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역시 '가재

는 게 편'입니까? 그것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바의 '증거법상의 원칙'(판결문 52쪽)인지를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는,

"... 피고인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 ... 보다는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있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판결문 60쪽 인용).

이라 몰아부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사법제도를 부정하고(후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동 편 늪이 성낸다'는 속담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두문자가 하루에도 몇 수십번 뛰어나오려 하는 것을 참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사람을 이젠 앞장서서 매도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법의 실체이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국가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편견, 아집에 의해서 자행되는, 법의 공정함을 가장한 거대한 폭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바로 이런 뒤틀러진 현실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사법제도를 병들게 하고 권위가 부정되게끔 하는지 가히 압권이라 할 수 있는 변호인 필적 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봅시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원이 인용한 증거들에 어긋나는 점에서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판결문 60쪽 상단).

국과수에 대해(치명적 결합과 허위감정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이해심 많던 법원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은 국과수의 감정을 움직일 수 없는 잣대로 하여 억지로 껴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유서의 필적과 눈으로 보아도 너무나 똑같은('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아도'라는 수식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서에 대한 판단에서 보이듯 필적의 진위 여부는 하등의 관련 없는,

"... 동인(중인 한원석 지칭)은 당시 법정에서 그 빌려준 사람과 김기설을 단지 소개만 하였다고 하면서 동인이 그 돈을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대위변제한 후 김기설의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은 약속어음을 구상

도 받지 않고 ... 진술하는 점에 미루어 경험칙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고..."(판결문 50쪽 인용)

부분을 늘어놓음으로써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약속어음 구상 등의 문제와 필적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선고공판 당시 삼강오륜을 들먹이며 "유서의 내용만 보아도 대필"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던 고법 형사 2부 재판장의 대답한 몰상식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1심 재판부가 "... 선뜻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변호인 제출필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같은 망언을 들으며 차라리 1심 재판부는 '솔직하기라도 했다'고 말해야 옳습니까? 수첩복사본(이것은 수첩조작 여부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입니다)에 대해서는 시점과 인과관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이,

"수첩이 조작된 후의 복사본..."(판결문 50쪽)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수첩을 조작했다고(조작하지도 않은 수첩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에야 그토록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도 법원은 국과수를 상전으로 떠받들고 진실은 우격다짐으로 배격하고 억설로 꾸드려 맞추려 한 우를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필적자료의 무시도 한 가지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국과수 필적감정은 공정했다.—설령 감정기준도 없고, 3인 이상의 필적을 한 사람 것이라 했으며, 뇌물을 받아먹는 등의 엄청난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2)수첩 등이 조작되었고, 나머지 필적들은 믿을 수 없다—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종합해보면,

3)그래서 유서는 대필되었다.

4)고로 국과수 감정은 공정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한 어떤 증거도 채택할 수 없다.

로 요약되는 논리는 다음의 대화에서처럼,

甲 : 철수야, 너 몇살이니?

철수 : 삼수하고 동갑이에요

甲 : 그럼 삼수는 몇살이나?

철수 : 나하고 동갑이지요

하는 우문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법원은 조금 슬

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 겸허했어야 합니다.

몇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1. 국보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건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와 그밖의 진술에서 언급할 일이 없기에 간단히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91년 7월 12일 기소 이전에 제게 "우리는 보안법건에 대해 관심없다"면서도 "만약 내가 나가게 되면 곤란하고 ... 결국 보상도 못받겠지?" 하는 식으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듯 '관심이 없었기에' 기소하지(조사는 했으면서도) 않고 공소장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수식구로만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INCC의 의뢰로 일본의 감정인이 제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로 급작스럽게 서울경찰청 소속의 수사관 5인이 찾아와 밤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0여일 동안의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유서건을 자백하라(설혹 영터리라도, 했다고만 해라라는 뜻) 그러면 국보건은 봐줄게", "유서재판 다 끝나고 추가 띄우겠다"는 식으로 검찰이 위 권을 이용했듯 여전히 국보법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공안당국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보안법이 왜 사문화되었는지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시대착오적 인식에 근거한 악법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한 가치판단(예를 들어 합헌인가 위헌인가의 여부 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2심 재판부 설명 속에는 악법의 집행자로서의 정당함마저 엿보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 '변제된 이익집단 '감정인' 들

이 사건 감정인 김형영이 이전에 연루되었던 허위

감정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인환'이라는 국과수 동료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서였고(만일 그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더라면 '유서대필' 파동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번 허위감정 뇌물수수 사건에서 이들은 공범 관계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대검분석실' 운운하며 그간 문제가 된 송사(허위감정건과 관련된) 과정에서 감정이 허위는 아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놈끼리 서로 선량하다고 증명해주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 없습니다. 진귀한 코메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을 옮겨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집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안위를 구축하려는 집단의 한심한 작태의 뒤안에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소수 몇몇에 의한 감정 장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생공사의 관계인 이들 중의 어느 누가 이따진 동그라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특수이익집단의 자기폐쇄성, 공동이익 추구는 '유서사건'의 진실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위감정 뇌물수수 사건은 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냈기에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감정 사건이 어느 기자에 의해 추적되던 시점에서 그 누군가가 했다는 말은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필적감정, 그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어?"

3. 도덕성 운운에 대해

판결문의 곳곳에 "저를 비도덕적이라 몰아부친 귀걸이 있어 이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덕적 지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동료가 대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대필주장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불리할 것 같아 업무일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수사기관을 지칭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행위—처남의 죽음을 기회로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망자의 매형이라는 사람의 속물근성을 부추켜 수사에 착수하고, 은갖 유언비어들을 퍼뜨려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가(윤용하씨—분신배후가 어딴냐며 항거) 하면, 무고한 사람을 대필법으로 몰고 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었고, 국과수 허위감정이 터지자 수사담당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일삼아 사건을 축소, 조작하기에 애쓰는 한편, 뽀뽀스럽게도 “너들은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아니다(검찰이 그런 발표하는 덴가?)”고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했고, 오늘날까지 정치적 사건에서 예외없이 국민에 대해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행한(앞서 설명한 바의) 행위에 비해 훨씬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나약함을 비도덕성으로 질타할 자격이 과연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소위 권위라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무자비한 제도화된 폭력과 아전인수격의 논거, 법의 권위를 빌은 군림 속에 그리고 그런 자각 속에 세워집니까? 아니면 누구나가 믿고 따르는 소박하지만 정당한 당연의 상식을 뒷받침해주는 도덕적 권위에 의해서입니까? 저는 제 막내동생이 자신의 진학문제를 고민하던 무렵에 법대에 진학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권고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기를 아직도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4. 독선적 운운에 대해—사법제도 부정에 보충하여

2심 판결에서 제 개인을 격분케 한 것이 바로 이 ‘독선’ 운운(판결문 60쪽)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수사에서 재판 전과정) 합리적이며 침착한 태도를 취하려 무진 애를 써왔으며, 이런 저의 태도를 모 일간지에서 ‘지나치게 침착하다’고까지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설령 재판의 각종 진술기회 등에서 감정에 복받쳐 흥분된 논조의 진술을 한 일도 있으나, 적어도 그것은 누가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이었으며, 국가공권력을 빙자한 거대한 폭력 앞에 상처투성이가 된 한 인간이 그 정도(항소이유서 등)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재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선’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함”을 뜻하는데 앞서 지적한대로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유일의 잣대로

하여 무리한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선이 아닙니까?

“... 이 사건 수첩과 업무일지, 피고인 작성의 위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진술부분은 이 사건 감정결론과 일치함으로써 감정서의 신빙성을 높여 주는 ...”(판결문 44쪽 인용).

이런 식의 문장이야말로 독선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필적과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누가 하였더라 말입니까? 그리고 논리적 설득을 ‘판결’을 통해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독선’ 운운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5. 다시 한번 ‘ㅎ’ 필법에 대해

‘ㅎ’의 초필(첫획 부분)을 저는 이제까지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좌하방?)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판결문에서는 85년 자술서를 예를 들면서(판결문 49, 50쪽) 이런 ‘좌하방’ 방식도 발견되었다는 논거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은 ‘최근에 변형된 필적’이라고 한 김형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에 중요한(이전의 재판과정에서 제가 신경쓰지 않은 문제였기에)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부가 예로 든 자술서 부분을 직접 보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ㅎ’을 쓰는데 있어서 처음 내리긋는 ‘\’이 글씨를 쓰다가 보면 ‘|’이 되기도 하고 ‘ㅎ’ 식으로 수평이 되기도 하는 것을(지금 글씨를 쓰다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ㅎ’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는데(바르게 쓰다보니), 이것은 재판부가 말하듯 ‘좌하방’이 아니라, 즉 내리긋는(“|”) 것이 아닌 우연히 나타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위와 같은 형태였다면 필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필적에 대해 ‘전문가’나 ‘박사’(검찰이 처음에 저를 김형영이 박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과학이 진실을 누를 수 없다’는 진술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나 ‘과학’이니 하는 단어를 무

리없이 사용하는데 대해 심한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 무리

사방이 온통 회색뿐인 몇점의 담벼락 안에서 악몽을 꾸고 있는 기본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넘기고 있는 수난자의 어중잡은 항변과 피끓는 절규가 소위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기했던 문제의식(순전히 객관화시킨)들이 범집행자의 손에서 또다시 ‘독선’이니 ‘사법제도의 부정’이니 하는 식의 판단이 내려질 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결국 법원은 ‘진실과는 반대의 길’을 택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실은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수천배의 무게를 더하여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고산준령을 앞둔 이의 막막함과 가슴 답답함처럼 제 양 어깨를 짓눌러옵니다.

“법정의 평등이요? 그거 말짱 헛겁니다.” 그렇게 한마디 던져버리고 원래 정치적 사건에서 그랬듯 “진실은 항상 반대편에 있었다는 상식 아닌 상식이 또 되풀이될 뿐이다”라고 자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너는 91년에 가장 재수 없었던 사람’일 뿐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이없어도 단절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몇 년의 세월이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그리운 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있는 단절의 벽이 세인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진 관심만큼이나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요구마저 통제당하고 동물적인 본능이 확대되는 ‘자유 박탈당한 자’의 일상 삶이 서러울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만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다. 젊은 날의 열정을 바쳐 모순됨을 바로잡아 보고자 시작했던 나의 조그마한 운동적 삶이 이땅으로부터 응답받은 게 고작 “동료의 유서를 대필해 자

살을 부추겼다”는 누명이었던가 하는 물음뿐인 것입니다. 누가 “역사는 항상 진보하며 진실의 편이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서대필자라는 회한한 라벨을 달고 “난 결백하오”라는 절규만 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을 분노의 허탈감 속에서 살아야 하도록 내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잔을 달게 받으라고,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라는 위로 속에서 살아간,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서 결국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저를 고통의 심연으로 몰아넣은 자들에 대한 저 주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공포감(그것은 진정 공포입니다)에 사로잡히면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못 이루고 뒤척이기도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정해져 있는 결론이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두 목소리가 숨겨질 정도로 빠르게 교차하면서 무던히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주위의 따뜻한 배려때문에, 그리고 진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그나마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유약함을 새삼 뒤돌아보게 됩니다. 설정 정해진 결론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할지라도, 또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지라도,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죽는 날까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착한 죽음’으로 똑바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사람들이 소위 ‘유서사건’을 두고 “그때 어떻게 그런 재판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옛날에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하면서 어쩌다 불행했었던 제 이름을 한번 정도 거론할 때에도 저는 그저 평범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이 되어야 ‘상식의 회복’이며 정상적인 삶의 복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앞당기는 것이 저뿐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끝 -

자료 라-0-2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92도1148  
피고인 강기훈

대 법 원 귀 중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92도 1148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기훈(姜基勳)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 아 래

#### 제1. 상고이유 제1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은, 소위 '유서대필'의 시기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김기설이 어떻게 자살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자살결심을 어떤 경위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또 유서대필의 구체적 경위는 어떠한지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데도 원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하겠습니까.

2. 형법 제252조 제2항 소정의 자살방조죄란 '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소위 정사(情死)에 있어서 우연히 살아남은 자가 그에 해당되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그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김기설의 자살결심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유서를 대필하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 경위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위와 같은 사실은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1991. 4. 26.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할 무렵 김기설이 자살할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만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가 '1991. 4. 27.경부터 같은해 5. 8.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라고 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자살이 이미 실행되어 버렸고 그 유서가 압수되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 시효저촉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서대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범죄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막고 피고인의 방어진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991. 4. 27.경부터 5. 8.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라는 일시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진 행사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

하며(토지관할도 특정되지 않는다) 자살방조 행위의 핵심인 유서대필의 경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 제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은 자살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 1. 김기설의 분신자살 경위

김기설의 성장배경과 분신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분신결의의 발생 후의 행적 및 유서가 작성된 시간 등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제7쪽 내지 제10쪽 상단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다만, 김기설이 자신의 분신자살 결심을 최초로 발설한 경위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수사기록 325쪽 이하 이지혜·송국영의 각 진술서 기재 및 원심 중인 이지혜의 진술에 따르면, 김기설이 분신자살 결의를 남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은 것은 1991. 5. 5. 23:00경 종로5가에 있는 '백제장여관'에서 위 이지혜·송국영과 술을 마시던 때임이 명백하고 그 이전에 분신자살 결심을 얘기하였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그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부터 내심 분신을 생각하여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 여관에서 분신자살의 결심을 굳힌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위 5. 5.의 김기설의 행적을 들어 방송통신대생들의 모임인 '소리새벽' 회원

박경민으로부터 모임의 진로를 지도하여 달라는 부탁으로 5. 5. 첫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김기설이 지도자로 추대되어 있는 셈이고 그 회원들보다 6-7세 정도 나이가 많은 사회인인데도 도입 도중 그 모임의 성격이나 체신에 걸맞지 않게 술을 사오게 하여 낮부터 술을 마셨는가 하면 ... 끝내는 여자들인 이지혜·송국영과 함께 술을 사들고 백제장여관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울기까지 하며 '5. 8.에 자살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고 설시하면서, 김기설이 5. 5. 전에 이미 자살을 계획한 뒤 5. 5.에 이지혜 등을 만났을 때 내심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되도록 술을 마신 다음 자살계획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위 이지혜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제2411쪽 내지 제2468쪽)에 따르면,

①5. 5.의 첫 모임에서는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김기설과 회원들이 개별면담을 하기로 하여 각 개별면담 일자를 김기설이 수첩(문제의 전민련수첩으로서 후술함)에 적었으며, ②그후 학교 씨클름을 나와 식당과 찻집을 드나들며 술을 마신 것이 모임 도중에 술을 시켜 마신 것이 아니고, ③백제장여관에서는 김기설이 원진레이온사건과 조성만열사 얘기를 하였고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을 가슴 아파하면서 '운동이란 사랑하는 것이다, 현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현실상황에 가슴 아파하며 방바닥을 치며 울기도 한 사실, ④김기설이 자살결심을 이지혜 등에게 처음 털어놓은 이유를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는 분신하겠다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였고 덜 친한 당신들과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으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김기설이 5. 5. 전에 이미 분신자살을 결심하였다는 결론에 꿰어맞추기 위한 억측이며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입니다.

원심판결이 이와같은 억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5. 5. 이전에 분신자살을 결심하였다고 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유서가 작성된 시간

가. 김기설이 1991. 5. 6. 15:00경 위 이지혜와 함께 가든호텔 뒤 '장미빛인생'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전민련 봉투 속에서 노트를 꺼내 끄적끄적하면서 '유서에 무어라 쓰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사실(위 이지혜의 원심법정 진술), 5. 7. 22:30경 홍성은과 헤어지면서 김기설이 '유서를 써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라는 취지의 위 홍성은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제435쪽 상단) 및 위 이지혜로부터 김기설의 자살결심을 전해 듣고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김기설의 자취방에 찾아갔던 임근재·이보은의 '5. 7. 23:00경 기설군의 자취방에 갔을 때 편지지갑은 종이 뒷면에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아니고>라는 등의 말이 씌어져 있었는데 명륜동에서 기설에게 쫓겨다녀서 기설이가 찢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81쪽 및 이보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과 5. 7. 23:00경부터 위 임근재·이보은과 함께 있던 김기설이 5. 8. 05:30경 대학로에서 전화 걸고 오겠다고 이들을 따돌리고 잠적한 후 5. 8. 08:00경 서강대에서 분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유서는 5. 8. 05:00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학로에서 신촌으로 가 06:30경 홍성은에게 마지막 전화를 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한다 하더라도 5. 8. 06:30경부터 1시간 30분 내에 성동구 자양동에 사는 피고인이 신촌에 있는 김기설과 만났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5. 7. 23:00경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홍성은과의 통화통화로 확인되었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김기설은 임근재·이보은과 함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무고함은 밝혀졌다 하겠습니다.

3. 피고인은 김기설의 분신결심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1991. 4. 27. 강경대군 사건 이후 김기설은 연대에 본부를 둔 범국민대책회의에 파견 나가 있었고, 피고인은 전민련 사무실을 지키며 내근을 하고 있었으며 5. 4. 밤 김기설이 전민련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전민련 깃발을 들고 나간 이후 김기설의 분신사망 때까지 서로 만나지도 못했고 전화통화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이 5. 5. '반달집' 등에서 홍성은 등을 만났을 때 '기설이 잘 있느냐'라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설이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고 하였다는 홍성은의 진술(수사기록 제439쪽)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방조자의 자살결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그 구성요건인데도 원심판결은 아무런 증거없이,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김기설의 자살결심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그 자살결심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하였는 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자살방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4. 이 사건 수첩의 조작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첩(압수물 11-1)에 관하여, 전민련수첩의 본래의 형태와 이 사건 수첩이 제1심 법정에서 제출될 때까지의 형태를 비교하여 홍성은의 검찰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위 수첩이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합니다.

가. 위 수첩은 5. 7. 밤 홍성은이 김기설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가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5. 8. 점심시간 무렵 홍성은이 연대에서 전민련 실무자 원순용에게 건네주었고, 홍성은이 김기설로부터 받을 때 떨어져 있던 전화번호 기재부분은 김기설의 친지들에 대

한 연락 관계로 5. 8.에 2부가 복사되어 김기설과 가까이 지냈던 이효경·최경환이 복사본 한부씩을 가지고 연락처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수첩 원본은 연대 내의 범국민대책위 총무국에서 보관하다가 김기설의 장례식이 끝나자 종이상자 속에 봉해진 채로 전민련 사무실로 옮겨졌으며, 5. 18.자 신문보도로 피고인이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전민련 측에서 위 수첩을 찾아 5. 20.경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위 이효경·최경환의 제1심 법정 진술 및 동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기재, 이보은의 원심법정 진술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기재).

나. 5. 5. 위 '소리새벽'모임에서 김기설이 그 회원들과의 개별면담일자를 수첩에 적을 때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지켜본 위 이지혜는 이 사건 수첩이 바로 그 수첩이었음을 확인하였고(공판기록 2445쪽),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하는 이 사건 수첩을 뒤적이던 이지혜는, 변호인들은 물론 이지혜 자신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즉, 김기설이 개별면담 일자를 위 수첩의 앞 부분에 있는 일정표 란에 적으면서 처음에는 송국영과의 면담일을 5. 7.란에 썼다가(‘국영’이라고 적혀 있음) 송국영이 5. 7.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자 5. 7.란에 썼던 ‘국영’이란 글씨를 지우고 5. 11.로 약속을 하여 5. 11.란에 ‘국영’을 다시 써넣고 5. 7.란에는 ‘용희’를 기재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공판기록 2446쪽 상단 참조).

이와같은 사실은 바로 위 수첩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산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만일 김기설의 수첩(홍성은이 연대에서 원순용에게 건네준)에 적힌 내용을 다른 전민련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면(이것이 검찰의 수첩조작 논리입니다) 피고인은 문서 위조 또는 서류조작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 변호인 제출 중재20호의 1, 2(수첩복사본) 기재와 이 사건 수첩 전화번호란 기재 내용 및 필적이 같

고 위 수첩복사본은 5. 8. 점심시간 무렵 홍성은이 연대에 찾아가 위 수첩을 원순용에게 건네준 직후에 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제1심 증인 이효경·최경환의 법정진술)은 위 수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인데도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 이효경 등의 법정진술이나 중재20호의 1, 2를 배척하였습니다.

라. 위 수첩의 형상에 관한 홍성은의 검찰진술 및 같은 수첩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정의 의혹 등에 관하여는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 53쪽 내지 64쪽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5. 업무일지의 조작

원심판결은, 업무일지가 세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 대부분이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유서는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다음 모든 사실을 거기에 꿰어맞추기 위해 추측과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한편의 추리소설을 엮어냈으며, 위 업무일지의 경우도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가. 업무일지의 첫체장은 이동진의 글씨이고 둘째 장 다섯체칸의 파란색 볼펜글씨는 임무영의 필적이라는 사실은 위 이동진·임무영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바이고, 감정인 김형영도 세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검찰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심판결은 무슨 근거로 3인의 필적이 들어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것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업무일지는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의 필적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고 5. 10.에 검찰에 제출한 최초의 서류로서, 그 당시는 '유서대필'애기가 전혀 없던 때이고(5. 18. 국민일보 보도로 검찰이 유서대필 혐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음) 의례적인 필적확인 절차로만 가볍게 생각



하였을 뿐 아니라 전민련은 김기설의 장례식 준비와 범국민대책위 활동때문에 눈코 뜰새없이 바쁜 시기여서(5. 10.경에는 분신자살의 배후수사 얘기도 없었다) 도대체 피고인이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조작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 1991. 5. 15자 감정서가 유서의 필적과 업무일지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위 감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원심 변론요지서 제42쪽 참조) 검찰도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그것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진행하던 중 뜻밖에도 세 사람의 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임무영을 유서대필자로 또다시 오인하여 현상금까지 내걸고 동인을 지명수배 끝에 검거하였다가 혐의 없음이 밝혀지자 집시법위반으로 구속하는 등의 헛뜨남까지 벌여졌으며 그 무렵 피고인도 '유서대필' 혐의는 벗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6. 메모지(검사 제출 증제7-2)

홍성은이 1991. 2. 18경 김기설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메모지에 대한 국과수 김형영의 감정서(1991. 5. 29)는 유서, 수첩 등과 동일필적이라는 것이므로 위 메모지가 김기설이 작성한 것이라면 유서도 김기설이 썼다는 결론이 되는데, 원심판결은 '김기설은 위 메모지를 잘된 글이라고 생각하고 홍성에게 준 것으로 보여질 뿐 김기설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판결 36쪽 상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위 메모지를 피고인이 썼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피고인이 위 메모지를 썼다고 볼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메모지가 김기설로부터 홍성에게 전해질 때의 상황에 대하여 홍성은은 '자기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보라면서 주어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56쪽 참조).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에게 습작시 같기도 한 내용을 낙서처럼 적은 메모지를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 봐라'라며 건네주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바로 김기설이 썼다고 보아야할 터인데 '유서는 피고인이 대필한 것'이라는 결론을 억지로 이끌어 내려니까 원심판결과 같은 궤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 메모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심 변론요지서 제12쪽 내지 제15쪽을 인용합니다.

7.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정황증거로 삼은 듯합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실들은 대부분 사실을 왜곡한 것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써 몇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심판결은, 홍성의의 수첩(검사 제출 증7-1)에 적힌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김기설이 분신 후인 5. 10.경 피고인이 적어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홍성의의 검찰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 번호번호 등을 적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해서는 원심 변론요지서 제16쪽 내지 제22쪽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나. 6. 27. 저녁 피고인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피고인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똑같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고 원심판결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검사의 신문내용을 그대로 사실인양 받아드린 것으로써 부당하며 그밖에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는 보충상고이유서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8. 감정서의 신빙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형영의 감정서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감정서에 대한 구체적 비판은 원심 변론요지서 제32쪽 내지 제58쪽을 그대로 인용하며 보충이유서에서 다시 언급하

겠습니다.

다만 원심판시중 잘못된 사실 한 가지만을 지적하자면, 원심판결은 위 감정을 함에 있어 '일본의 필적 감정 기관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를 사용하였고'라고 함으로써(판결 제47쪽) 마치 국과수가 선진국에도 없는 최신 정밀기구라도 사용하여 감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나,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란 필적감정보다는 인영감정에 사용하는 기구로서(비교하는 두개의 인영을 확대하여 겹쳐보는 방법으로써 그 이동여부를 가림) 제1심 중인 오오니시의 진술에 따르면이라도 일본에서는 위 기구를 필적감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유죄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구를 동원하였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제3. 기타 무죄의 증거들

문서감식의 보편적인 방법 그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논리적 추론과정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는 일본인 오오니시의 감정서(번호 인 증제19-1, 2),

유서의 필적과 너무나 흡사한 김기설의 필적들, 즉 증1호 방명록(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증3호 방명록(전교조 원주지회), 증5호 메모(승의여전 학생회간부 제출), 증6호 출장비청구서, 증8호 노트, 증9호 대봉투, 증10호 방명록(수원 민청련), 증11호 책표지, 증13-1, 14-1 각 명함, 증23-1 각서(한원석 제출) 그리고 정자체로 씌어진 증2호, 7호, 12호의 각 필적들,

한편 유서와는 확실히 다른 피고인의 필적들, 즉 증15호의 1내지 10(각 우편봉합엽서), 증16호의 각 카드, 증17호 보고서, 증18호 책, 증25호 추기경에 보낸 편지의 각 필적들,

그리고 변호인측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모두어 보면 이 사건 자살방조의 점은 무죄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제4.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1. 국가보안법 해석의 기본원칙 위반

가. 원심판결에서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써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국가보안법 해석적 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에서 전혀 거시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피고인은 소위 민족민주혁명노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건설하여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혁명의 불꽃' 그룹에 1989. 1. 가입하여 1989. 9.경까지 회원들과 연락을 가지면서 위 그룹에서 인쇄배포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탐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도 종래와 같은 형태와 해석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 정적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고,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자체에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삽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의 점은 피고인이 1989. 9. 이전에 행한 일이며, 현재는 위 혁명의 불꽃 내지 그 후신인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는 아무런 조직적 활동적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공개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간부로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행위를 과거에까지 거슬러 추적하여 처벌하려고 할 때에는 과연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필요성 유무와 그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해석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변화

가. 남측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연형묵 정무원총리는 1991. 12. 13.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 합의서는 1992. 2. 19. 그 문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중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않으며,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국사정전협정을 준수하며 ...' 등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나. 이 합의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그것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국제법적 주체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인지 아니면 정치지도자 사이에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한 신사협정으로서의 정치적 약정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장희는 '이 합의서는 국제법 주체성을 지닌 남북한 당사자가 만나 문서로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조약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동 교수의 1992. 2. 12. 제1회 평화통일대토론회 발표문 참조). 이와 달리 명지대학교 법학과 김명기 교수는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관계 아닌 통일관계의 잠정적 특수관계이며, 기본합의서는 통일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과정에서 적용될 기본규범이고, 다음 단계인 국가연합이 형성되면 민족공동체 헌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법률신문 1992. 3. 16.자 제14면). 이 합의서에 관하여 그것을 조약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 합의서의 규범성에 관하여는 일치된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의 문언으로 볼 때에도 그것이 선언적 성질을 초과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 그런데 원심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와 같은 남북합의서의 정치적 법적 의미는 도의시한 채 여전히 북한은 소위 그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의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대남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하면서 남북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원심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위 합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기만하여 작성한 것이며,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합의서의 문언과 실제내용과는 다른 것이니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취지를 설파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에 유효적인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든 잘못 전개될 수도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지는 것과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진심 그 자체마저 가지지 못하고 거짓되고 협랑한 자세만을 고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취할 자세는 성실성과 진심이요, 항상 잃지 않을 태도는 견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합의서 발효 이후에서조차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공인하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공적기관인 사법부로서는 크게 잘못된 인식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 원심에서는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가에 관하여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현 정부는 미·일제국주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독점제벌의 무한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 등과 독점자본가 놈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서 제반 파쇼적 악법과 권력기구 수탈적인 조세제도 등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어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 유인물의 용어는 무척 거칠고 도전적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존재는 우리의 발전과 생존에 기여하는 듯하면서도 그들 이상으로 도약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며 끊임 없이 우리의 자주성을 위협합니다.

제5. 결 론

이 사건은 소위 '재야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이 빚어낸 하나의 비극입니다.

한번 저질러진 잘못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가 정의사회이며, 정의사회 구현은 바로 사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의 왜곡되어온 사실을 바로 잡아 신뢰받는 사법부,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원심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 6. 17.

피고인의 변호인

- 변호사 유 현 석
- 변호사 김 창 국
- 변호사 이 석 태
- 변호사 박 연 철

대법원 귀중

우리가, 남북화해의 길을 가려 하여도, 미국은 초강대국의 이해에 맞추어 우리의 행동반경을 크게 제약하고 맙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과대평가하면서 남북의 경제교류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하여는 매년 막대한 무역수지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피와 땀을 일본에 공물로서 바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일본의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여진 오늘날 밖으로 눈을 돌려 미·일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하여 각성하지 않고 국내의 청년비판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소인배적 가치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된 어느 재벌은 자신의 개인재산이 몇조원이 된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법원·검찰청사 앞에는 뜨거운 여름날에 한두평 되는 어두컴컴한 비닐하우스에서 일가족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심법원의 법관은 매일 이 비닐하우스촌을 내려다보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빈부의 격차를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수조원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일 수 없는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으며, 빈민과 재벌의 재산정도가 천문학적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피고인이 소지한 유인물의 반체제성을 성토했기에 여념이 없는 원심법원에 대하여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원심에서도 밝혔거니와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피고인에 대한 자살방조죄가 무죄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복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계기로 하여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규범성, 그리고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의 점에 대하여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라-0-3

### 상 고 이 유 보 충 서

사 건 92도 1148 자살방조등  
피고인 강 기 훈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보충합니다.

#### 1. 서

작년 5. 18 검찰에 의하여 처음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온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끈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작년 8. 28. 제1회 공판이 시작된 이래 1심과 2심을 거쳐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나라의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자살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은 피고인은 미처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바로 그 동료의 자살을 부추기고 유서를 대신했다는 전대미문의 혐의를 받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맛 보았으며 형극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통은 아마도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이켜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제까지의 과정은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거나 왜곡하는 거짓과 허위와 맞서 부단한 싸움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참으로 어렵고도 험겨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이고 거짓된 유서대필 혐의 발표와 계속된 검거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결백을 굳게 믿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오도된 언론과 여론이 진정되어 건전한 상식과 객관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진실의 눈이 갖추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수많은 김기철군과 피고인의 필적자료들이 각지에서 수집되어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의 진실된 증언과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재판기록에 생생하게 살아 지금도 피고인이 결백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신변의 위협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료를 제공하고 증언해준 이들의 용기에 대하여 뜨거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선두에 서서 검찰과 굳건히 마주 대항하며 진실을 외쳤던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은 바로 그러한 사실때문에 구속되어 6개월여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피고인과 김기철군의 동료였던 임무영은 피고인이 자진출두한 이후 이 사건 유서대필의 진범으로 지목을 받아 안기부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후 가혹한 2일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아무런 혐의없음이 밝혀졌으나, 역시 구속되어 6개월여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양심과 상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결백을 외치며 무죄석방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지원과 믿음은 바로 피고인이 무고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을 평소 잘 알고 있다가, 피고인의 인격이 특히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김기철군의 유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기철군이 이 사건 유서를 쓰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그 누구도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검찰이 겉으로 보기에 확신을 가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각종 자료를 공개해 온 마당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검찰의 단정적인 범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석방의 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요, 상식이 가리키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라 명명되어진, 이 사건에 관한 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어 왔다고 믿는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사법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건은 이 사건이 피고인 등 운동권이 혁명을 위하여 김군의 분신자살을 생명의 도구로써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가설인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의 배경에 관하여 김기철군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혁명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도록 선택 또는 선정되었으며, 피고인은 김군의 자살을 고무하기 위하여 자살자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뒷일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하여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 등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변혁이론을 실천하려 한 전형적인 투쟁이며(공판조서 118쪽), 피고인 등과 같이 운동권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에서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살인이라도 서슴없이 할 것을 선행하고, 예컨대 1920년대 공산주의자의 '살부회'라는 단체에서 보듯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므로(공판조서 119쪽), 이 사건은 이러한 생명을 도구로한 공산주의자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논리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 부분은 목적을 위하여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극언합니다(공판기록 1129쪽).

이처럼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생명을 도구로 한 공산혁명원리에 두고 있는 검찰의 논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 유명한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을 상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양이 처녀의 몸으로 엄

청난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고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보였을 때, 검찰은 공산주의자인 권양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권과 같은 좌경의식화된 핵심 문제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활동 투쟁과정에서 상호연대의식 고취, 일체감 조성 및 조직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 '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권의 수사과정에서의 성모욕 주장은 인간성의 침해를 빙자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운동권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 '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명'까지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극단적인 가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른바 '운동권'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민주화운동 방향이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운동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력이나 사고방식도 천차만별일 것이며, 각자가 속한 단체의 설립이념과 활동방향에 따라 운동양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각자의 민주주의 이념이나 세계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어떠한다고 할 만한 지식이 없으며, 종합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 소속단체와 배경이 어떠한간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일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은 언제부터인지 운동권이라 불린 사람들의 자기들 돌보지 않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에 힘입은 바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비판세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활동하고 기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양식과 상식에 따라 호홉하고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대학졸업자로서의 출세길을 마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피고인이 그의 사상을 위해서 동료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원하지 않는 자살을 하게 하고 유서를 대신 써주었을까요 도대체 운동권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감히 누가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검찰의 이러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이 과연 사실인지,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 중 어느 쪽이 올바른지 묻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이 정치적 비판세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불법수사는 언제까지 제한없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 및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인권옹호와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추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정한 수사목적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진실을 왜곡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이처럼 기소 이전의 수사단계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수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규를 무시한 것은 일일이 그 예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기설군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은 단순한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연행되어 나흘 이상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의 참고인들 대부분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검찰에 강제연행되어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 속에서 검찰의 의도에 따라 기억을 강요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한 사실도 불명료한 것처럼 진술을 유도당했습니다(공판기록 1165쪽에 의하면, 검찰은 이들 참고인들을 '검거'하였다고 표현한다).

홍성은의 경우 이와 같은 강제 수사과정에서 격심한 심리적 동요와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동인의 진술은 실제의 기억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진술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앞뒤 모순이 많고 단

정적인 진술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검거' 수사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와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일이 적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들 진술의 중요한 내용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무영군의 경우는 사실상의 진범으로 오인되어 일체의 적법절차 규정이 무시된 채 가혹한 고문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와같은 불법수사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으며, 이 점은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의하여도 지적되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특별히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뜻은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하여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적법절차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여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박탈하는 등 그를 비롯한 참고인 대부분의 인권을 유린하는 한편 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는데 장애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행한 이러한 불법수사는 엄중히 법의 이름으로 심판 되어야 하며, 이 사건은 검찰의 이러한 불법수사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이 과연 확립될 수 있는 이념인지 묻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법관과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법부가 정치권력기관의 하나인지 국민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반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현대민주사회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입법과 행정권의 남용은 독립된 사법부에 의하여 견제되고 바로잡아진다는 가능성하에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원과 법원에 대한 권위존중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높고,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크게는 이처럼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작게는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법원과 법원에 대하여 애정과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갈

등관계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과 법관의 판단을 받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제적 진실이 발견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원은 거기에 부여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보거나 실제의 존립의미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을 받는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기본적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사법부를 "인권보장의 보루"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의 하나가 경찰서와 법원이 되어 버렸으며, 법관을 포함하여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종의 경외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이들이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검찰에 대하여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법관으로서의 생활을 '오욕의 역사'라고 부르는 민망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

다. 법원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으면 이런 오욕의 역사도 없었을 터이고, 국민들의 위화감이나 불신감도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법원의 모습이나 실상이 어떻든 간에 하루 빨리 법원이 '인권보장의 보루'로서의 기능 및 '법대로' 재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국민들의 당연하면서도 소박한 바람을 배반하고, 법관 또는 법원이 또 하나의 정치권력으로서 자기도취에 빠져 계속해서 국민위에 군림해 나간다면 이것은 법원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전도를 암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말하자면, 피고인이 결백함을 명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정의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관계한 사람들, 변호인 및 이 사건을 방청한 언론관계자,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과연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신하고 있을지 감히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기록과 재판진행을 지켜본, 그리고 어떤 기회

에 이 사건 재판기록을 보게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의없이 그가 피고인의 결백함을 확신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한결같이 의혹을 나타내는 보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이나 법관은 사실판단에 관한 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의 대변자이며,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사법부는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인류가 발달시킨 수많은 증거법 이론은 결국 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사법부는 더이상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법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는 권위나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치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명백히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우리 국법하에서 법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 사건은 법원이 과연 국민의 편인지, 진실의 편인지, 상식의 편인지 묻고 있습니다.

넷째, 이 사건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과연 살아 숨쉬고 있는가, 민주주의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성은 구비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전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살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분신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제비뽑기로 분신자를 결정한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검찰의 일방적이고 집요한 혐의내용 발표, 이 사건 유서와 김기설군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이동능단불능'으로 된 필적감정 결과에 대하여 '필적감정에 있어서 이동능이란 결국 다르다는 뜻'이라는 등 일방적인 감정결과 왜곡, 압수물 9-1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쓴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 검찰의 발표내용만을 주로 받아 마치 피고인을 유서대필자로 단정한 듯한 사건 초기의 대대적인 언론보도 등은 당시 우리 사회 일반의

정서가 상계를 달리고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극도로 서로 불신하고 인간성의 파멸에 대하여 둔감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검찰의 왜곡수사와 하급심 법원의 그릇된 판단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하여 최소한의 견제를 하고 적절하게 항의해 왔더라면, 이처럼 무고한 피고인을 기소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마침내 마비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힘이 곧 정의'라는 야만시대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우리 사회 일부의 우연한 오만에 의한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저 거대한 불의의 상징적인 희생자로 느껴지는 공포감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하며, 정당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시민의식의 건강성 회복과 함께 상식과 진실이 승리하는 계기로서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여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 2 단순하고 명백한 의문

이 자리에서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글자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일일이 그 잘못을 지적할 여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듭해서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왔으며, 마지막으로 원심판결의 오류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사건 전체를 개관하면서 누구에게나 쉽게 떠오르는

단순하고 명백한 의문에 대하여 잠깐 짚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이것은 법관의 양심에 직접적이고, 직관적이고, 직각적으로 호소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김기철군과 마지막으로 만나 자살을 만류했던 이보은을 비롯하여 모두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그중 위 이보은을 비롯한 20여명이 1심과 원심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들 중 이보은, 이영미, 서준식, 이동진, 임무영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발생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본 적도 없고, 서로 생면부지의 학생, 시민, 사원, 기자 등 연령층도 다르고 직업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우연히 소지하게 된 필적자료를 통해서 또는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유서는 김기철군이 쓴 것이 틀림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유서는 피고인이 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법정증언은 모두 거짓입니까.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저 살기 등등한 법정에서 와서 증언을 한 것입니까.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특히 전민련측이 검찰에 제출한 김기철의 수첩(압수물 11-1호)은 원심판결대로라면 피고인이 조작한 것이지 본래의 김기철군의 수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관하여 증인 이효경과 최경환은 위 수첩이 본래의 김군의 것임을 보이는 증거로서 변호인을 통하여 각각 중제 20의 1, 2호(수첩 복사본)를 제출하였으며, 똑똑히 증언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이 사실이라면 위 증거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이들은 단순히 기억에 반하여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들 또한 피고인과는 생면부지의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위 수첩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위 중제 20의 1, 2호가 사실은 김군 본래 수첩의 복사본이 아닌데도 마치 그것인처럼 거기에 권범재 등 다른 사람의 필적까지 가필하게 하여 제출하고 위증한 것입니까.

이들이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피고

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돕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증언한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상 이런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20여종이 넘는 김군 및 피고인의 필적자료를 원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필적자료는 개인이 우연히 김군이나 피고인으로 받아 소지한 것도 있고, 교도소의 검열을 거친 서신도 있습니다.

김기철군의 필적자료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들 필적자료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 유사필적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언뜻보기에 동일인의 필적인지 분간이 안가는 것, 검찰이 유일한 김군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자체와 완전히 똑같은 반면, 유사필적과는 그 유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각각의 소지인이 그것이 과연 유사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김군의 필적이 틀림없다고 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제각기의 것처럼 보이는 필적자료들은 그 형상 자체에 의하여 과연 원심법원이 배척한 것처럼 본래의 김군 필적이 아니라 제3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필적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의문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들 모두가 김군의 필적이 아닌데도 마치 김군이 쓴 것처럼 조작된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이 그렇다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검열을 받고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중제 15-1호 이하)을 보기로 합니다. 1심 판결이나 원심판결은 언급도 안한, 피고인이 쓴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 편지들의 글씨-이 사건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유서의 글씨와 전체적으로 대조해 보기를 권합니다. 과연 누구나 섣뜻 유서의 글씨와 같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들을 쓴 바로 그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s) 이 사건 유서를

썼다고 판단됩니다. 객관적으로 과연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적어도 이상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의문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정말 만족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 3. 검찰의 필적은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검찰이 그동안 중요한 김기철의 필적자료를 은폐해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이 원심변론 종결 후인 1992. 4. 14 원심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1(공판기록 3833쪽), 수첩 1매입니다. 김기철군은 1988년 군에서 제대할 무렵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서기선 하사에게 자신의 주소와 동료 전역병 등의 주소를 동인의 수첩에 써서 주었습니다.

동인은 김군의 필적이 담긴 수첩을 소지한 채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있다가 1991. 5. 13경 김군의 필적을 찾기 위하여 동 부대를 방문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남기춘 검사 등 이 사건 담당 수사검사 2명에게 위 수첩 1매를 자신의 수첩에서 뜯어주었습니다. 당시 필적교부 과정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근부대에서 정훈장교로 복무중인 이찬진 중위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인은 그날 19:30경 위와 같이 남기춘 검사 등에 의하여 필적수집 수사가 종료한 후 부대인근 갈비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유사필적과 유사여부를 묻는데 대하여 유사하다고 답변했으며, 당시 그 자리에 합석한 해당 부대장 등 누구도 다르다는 의견을 말한 바는 없었습니다.

위 필적은 그동안 이 사건 수사기록은 물론 언론에도 일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은폐되어 있다가, 뒤늦게 위 필적수사가 끝난 후 전역하여 개업한 이찬진 변호사 등의 폭로 등에 의하여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새롭고도 중대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연히 즉각 원심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

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이 김군의 필적을 김춘테 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 공판절차 재개신청에 관한 의견”에서 “위 자료는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필적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참고자료로 하고 필적감정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그후 검찰은 김기설의 이력서, 안해정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 등보다 확실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씨들을 입수하여 이를 압수, 필적감정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하여는 “문제된 필적 ‘참고자료 1’은 이를 입수하였던 검사 박경순이 수사가 끝난 후 참고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대안으로 유학을 가면서, 검사 송명석에게 인계하여 계속 보관중에 있었습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검찰의 변명중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필적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 참고자료 1이 수집된 때는 1991. 5. 13. 경으로서 검찰 외에는 언론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중 누구도 유서대필 여부가 문제되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수집경위, 상황 및 검찰이 이찬진 변호사의 폭로 이후 추가로 조사하여 원심법원에 후송한 서기선 하사의 진술서 및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공판기록 3846쪽 내지 3851쪽)를 종합하면, 참고자료 1, 수첩 1매의 위에서 둘째줄 “김기설 …” 부분부터 아래에서 셋째줄 “포항…”까지의 기재부분은 김군이 쓴 것임이 명백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검찰이 제출한 김기설군의 필적 중 실제로 김군이 작성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김군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하여 위 참고자료 1은 서기선 하사가 똑똑히 보는 앞에서 김군이 써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검찰이 입수한 김군의 필적자료 중에서 참고자료 1만큼 객관적으로 김군이 쓴 것임이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필적인지 분명하지 않아” 수사기록에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1991. 5. 18.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검찰이 이 사건 유서와 대비시킨 김군의 가족이 제출한 책 속표지 글씨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 주세요”라는 부분과 대비할 때 뚜렷이 드러납니다. 증인 장병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필적자료는 동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인은 위 글씨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동인의 처로부터 김군의 큰누나가 얘기받은 직후에 썼다고 들었다고 할 뿐, 동인이 책에서 뜯어내어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누가 쓴, 어떤 제목의 책에서 뜯어낸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공판기록 243, 244쪽).

따라서 이 글씨가 과연 김군의 필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성의 정도를 살펴볼 때, 참고자료 1이 보다 객관성이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병호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첫 유서대필혐의 발표시 유서와 대비시키면서 당시 감정결과 유서와의 필적 이동여부에 관하여 ‘논단불능’이라고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서필적과 다른 김군이 쓴 글씨라고 왜곡 발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검찰의 주장은 쉽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참고자료 1을 수집한 때는 1991. 5. 13.경으로서, 기사 후에 검찰이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를 굳히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5. 13.경 무렵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를 수사자료로 삼아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당연히 동 자료와 유서와의 필적감정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그후 검찰은 김기설의 이력서, 안해정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 등 보다 확실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씨들을 입수하여 이를 압수, 필적감정에 사용하였다”고 궁색하게 변명하나, 앞서의 김군가족이 제출한 필적자료는 제출 즉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물 4-3호의 “국민연합 김기설님”이라는 글씨는 출처 불명의 책자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글자수도 극히 적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수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던가, 내용이 풍부하지 못했었던가 하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필적감정의 난이 여부는 검찰이 아니라 감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991. 5. 13. 김군의 필적을 입수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김춘 검찰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우리가 검찰의 속마음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수사상황 및 참고자료 1의 필적내용이나 형상을 고려하여 상식적으로 몇가지 추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도 도대체 어떤 경위와 단서하에서 검찰이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서대필 혐의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수사기록 81쪽의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 남기춘은 검찰 주사 라종규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 5. 8. 18:00 경기도 안양시 호계2동 사무소에서 별지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라는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바와같이, 검찰은 김군의 분신 직후인 1991. 5. 8. 이미 피고인을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죄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위 수사기록 앞뒤의 수사상황이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위 기재중 ‘1991. 5. 8. 18:00’가 타자 잘못에 의한 것임이 아님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수사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수사방향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고,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이 사건 유서가 김군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필적자료나 기타 증거자료는 이 사건 수사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수사방향에서 1차적으로 1991. 5. 13. 저녁 위 필적수집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검사팀과 김군이 복무하였던 부대장 등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이 사건 수사본부에 전달되어 필적을 감추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찬진 변호사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 남기춘 검사 등 수사검사 2명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 필적과 유서를 내보이며 당시 해당부대장 등 합석한 사람들에게

게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찬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모두가 유서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다르다고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남기춘 검사 등 수사검사 2명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뜻의 대꾸를 했을지 모릅니다.

남 검사 등은 당일 늦게 서울지검으로 돌아가 필적 필적수집 경위 및 필적대비에 관한 저녁식사 자리의 분위기 등을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남 검사의 보고는 유서대필쪽으로 수사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수사본부의 구미에 맞지 않았을 터이고, 자연스럽게 수사자료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당시 검찰이 얼마든지 서기선 하사를 조사하여 보다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진 변호사 등의 폭로가 있자 박경순 검사 등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 궁색한 변명을 하며 원심종결 후 부랴부랴 서기선 하사를 조사하는 시늉을 한 처사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고 하겠습니까.

셋째, 당시 저녁식사 분위기가 어떻든 서울지검은 나름대로 검찰내부의 문서감정반이나 어쩌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형영에게 비공식적으로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를 문의하였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 유서 필적과 다르다는 소견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동 필적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이 사건 공소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참고자료 1은 김군의 필적자료목록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은폐의도 분석에서 나아가 상식적으로 참고자료 1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견 참고자료 1에 있는 김군의 글씨는 과연 유서 글씨와 동일한 모양인지 자신있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찬진 변호사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참고자료 1의 글씨가 유서의 글씨와 확연히 다르다고는 도저히 단언할 수 없고, 유사하다는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찰은 앞서의 의견서에서(공판기록

3831쪽) "참고자료 1의 수첩글씨는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소위 '홀림체' 글씨이었던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 4의 '이력서'의 주소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정자체글씨인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견 보기에 검찰의 주장처럼 정자체로 쓴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의깊게 살펴보면 참고자료 1에는 유서글씨와 같이 속필체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금병철", "포항"과 같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글씨모양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김기설의 필적자료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검찰의 주장과 같이 이해정이 받은 김군의 편지나 위 '참고자료 4', 이력서 등은 모두 또박또박 쓴 것입니다. 따라서 위 참고자료 1에 쓴 '금병철', '포항' 등의 속필체 글씨는 검찰이 제출한 필적자료에 대체로 공통된 또박또박 쓴 정자체 형식의 글씨뿐만 아니라 빠르게 쓴 속필체의 글씨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은 바로 한눈에 김군의 정자체 글씨와 속필체 글씨가 혼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고자료 1이 이 사건 유서와 검찰이 제출한 정자체 글씨, 변호인이 제출한 필적자료 중 속필체형의 글씨를 모두 매개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1은 적어도 김군이 평소 검찰이 제출한 정자체 필적만으로 글씨를 쓰고, 따라서 빠른 글씨로 쓰여 있는 이 사건 유서는 김군이 쓴 것이 아니라라고 단정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추론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건 감정 당시 국립과학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이던 김형영이 그의 감정서에서 유서필적과 피고인의 글씨가 같으며 김군의 필적이 아니라는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한 것에, 모음이 받침 'ㄴ'을 침범하게 쓰는 회소성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의 필적과 유서필적이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린 1991. 5. 15자 감정서에서 동인은 유서의 "선", "준", "인", "진" 등에서 관찰되는 'ㄴ' 받침에 대한 모음의 침범 습성이 피고인이 쓴 "문", "분"에서 보는 'ㄴ' 모음의 'ㄴ' 받침에 대한 침범습성과 같으므로 동일필적이라

고 감정하였습니다(수사기록 413쪽 내지 421쪽, 공판기록 1149쪽 참조). 원심판결 또한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 '별표' 위에서 3번째 항에서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글씨에서는 'ㄴ' 받침에 있어서 같은 형태로 필획이 침범되어 있으나, 김기설군의 편지에서는 이러한 필획침범에 관한 특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형영의 감정이나 원심판결에 의할 때 만일 김기설군의 필적에서 'ㄴ' 받침에 관한 같은 형태의 필획침범 특징이 발견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를 토대로 유서와 김군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론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 되고, 나아가서 양자가 동일필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참고자료 1을 보면, "안양시"에서의 "안", "한일"에서의 "한", "대전"에서의 "전" 등 "ㄴ" 받침을 쓰는 경우에는 한결같이 유서필적과 같은 형태로 필획이 침범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ㄴ" 받침과 관련된 필획침범의 특징에 있어서 김형영의 감정서와 원심판결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 필획침범의 형태에 관한한 이 사건 유서는 김군이 쓴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 사건 유서가 김군이 쓴 것이 아니더라도 단정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1의 글씨는 정자체와 속필체가 섞여 있는 듯이 보이면서도 그중 "경", "기", "안", "한", "전", "항" 등 및 아라비아숫자의 표기 습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글자의 모양이 왼쪽 아래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서의 글씨모양의 전체적인 경사특징과 중요하게 일치하는 점이며, 피고인의 필적이 거의 예외없이 오른쪽 아래로 경사되어 쓰여지는 습성과 대비할 때 유서가 김군이 쓴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문감정인이 아니고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참고자료 1의 "김기설"이라고 쓴 부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글씨와 이 사건 유서 2매의 말미에 쓰여져 있는 "김기설", "기설"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이 썼다고 판단한 홍성은의 수첩에 쓰여져 있는

"김기설" 부분(수사기록 289쪽)을 각각 비교해 볼때, 과연 이 셋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요. 선입견이 없는 보통사람이라면 아마도 심증판구 위 셋은 대단히 유사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참고자료 1은 이 사건 유서가 김군이 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동 자료를 은폐해 왔습니다.

검찰은 앞서의 의견서에서 위 참고자료 1외에 김군이 군복무 당시 썼다고 하는 필적도 입수하였는데 수사목적상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의견서에 첨부하여 참고자료 2, "제101대대 종파별 신자현황"(공판기록 3834쪽 내지 3836쪽 참조)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참고자료 2의 글씨체를 볼 때, 김군이 쓴 것이라는 데도 검찰이 유일한 김군의 글씨체라고 주장하는 정자체와도 인듯 같은 사람이 쓴 것인지 쉽게 구별이 안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글씨체란 같은 사람이 쓰는 경우에도 쓰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검찰은 차-트글씨이므로 필적감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의뢰 안한 듯이 하고 있으나, 차-트글씨의 개념규정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차-트글씨도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차-트글씨라는 이유만으로 필적자료에서 제외하거나 임의로 감정사항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은 이 사건 유서글씨가 검찰이 제출한 김군의 필적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박또박 정자체, 예컨대 특히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의 겹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붓글씨형의 궁체로 쓰여졌을 경우, 만일 검찰이 역으로 이 참고자료 2와 같은 글씨체의 자료만을 제출하여 유서필적과 다르다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심법원은 마땅히 공판정찰을 재개하여 위 참고자료 1 등에 대한 증거조

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 4. 유서대필의 동기

이 사건이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첫 혐의사실 발표부터 온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끌었던 까닭은 그 혐의내용이 자살자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인데, 이처럼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유서를 대신 써주어 자살을 권유 또는 방조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너무나도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초점은 처음부터 유서의 대필여부와 함께 과연 왜, 어떤 경위로 유서를 대필하게 되었다는 것이냐가 규명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것이 일정한 목적의식하에서 이루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전무후무한 성격때문에 특히 어떤 동기와 배경하에서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살자 자신이 유서를 쓰는 것보다 남에게 대신 쓰게 하는 것이 자살자의 자살결의를 돕는다고 강화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유서란 죽는 자가 마지막 남기는 말을 적은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유서를 작성할 능력이 결여돼 있거나 그밖에 남에게 유서를 작성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서를 남에게 작성시키는 것은 자살결의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기설군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16월지 2매 가량에 불과한 유서 2매를 타인에게 대신 쓰게할 사정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신 썼다면, 어떤 특수한 사정때문에 대신 쓰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피고인이 대신 유서를 썼다고 가정하고 온갖

가설과 상상의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그 동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이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이 글씨를 더 잘 쓴다든가 미학적으로 더 세련된 문장을 써서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가정이 논의의 필요를 없애 줄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피고인은 "현정부를 타도한 후 민주주의의 민주민주정부의 수립을 획책하면서 민주봉기를 유도, 그 기폭제로 삼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념적 동지인 김기철의 유서를 대필해 주어 그의 자살을 부추"였으며,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서를 대필하지 않고도, (만일 명분 여하에 관계 없이 자살을 부추기는 일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상상 가능한 일이라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검사 나름대로의 사건배경 주장은 유서 대필 동기와는 무관한 것이며 증명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생명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면서도, 이 사건 유서대필의 동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입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심판결 또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았습

니다. 원심판결은 고작 이 사건 유서가 그 "내용 자체로 본인이 쓴 마지막 유서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고, "1991. 5. 5 전에 이미 자살을 계획한 뒤 ... 5. 8 ... 즉흥적으로 자살을 하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5. 8 쫓기듯이 분신자살을 한 점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뛰어넘은 자살로서 그 자체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련에서 자살하려 한 것임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단정짓고 있을 뿐입니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자살의 경우 "사회통념에 맞는" 자살의 과정 또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김군의 이 사건 분신자살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

는 자살이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자살 자체가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것인데, 어떻게 자살 자체를 사회통념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자살로서 그 자체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련에서 자살하려 한 것임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 어떤 논리적 근거로 자살 그 자체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련에서 자살하려 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련"이란 무슨 뜻이며, 셋째 어떻게 "쉽사리" 추정한다는 것인지 그 논리적 비약, 상상과 추상성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여 보완한 후 이해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사회통념 운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얼마나 사회통념을 뛰어넘어, 상식을 무시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 5. 김형영의 감정

여기서 새삼 재론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유죄인정의 직접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김형영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서입니다.

김형영은 이 사건 유서와 김기철군의 필적은 다르다고 감정한 반면, 피고인의 필적과는 같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채용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김군과 피고인의 필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관련 증인들의 증인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김형영은 이 사건 수첩의 조작논리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첩 절취선의 불일치에 관한 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업무일지 조작논리를 뒷받침하는 필적 감정을 하였습니다.

실로 김형영이 한 이 사건 감정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의 중심이며,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을 채용하는 이상 그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되는 모든 증거들은 원심판결의 판

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이목을 끈 사건,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회의 양심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은 사건,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한 많은 증인들, 국가의 공신력의 시험대라고 과대포장된 사건, 이렇게 특이하고, 복잡한 사건의 열쇠가 현재 뇌물수수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형영 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건이 우리시대의 불신을 배경으로 검찰의 연출에 따라 태어난 사생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의 그로테스크한 드라마라면, 김형영은 이 연극의 진정한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양심과 상식을 시험하며,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형영이 한 감정의 신빙성, 객관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뇌물수수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파멸된 인간성의 소유자이지만, 이점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상세히 변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가 한 이 사건 감정 자체만을 분석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누누히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적 감정의 일반 원리에 따른 감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자의적 감정을 어느 정도 관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필적감정의 객관성, 전문성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점입니다.

현재 김형영이나 증인 양후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필적감정의 일반 원리는 대조문서에서 나타나는 동일 특징수의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양 문서의 필적은 동일하다고 판정하고, 45% 이하일 때는 상이한 필적, 45%부터 60%의 범위내인 경우는 이동불명, 60%부터 70% 범위내인 경우는 각 필적상의 특징을 참고로 하여 이동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심판결 또한 이러한 필적감정의 원리를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론적으로 필적감정에 있어서 관찰되는 특징의 항목이나 유형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감정인은 우선 대조문서에서 비교해야 할 중요한 특징항목을 유형별로 몇가지 할 것인지 결정하고(예컨대 자음 'ㄱ'을 쓰는 필법이라든가, 쓰여진 문자의 경사도, 문자 사이의 간격 등, 시간을 충분히 들여 주의깊고 면밀하게 이루어진 감정일수록 대비되는 특징항목이 유형별로 다양하고, 특징의 현출이 현저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특징항목의 대비가 고려되지 않아도 그러한 항목의 대비만으로 이동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붙인 후, 최종적으로 대비되는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대조문서에서 각각 동일한 특징수를 찾아 그 비율에 따라 이동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결론에 이르는 단계는 전문감정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머리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몰라도 위와 같이 통계적 방법에 따르는 이상 전문감정인이라 해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는 이치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형영이나 양후열 또한 모두 위와 같은 통계적 방법에 따라 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든간에 김형영이 한 이 사건 감정역시 마땅히 위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단계를 거쳐 감정결론에 이르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충실한 적시는 감정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이 원심에서 참고로 제출한 "문서감식의 연구"(이 책이 국내에서 발간된 유일한 필적감정 전문서적이다. 검찰도 이 책 일부를 증인 양후열을 통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공판기록 3374 내지 3379쪽 참조)에 의하면, 이 저서의 저자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화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창용이 1966년 경에 작성한 필적감정서가 인용되어 있는바, 다소 조잡해 보이기도는 해도 앞서의 통계적 방법에 따른 필적감정원리를 일부 적용하여 같은 사안에 관하여 전에 이루어진 필적감정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의 뒤를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종사한 필적감정인이 필적감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감정서 작성을 충실히 해 나갔더라면 20년이 훨씬



님은 오늘에 있어서는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감정서가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김형영이 작성한 감정서는 위 정창용의 저서에 소개되어 있는 감정서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도대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설명이라고는 없습니다. 1966년의 감정서와 오늘의 감정서를 비교해 볼 때 발견되기는 커녕 훨씬 후퇴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최소성 있는 특징의 동일비율을 감정서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일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김형영을 옹호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무엇을 근거로 한 일반 관례인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기로 합니다. 사실 만일 김형영이 필적감정의 일반 원리에 따라 이 사건 감정을 하였더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설사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가 한 감정을 존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증언을 토대로 그가 과연, 그가 스스로 과거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하는 필적감정의 일반 원리에 따라 이 사건 감정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공판기록 3395쪽 내지 3402쪽 참조).

먼저 아래에 인용하는 바와 같이 필적감정의 일반 원리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앞서의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문 : 또 위 책에 의하면 증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동일특징수가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 이하이면 상이필적, 45퍼센트부터 60퍼센트의 범위내인 경우는 이동불명, 동일특징수가 60퍼센트부터 70퍼센트의 범위내인 경우는 배자형태, 필세의 특징의 이동을 참고하여 이동여부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이동비율은 필순 혹은 자획구성별로 특징을 찾아 동일특징수/대조특징총수×100이라는 산식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또 이러한 방법은 일본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동인도 이에 따라 하였다고 답변합니다.

문 : 증인은 1심공판에서 위 이동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감정결과 70퍼센트 이상이면 유사한 것으로, 45퍼센트 이하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육안 관찰로 개인특성을 찾고 그 특징이 몇 퍼센트 인가를 정밀관찰하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증인이 한 이진 필적감정 방법은 증인이나 문서분석실의 다른 감정요원이 개발한 독자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는 보편적인 방법에 따라 하였다는 뜻인가요

답 : 예,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그가 이 사건 감정을 함에 있어서 그의 위 증언에 맞게 실제로 정밀하게 대조문서에서 나타나는 동일특징비율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필적의 이동여부를 판단하였는지 여부가 됩니다. 그는 일단 정밀하게 관찰했다는 뜻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문 : 증인은 실제로 이진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대조자료에서 관찰된 특징이 몇 퍼센트 인가를 정밀관찰하였나요

답 : 몇 퍼센트의 ...,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그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2매, 김기설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2매 및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의 필적 이동여부에 관하여 모두 동일필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1991. 5. 15자 감정서를 제시하여 과연 어떤 특징부분에 착안하여 감정하였는지, 그리고 위에서 그가 "정밀하게 관찰했

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실제로 관찰한 특징비율은 몇 퍼센트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이 감정서에서 수사기록 중의 진술서 2매, 김기설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2매 및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의 필적 이동여부에 관하여 모두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1991. 5. 15.자 감정서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증인은 위 대조자료에서 관찰된 동일특징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 되고 위 3가지 필적이 모두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퍼센트의 개념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자료에서 증인이 동일특징비율을 판별하기 위하여 대조특징으로 삼은 필순 또는 자획구성 또는 기타 필법상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답 : 그것은 1심때 세부적으로 어느 특징부분, 어느 특징부분하고 한참 기록하며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문 : 그것은 공동변호인인 박연철 변호사가 증인의 판단이 좀 틀리지 않느냐 해서 일부만 물어본 것이지, 그러한 증언을 한 일은 없습니다.

답 :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 : 그러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찰한 특징부분의 답변은 회피했으나, 이제부터 그가 "정밀하게 관찰"했다고 하는 동일특징비율에 관한 증언이 나옵니다.

문 : 동일특징비율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였나요

답 : 7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그러면 80퍼센트도 있을 수 있고 90퍼센

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답 : 9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 :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보여준 정창용씨의 저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동비율을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보시겠어요

답 :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이 사람이 이동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그냥 척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동일특징총수/대조특징총수×10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까

답 : 비율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퍼센트의 비율은 적어도 정창용씨의 문서감식에서 나온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었을 테니까요

문 : 증인이 이 공식에 따라 계산했다면 계산된 수치가 있을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 :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수학공식하듯이 71퍼센트다, 72퍼센트다라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창용씨 책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도 없고, 일본책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때 이미 그 특징이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으므로 마음속에 수치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된다' 라고 ...

김형영은 변호인이 감정의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일특징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수학공식 하듯이 71퍼센트다, 72퍼센트다라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고 하면서, 한술 더떠 "정창용씨 책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도 없고, 일본책에도 없습니다"라고 명백한 위증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정창용씨의 『문서감식의 연구』에 서술된 보편적인 통계적 방법에 기초한 필적감정의 원리

를 소개한 바 있는 바, 김형영 또한 이를 시인했던 것입니다(그의 논문 참조). 이러한 명백한 위증을 기점으로 하여 그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상이 못 미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의 증인은 그가 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한 모든 증언 중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 : 동일특징점을 증인이 세밀하게 보니까 그것이 동일필적이라고 생각되어 '그렇다면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동일특징점을 꼭 찾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7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하였다는 것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답 :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비율을 비교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수치를 계산해서 몇분의 몇 그렇게 하는 감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감정하면서 특징비율은 벌써 감정인의 가슴에서 벌써 '이것은 어디 어느 부분 어느 부분해서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감정인의 오랜 경험, 능력,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서 그런 것이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70퍼센트라고 말할 때 증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것은 없는가요.

답 :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지만, 문서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를 전문으로 십수년동안 수만건을 감정하는 사람이 감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들 세어서 '60퍼센트다', '71퍼센트다' 하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감정인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70퍼센트라는 것이 갑자기 증인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답 : 하나하나 특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 어떠한 특징을 비교했으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냐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나타났다면 막연하게 '70퍼센트 이상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답 : 막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능력으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감정인의 능력에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답 : 감정인의 능력과 객관적인 판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동일필적', '상이필적'이라고 감정하건 모든 부분 감정은 그런 원칙에 따라 비율이 나왔다는 것인가요.

답 :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통계와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얻은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문 : 구체적인 계산을 실제 한 적은 없었나요.

답 :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이전에 전문인의 입장에서 보아 벌써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정하면서 특징비율은 벌써 감정인의 가슴에서 벌써 '이것은 어디 어느 부분 어느 부분해서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하나 특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와 '전체'가 어떻게 동시에 양립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김형영은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통계"에서 얻은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가 말하는 통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방법에 관한 그의 진술은 우리의 상상 너머 저편에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이 사건에서 그가 행한 필적감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대화중 단절된 논리적 고리를 이어 그의 사고 주변에 닿으려고 해도, 그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김형영은 1심에서 "그 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했다"(공판기록 286쪽)고 하면서도, 원심에서는 구체적인 계산을 한 바도 없고 하는 법도 없다고 하므로(이러한 그의 증언은 "대조되는 필적자료에서 일정한 필적상의 특징비율을 선정한 후 이에 관한 비율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이동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한 양후열의 증언과도 모순된다. 공판기록 3321쪽 참조), 우리는 그의 증언 중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김형영이 "필적감정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그 특징의 총수를 100으로 기준하여 대조문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수의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양 문서의 필적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5% 이하이면 상이한 필적으로 판단하되, 그 감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회소성 있는 특징의 동일비율은 감정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일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실시하면서, 따라서 그가 한 감정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김형영의 동일특징비율 계산에 관한 증언과 함께 이 사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에서 인용한 것만을 보더라도 원심이 김형영의 감정을 믿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를 들어 김형영의 감정이 믿을 수 없음을 보였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그가 한 감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그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가 한 감정이란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마지막 권리인 이 재판절차에서 부디 이 부분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감정하면서 특징비율은 벌써 감정인의 가슴에서 벌써 '이것은 어디 어느 부분 어느 부분해서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는 김형영의 이 엉터리 증언, 이 증언

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증언이 감정방법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감정결과와 거짓말에 편승하여, 판결의 신성한 권위와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믿을 곳이 있으며, 마지막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6. 이 사건 수첩의 조작여부

전민련측이 1991. 5. 20. 김철에 제출한 김기철의 수첩은 그 수첩의 필적이 유서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김기철 본래의 수첩이나 아니냐는 김형영의 이 사건 필적감정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증거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판단은 특별히 신중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일 이 수첩이 조작되었다면 그것은 한점의 의혹도 없는 논리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가설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즉 유서대필이라는 가정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거나, 이를 감추기 위하여 김군의 수첩인 것처럼 조작한 후, 다시 이것을 김철에 제출하여 김군의 수첩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발상이 너무나 우리의 논리적 감각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1심 변론요지서에서 상세히 지적하였지만, 만일 김군의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 김군 본래의 수첩, 피고인의 수첩, 떨어진 채로 끼워있는 전화번호 기재부분을 뜯어낸 수첩 등 3개의 수첩이 동원되었다는 가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 또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셋째, 김철은 이 사건 수첩이 본래 피고인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여기에 진짜 김군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베껴 썼다는 주장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수첩에는 적어도 상당부분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전혀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넷째, 홍성은이 연대에서 전민련 실무자인 원순용에게 이 사건 수첩을 건네준 1991. 5. 8. 오후 무렵부터 5. 20. 검찰에 제출될 때까지 위 수첩은 연대내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위 수첩은 1991. 5. 13.부터 종이상자에 넣어진 채로 명지대로 옮겨졌다가 5. 15. 다시 연세대로 보내졌습니다(이보은의 증언, 공판기록 2479, 2480쪽),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이 1991. 5. 16.부터 5. 18. 사이에 이 수첩을 꺼낸 후, 피고인의 수첩에 그 내용을 옮겨적고, 다른 제3의 수첩 전화번호 3장을 뜯어 여기에 다시 김기철의 수첩 전화번호에 기재된 내용을 옮긴 다음, 이 석장을 피고인의 수첩에 기워 위 3일중의 어느 날에 다시 원래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넣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공판조서 85쪽). 이 논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첩의 행방을 계속 알고 있었고, 당시 수첩이 보관되어 있던 총무국 사람들의 모든 눈을 피해서 봉합이 된 종이상자를 열고 김군의 수첩을 꺼냈다가, 다시 조작된 수첩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설정 또한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의문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되어 검찰에 제출될 개연성은 그것이 본래의 김군 수첩일 가능성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논리대로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증거들이 이러한 의문스러운 상황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증거에 있어서 우월하고, 그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기 어려우리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원심판결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첩의 총면수와 상호간의 순서에 관하여 홍성은이 제출한 전민련 수첩과 모든 형상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수첩에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

부분 3매와 수첩 본체의 잔류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첩은 조작되었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수첩의 형상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떨어진 부분이 전혀 없을 때의 완전하게 재본된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이 사건 수첩이 과연 떨어진 부분이 없었을 경우, 위 홍성은의 수첩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할 것이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수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으며,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수첩과 홍성은의 수첩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원심판결의 이 사건 수첩의 잔류부분 일부와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 용지 3매와의 절취선 불일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김형영의 감정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형영의 이 사건 필적감정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첩의 절취선의 불일치에 관한 김형영의 감정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감정인은 떨어져 나가 끼워져 있는 3장의 전화번호 기재용지의 절취선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잔류부분과의 일치여부와 연필로 기재한 부분의 필압유무에 관하여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적외선 현미경, 필흔재생기 등에 의한 각각 절취선의 일치여부를 감정한 것이므로 본원이 위 감정서에 토대로 어느모로 보나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 중 적어도 2장이 원래의 것과 다르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판결은 위 감정이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적외선현미경, 필흔재생기를 사용해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수첩의 절취선의 불일치 여부에 관한 김형영의 1991. 5. 25.자 및 5. 29.자 감정서 어디에도 위와 같은 기구를 모두 사용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찍었다는 사진이 몇장 첨부되어

있을 뿐입니다.

증인 김형영은 "현미경과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를 주로 이용하여 관찰 실험하였습니다. 적외선현미경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필압이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필흔재생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공판기록 259쪽), "현미경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그것이 잘 나오지 않아 늦어졌습니다(공판기록 277쪽), "실체현미경으로 찍은 것이며 배율은 모릅니다"(공판기록 300쪽)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입체현미경과 적외선현미경 등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인은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와 필흔재생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는 기구의 성격상 주로 인장의 위조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대조되는 두개의 인장을 서로 겹쳐 '투영'시켜 봄으로써 그 일치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필흔재생기를 사용한 결과도 전혀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영이나 양후열 모두 이 사건 감정서 외에는 따로 관련자료나 기록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 필흔재생기를 사용하여 조사하여 보았더라면 최소한 그 영상자료 사진 또는 필름이라도 있어야 할 터이므로 필흔재생기를 사용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상술한 기구를 열거하면서 이를 토대로 김형영의 감정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은 잘못입니다. 원심은 위 감정서나 김형영의 증언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원심이 김형영의 감정서 중 채택한 부분은 동인이 위 감정서에 첨부한 절취선이 불일치하다는 취지로 붙여진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말하자면 사진의 영상이나 과정을 재생시켜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감정된 것인지 사후적 검증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 성격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비단 김형영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했다라도 이러한 오류여부의 검증불능이라는 사정때문에 그 감정서 내용 자체도 오류 여부가 완전히 없을 수 없음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자료는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

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아니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느냐의 선택뿐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위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임의 자명하므로, 불가피하게 이 감정 전반의 과정 및 이와 관련된 김형영의 증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형영의 이 사진자료는 제3자가 보기에 대단히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김형영은 이 사건 수첩의 총매수, 재본의 정도 및 유형, 떨어진 전화번호 기재 용지 3매의 위 수첩상의 순서 및 그 3매 자체의 순서를 물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으며, 완전하게 재본된 다른 수첩과 대조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첩의 잔류부분도 대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특정도 하지 아니한 채,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관찰하였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잔류 부분은 3매 정도로써"라고 1991. 5. 29.자 감정서(2)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김형영은 변호인이 "이 감정서의 감정결과 가.항을 보면, 수첩의 찢어진 부분에서는 절취선에 잔류상태가 돌출되어 나타나 있는 바 잔류형태는 '3매 정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잔류부분의 매수가 3매인지 4매인지 또는 5매인지 확실치 않다는 뜻입니까"라고 질문하였던 바, "검사에게 4매로 들었는데 나타난 것은 3매여서 그렇게 감정서에 기재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정인은 의뢰자의 주관어 어떻게 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함이 명백한데도, 검사에게 4매로 들었다고 해서 왜 그가 관찰한 3매와 다르게 애매하게 '3매 정도'라고 기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첩 본체에 붙어 있었던 위 다섯째장, 여섯째장의 전화번호 기재용지와 모눈종이 2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 네장이 각기 떨어져 나가 첫째장(전면 인쇄된 규약, 뒷면 전화번호 기재 용지) 한장은 완전히 없어졌고, ... 위 수첩에 붙어 있었던 다섯째장, 여섯째장 2장을 기준으로 그 다섯째장 앞부분과 여섯째장 뒷부분에 각기 떨어

저 나간 용지의 잔류부분이 수첩 본체를 제본할 때 사용한 접착제 조각과 함께 붙어 있으나 뒷부분 잔류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맨 뒷부분에서 떨어져 없어져버린 모눈종이 3장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 하고"라고 실시하고 있는 바(이 부분의 전제가 오류 일 수 있음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원심 설시를 그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첩의 잔류부분은 "위 수첩에 붙어 있었던 다섯째장, 여섯째장 2장"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앞에 떨어져 나간 4장에 대한 잔류부분 4매, 그뒤에 떨어져 나간 모눈종이 3장에 대한 잔류부분 3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첩의 잔류부분은 위 둘을 합하여 최소한 7매 이상이므로, 이 사건 수첩의 총매수나 수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용지의 상호순서를 모르고 있었던 김형영으로서는 마땅히 위 잔류부분 7매 모두에 대하여 절취선의 불일치 여부를 감정했어야 합니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감정의 정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순서를 알고 있더라도 7매 모두에 대하여 조사 했어야 한다).

나아가 그가 어떤 영감에 의하여 그랬는지는 모르나 원심판결 실시결과와 같이 위 앞쪽의 떨어져 나간 4장의 잔류부분에 대하여만 절취선의 불일치 여부를 감정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의 잔류부분은 4매 이상이지 그의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 '3매 정도' 또는 그나 양후열의 증언(공판기록 326쪽, 공판기록 3337쪽) 대로 '3매' 일리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간 장수가 분명히 4매라면 그중 1매가 제본 당시부터 빠져 있었던 것이라면 모르되 상식적으로 접착제에 붙어서 반드시 잔류부분이 4매 남아 있어야 함은 명약관야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형영이나 양후열은 모두 현미경, 입체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관찰하였다고 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이구동성으로 '잔류부분은 3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형영이나 양후열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자신들도 앞쪽의 잔류부분이 4매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감추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인의 상식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급한 수준의 감정을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첩의 절취선의 불일치에 관한 앞서의 사진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이밖에 위 감정서 외에 홍성은의 이 사건 수첩의 형상에 관한 기억 또는 전화번호 기재상의 잘못에 관한 안혜정의 기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은의 기억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화번호는 증인 안혜정의 진술에 의하면 1986. 발령 받으면서 김군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김군 스스로 이 사건 수첩에 옮겨쓰면서 잘못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수첩이 김군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원심판결은 김형영의 감정서를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의에는 그밖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수첩이 김군의 것임을 밝힌 이효경, 최경환, 권범재, 서준식, 이보은, 이지혜 등의 증언과 증제 20의 1, 2호(수첩사본)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이 사건 업무일지의 조작여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업무일지를 피고인이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무일지의 조작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먼저 3매로 된 이 사건 업무일지에 관하여 김형영은 1991. 5. 15자 감정서에서 아무런 유보나 다른 의견 없이 업무일지와 김군의 유서 2매와 동일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새삼 확인할 필요없이 업무일지와 유서 2매가 동일필적이란 말은 업무일지 3매 전체와 유서가 동일인이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여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영은 위 감정결과가 업무일지 3매 전체와 유서필적과 동일필적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 연필글씨와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서필적과 동일필적으로 감정되었는데,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 업무일지에 있느냐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위와 같이 유서필적과 다른 부분은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공판기록 289면).

한편 위 맨 앞장 글씨와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는 유서필적과 이동비율을 감정해 본 결과 유사비율이 45퍼센트 이하로 판정이 나왔다고 함으로써(공판기록 290쪽), 유서를 쓴 사람과 위 글씨를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양후열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정서에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표현이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요"라는 원심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동일필적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만 처리하지, 문자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감정서를 쓴다는 것은 감정서를 작성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필적이 나왔고, 그 두 가지가 다른 사람의 필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위 두 부분의 필자가 유서를 쓴 사람과 '다른 사람'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형영이나 양후열이 뭐라고 우기던 간에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하다는 김형영의 감정결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결과와 문언상 업무일지 전체와 유서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일지 중 그가 다른 사람의 필적이라고 한 부분을 감정서에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서상 대체 어느 부분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인지 감정서를 받아보는 제3자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형영은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칸 파란글씨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내용이 감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업무일지 3매중 유서필적과 같다고 하는 연필로 쓴 글씨 부분도 그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예컨대 "46 속초동우전문대 정연석 학생, 분신 공동조사단 기자회견"에 관한 부분이 없고, 업무일지 마지막 셋째장도 사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수사기록 366쪽 내지 371쪽 참조), "유서필적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감정했다"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위 두 부분의 연필글씨가 과연 유서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인용한 그의 증언 모두가 사실이라 해도 업무일지에 관한 그의 감정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우며,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 감정했을 당시 그나 양후열의 증언대로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을 "유사비율 45퍼센트 이하"로 감정하였을 정도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나 이들의 감정경력에 비추어 결코 1991. 5. 15자 감정서의 기재처럼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감정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형영은 김사가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일한 부분만 감정대상으로 해당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감정의뢰 당시 요구했다고 하나, 유서를 누가 썼느냐가 수사의 핵심 이 사건에 있어서 김사가 그렇게 막연하게 의뢰하였을 리도 만무합니다.

한편 원심판결 또한 "위 업무일지상의 일부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고 김기철의 필적이 아닌 점으로 보아"라고 실시함으로써, 적어도 업무일지내에 제3자가 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형영과 양후열이 자인하고 원심판결도 인정하는 업무일지 맨 첫장과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가(이 양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원심판결은 일부 필적이 다르다고만 할 뿐 어느 부분이 위 두 부분인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필적이 다

르다'는 사실 인정은 김형영과 양후열의 증언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 두 부분을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은 이 사건 업무일지는 피고인이 결코 조작한 바가 없다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로, 업무일지 3매중 맨 앞장과 둘째장 다섯째 칸에 글씨를 쓴 사람이 업무일지상의 나머지 글씨를 쓴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은, 만일 이 업무일지가 조작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업무일지의 둘째장 다섯째 칸에 다른 사람의 글씨가 쓰여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만일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면, 피고인은 본래의 김군이 쓴 업무일지를 어딘가에 감추거나 폐기하고 대신 마치 김군이 쓴 것처럼 업무일지를 새로 써서(이때 김군 본래의 업무일지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거나 임의로 내용을 만들 수도 있겠다) 검찰에 제출토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일지의 두번째장은 피고인이 새로 만든 것인데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없이(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것도 피고인의 연필글씨 앞뒤 전후로 필기구를 구별하여 파란볼펜글씨를 써 넣었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혼자서 이 사건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피고인을 포함하여 두 사람 이상이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일지 조작의 목적은 "(1)업무일지는 김군이 썼다. (2)업무일지에 쓴 글씨와 유서글씨와는 동일필적이다. (3)따라서 유서도 김군이 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여러 사람이 써서 조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조작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심판결도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일지는 검찰에의 제출전에 피고인 외에도 김현수, 김형민, 정운서, 서준식, 이동진, 임무영 등 많은 사람들이(그

기억의 정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실제의 업무일지와 다르게 조작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그려보기 힘든 가설입니다.

요컨대 김형영, 양후열의 증언과 원심판결의 판시대로 이 사건 업무일지의 일부 글씨와 맨 앞장의 글씨, 둘째장 다섯째 칸의 파란글씨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 사건 업무일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 그대로임을 그 형상 자체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업무일지의 맨 앞장 글씨와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유서글씨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 감정시부터 그렇게 판정이 되었지만은 유서와의 동일필적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만 중점을 두어 감정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감정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가 장수도 석장이나 되고 글자수도 많을 뿐 아니라 예컨대 업무일지의 세번째장은 그의 감정서상 대비한 흔적이 없는데도, 유독 그중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유서글씨를 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썼다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가 이 사건 감정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의 성격상 업무일지의 각장과 유서글씨와의 이동여부를 다시 제3자에게 감정의뢰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제1심 법정 및 원심법정 증언시 그가 쓴 본래의 1991. 5. 15. 자 감정서 문면 그대로 업무일지 3매는 유서글씨와 동일필적이다고 했어도 사실은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왜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표시해야지 누락했느냐'고 추궁을 안 받았을 터이고, 원심판결도 "업무일지 첫째장과 둘째장의 파란색 부분에 특별한 관심은 두지 않고 동일한 필적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반드시 명확하다 할 수는 없으나"라고 구차하게 실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는 유서필적과 다른 글씨인 사실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피고인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쓴 이동진과 임무영의 눈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형영과 검찰도 고통(?)스럽기는 하나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일지에 이렇게 유서필적과 다른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통털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처음 나오고, 이어서 강제 연행한 이동진과 임무영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됩니다.

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일지 조작을 자백하라고 몰아치던 검찰이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은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공판기록 2323쪽).

"같이 저와 대면하고 있던 검사가 굉장히 당황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5분 후 검사 여러 분과 수사관 여러 분이 왔는데 굉장히 격앙되고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강신욱 부장검사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글씨냐 헛소리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신상규 검사는, 잘 기억은 나질 않지만 '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당황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만일 김형영의 증언대로 여러 사람이 썼을 것을 예상해서 유서와 동일필적 여부만 감정하라고 검사가 말했다면, 위와 같이 격앙되고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검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에 관하여 양후열은 다른 감정인들과 함께 김형영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나, 김형영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공판기록 3334쪽, 3391쪽 참조). 한편 김형영은 이와 같이 업무일지의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유서필적과 다른 사실에 대하여 감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검사에게 말해준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공판기록 339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영에 대한 이 사

건 제1심, 검사의 첫 증인신문에서 누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검사는 다음과 같이 물어 위와 같이 업무일지의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유서글씨와 다른 필적임을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공판기록 251쪽, 원심판결은 마치 이동진과 임무영이 검찰조사시 업무일지 맨 앞장 등을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닌 듯이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나, 아래의 문답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문 : 당시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한 필적이 고 나머지는 유서와 동일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업무일지를 유서와 대조감정함에 있어 앞장의 한칸과 두번째장의 5번째 칸 한줄(파란색 볼펜으로 쓰인 부분)에서는 유서와 동일한 필적상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아 감정서에 대조 자료로서 비교하지 않았는가요.

답 : 예,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쓰였을 지도 모르니 그중 유서와 같은 필적만 감정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전부 검토한 후 유서와 동일한 필적만 대상으로 감정하여 감정회보하였습니다.

피고인에 의한 업무일지 내의 맨 앞장과 둘째장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유서필적과 다른 사실의 발견, 이동진과 임무영에 의해 검찰의 강제연행 수사결과 위 두 부분에 대한 각각의 필적확인, 감정서 기재상 유서 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이 같다고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불명확하게 작성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맨 앞장 글씨와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유서필적과 유사비율 45퍼센트 이하로 상이한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되었으나 검사의 요구에 따라 감정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면서 맨 앞장 글씨와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다르게 판단된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김형영과 양후열의 증언, 김형영은 감정회보시 위와 같이 검사에게 위 두 부분이 유서필적과 다른 사실을 말해준 바 없다고 하는 증언,

그런데도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었는지 검사가 동인에 대한 첫 증인신문에서 동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맨 앞장 글씨와 둘째장의 다섯째칸 파란글씨가 유사글씨와 다르다고 확인한 사실, 업무일지의 맨 앞장과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를 중심으로 순환논법처럼 피고인 등과 검찰 및 감정인 김형영 사이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이 사실들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사실들은 모두 업무일지의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칸 글씨가 유사글씨와 다르며, 그 경위가 어떻게 든 간에 피고인, 검찰, 김형영이 이 사실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맨 앞장은 이동진의 글씨, 둘째장의 다섯째칸 글씨는 임무영의 글씨인 진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앞서와 같이 업무일지 내에 유사필적과 다른 필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실시하지 아니하는 한편(그러나 그것이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칸 파란글씨여야 함은 상술한 바와 같다) 맨 앞장 글씨는 이동진씨의 글씨, 둘째장의 다섯째칸 파란글씨는 임무영의 글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과 김형영 등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 사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거에 의하여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원심판결의 판단은 원심의 이 사건 사실인정의 전과정이 얼마나 진실과 유리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이동진, 임무영의 글씨라고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동인들이 위 글씨를 언제, 어떤 경위로 썼는지 잘 모르고 있고, 김기철군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업무일지에 이동진, 임무영이 어떤 내용을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글씨같다' 고만 하였다가 1심법정에서 자신들이 쓴 글씨라고 진술을 반복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앞서의 김형영 등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분석 외에, 이동진이나 임무영이 자신들의 행위에 관한 한 언제나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자신이 써 놓고서도 그것이 자기의 필적인지 모르는 일은 흔히 있기 마련이며, 쓴 내용이러던가 쓰게 된 계기가 특별한 일이어서 기억에 각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글들이 일기장이나 통상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문서 등에 연결되어 관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도 처음에는 업무일지 전체가 김기철이 쓴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또 검사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궁을 받다가 어느 순간 유사글씨와 다른 부분이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비로서 그의 업무과정에서 알고 있는 기억을 더듬어 이동진과 임무영의 글씨라고 추측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글씨 발견과정을 추측해 보면, 아마도 처음에는 다만 유사글씨와 다르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바로 이동진과 임무영의 글씨라고 확신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검찰도 처음에는 이 믿을 수 없는 발견에 대하여 크게 당황하며 반신반의하였다가 나름대로 관찰 또는 감정을 거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동진과 임무영을 '검거'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안기부까지 동원되어 이동진과 임무영은 '검거'되었고, 이들의 눈과, 이들이 자필로 쓴 진술서, 이들의 집에서 압수한 필적자료 등을 통한 객관적 검증에 의하여 맨 앞장의 글씨는 이동진, 둘째장 다섯째칸 글씨는 임무영이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동진과 임무영, 이 두 사람은 검찰이 검찰의 일관된 수사계획에 의하여 '검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검거'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일지를 보고 거기서 맨 앞장의 글씨는 이동진,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는 임무영이 쓴 것처럼 보인다라고 두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두 사람의 진술내용이 업무일지의 글씨에 한정되어 있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어느 날 각각 갑자기 검찰에 강제연행되어 언제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임무영은 유사대필의 진범으로 몰려 2일간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하여 전연 뜻밖에 업무일

지가 제시되었으며, 업무일지의 글씨에 관한 갖가지 위협 또는 유도신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업무일지 중 맨 앞장 글씨는 이동진의 글씨, 둘째장 다섯째칸 글씨는 임무영의 글씨인 사실을 검찰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조사가 끝난 후 이동진은 석방되었으나, 만 이틀동안 고문수사를 받은 임무영에 대하여는 진범으로 지목한 그 후유증이 두려워 영등하게 질시법 위반 등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죄목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확인 에 따라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심 법정에서 김형영에게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위 두 글씨와 유사글씨가 다른 사실을 신문, 확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원심은 이동진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심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나, 검찰에 '검거'된 상태에서 두 사람은 갑자기 던져진 업무일지를 보고 자신의 글씨를 찾아내기가 처음에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글씨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서,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가해진 수많은 질문들 중 극히 일부분을 그것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묘하게 일부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감춰질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이 법원에서 종전진술을 번복한 바도 없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업무일지의 일부 필적이 유사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업무일지의 맨 앞장 글씨가 이동진의 글씨로,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가 임무영의 글씨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이러한 왜곡된 판단은 이동진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글씨와 이 사건 업무일지의 맨 앞장 글씨를 서로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수사기록 924쪽<sup>2)</sup> 위 이동진의 자필진술서 4항 아래 부분에 보면 동인이 이

사건 업무일지의 맨 앞장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업무진행표라는 문건 중 맨 앞장의 '3. 20. 10時 30分 - 5.30. 경수노련 관련 경기도청 항의방문 및 대공본실 방문'의 필적은 본인의 필적으로 생각되며"라고 하여 위 글씨가 자신이 쓴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진술서에 자필로 쓴 내용의 글씨는 삼척 동자가 보기에 이 사건 업무일지의 맨 앞장 글씨가 본인의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호소합니다. 이 사건 업무일지의 맨 앞장 글씨는 글씨는 이동진이 쓴 것이며,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는 임무영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여서는 안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바탕으로, 업무일지 전체를,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도 업무일지를 조작되었다고 하고 싶으면, 업무일지의 맨 앞장 글씨는 이동진의 글씨이고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는 임무영의 글씨인 사실은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위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이유로 업무일지가 조작되었다고 하십시오. 위 사실을 법원이 3번 부인하는 것은 법원의 파멸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상식과 양심의 사명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8. 피고인의 검찰진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의 글씨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등의 몇 가지 글씨와 똑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 사건 유사는 대필된 것 같다"는 등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만일 이 사건 유사를 대필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 모순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유사를 쓴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기

2) 총자료집 I 책 518쪽 참조.

에 앞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원심판결은 체증법칙에 위반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1992. 6. 24 대법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용섭 피고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의자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판결 목 1년전에 명동성당에서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공판이 개시되면 그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피고인이 명동성당 앞에서 검찰에 구속된 직후부터 철저히 유린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잠을 안재우고 온갖 위협과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커녕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가하는 강압적인 수사를 끊임없이 가하여, 결국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입니다(참고로 첨부한 91. 6. 24자 동아일보, 6. 25. 및 6. 26.자 각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출두 직전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진술이 묵비권이냐"는 등(공판기록 149쪽)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 전원과 담당수사관들 십수명을 동원하여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협하고, 잠을 안재우는 한편 변호인 접견까지 불허하여 피고인을 완전히 외부로부터 고립, 격리시켜 놓았습니다(수사기록 714쪽, "피의자가 ... 오랜 시간 동안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판기록 1106, "피고인은 질술 거부, 부인 등을 일삼으며" 등의 검사 발언은 진술거부권 침해의 상징적인 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변호인 접견도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후에야 이루어졌으며(수사기록 747쪽 참조), 변호인 접견 자리에서도 담당검사가 입회하여 모든 접견내용을 청취하는 등 헌법상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침해함으로써,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심리적으로 극도의 억압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9. 맺 는 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판단이나, 난마처럼 얽힌 사실관계를 헤쳐보이는 뛰어난 예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원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과 양식, 그리고 진실의 맑은 눈으로 이 사건을 보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시험하는 자리이며, 피고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한,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은 모든 사람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동시에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검찰에 의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는 마치 우리 사회가 우리의 양심과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애정을 송두리채 상실한 채 광적인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충격과 현실의 일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유서대필이라는 누명을 씌워 온갖 탈법적인 강압수사를 자행한 검찰이 그랬고, 피고인이 진범인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한 언론이 그랬고, 무엇이 염려되어 그러는지 모르나 스스로도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및 원심이 그러하였습니다. 단언컨대 이 사건은 드러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가 너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여 대립되는, 그

변호사 유 현 석  
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박 연 철  
변호사 이 석 태

래서 아무리 냉정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뻔한 사건을 우리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허구와 허위의식 속에서 시달려 왔습니다.

대 법 원 귀 중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이 사건 유서는 김기철군이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사실의 확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해진 이 엄청난 멍에를 벗겨 그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본질적으로 모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스러운 절차를 밟아 말하는 것도, 국민 모두를 향해서, 국민 모두를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한계내에서, 이러한 단순한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짓밟는 자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깃들어 있는 양심만큼 무서운 증인은 없으며, 그것처럼 무서운 기소자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순간일 것이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양심의 역사적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카트라이트는 "진리야 말로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의 양심을 짓밟는 자가 있다면 그들 가련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불멸의 언어를 말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다  
TRUTH CANNOT DIE"

1992. 7. 13.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자료 B-22

한국 대법원 귀 증

우리는 강기훈씨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씨의 필적감정과 김씨 여자친구의 법정 증언이 있는 후, 우리는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강기훈씨 사건에 대하여 귀 재판부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1992. 7. 16.

日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마에지마 무네토시(前島宗甫)

자료 B-23

존경하는 대법원장 귀하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올리는 이유는 오는 7월 24일 예정된 강기훈형제의 공판과 관련하여 우리의 바램과 우려를 전하는 바입니다.

작년 5월 고 강경대형제의 죽음 이후 꽃다운 젊은 이들이 뒤이어 죽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사제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늘길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강기훈 형제의 구속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과연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명의 착하고 어린 젊은이를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매도하는 언론과 검찰의 태도속에서 우리는 2000년전의 십자가상의 예수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강군이 그 동료의 죽음의 배후라고 몰아쳐대는 언론과 수사기관 앞에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며 일말의 희망을 가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에서는 그 실제적 진실이 모두 밝혀져 모두에게 희망을 주리라는 믿음은 1심과 2심을 거치며 커다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강군의 결백을 입증할 수많은 자료들이 검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의해 무시되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가 그 본래적 존엄을 지킬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강군에 대한 재판은 단순히 한 젊은이의 재판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양심이 과연 재판부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가를 입증할 재판인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귀 법원의 재판이 이 나라가 진정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임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해도 정의의 잣대로 모든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이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재판부의 용기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솔로몬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2년 7월 21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자료 라-1-1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92도1148 자살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강 기 훈 (일명 :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총무부장

주 거 서울

본 적 서울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유현석, 이석태, 박연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0. 선고,

92노 401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3일을 위 징역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1)형법 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 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바, 이 사건 자살방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김기설이 공소장에 기재된 상황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어느

날에 서울 어느 곳에서 리포트 용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의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유서내용에 의하여 위 김기설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서준식, 김선택 등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 전민련; 이하 전민련이라고 한다)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動因)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공소임이 명백하여 공소장에 자살방조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2) 또한 그 공소사실에 일시와 장소로서 '1991. 4. 27.경부터 같은 5. 8.까지의 어느 날 서울 어느 곳에서'로 되어 있고, 유서 작성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유서대필 여부가 문제로 되는 한 이는 자살자와 유서대필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결국 그 유서가 대필되었는지 여부가 그 범죄성립의 핵심을 이루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자살이 이미 실행되어 버렸고 그 유서가 입수되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일시와 장소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서대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현장부재 등의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로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김기설의 분신자살 경위에 대하여



김기설은 1965. 11. 27. 생으로서 6세 무렵에 생모를 여윈 채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경기 파주군 광탄상고 1학년때 상경하여 큰 누나 김화자 집에서 그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한때 대학입학시험자격 검증고시 준비를 하다가 1965. 12. 경부터 1968. 6. 경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 1969년부터 성남민주화청년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90. 12. 말부터는 전민련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면서 1991. 4. 26. 이른바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시위 열기가 고조되고 재야운동권 인사들이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면서 전민련도 그 대책회의에 참가하게 되자 전민련 파견자로서 위 대책회의 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연세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김기설은 처음 전민련 총무국에 근무할 때 실제로는 다르게 학력을 속여 한양대학교 3학년 중퇴자로 행세하였고 이미 그전부터 전민련 총무국에 근무하던 피고인과 일상접촉을 통해 친하게 되자 1991. 1. 20. 피고인과 그 애인 이명미의 소개로 이명미의 대학동창생인 홍성운을 소개받아 동인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김기설은 동인에게도 한양대학교 3학년 중퇴자로 행세한 사실, 그후 김기설은 홍성운과 주 1, 2회 가랑 만나 교제하였고 같은 해 3. 17. 춘천 청평사에 놀러갔다가 홍성운에게 청혼을 하였고(그달 말경에는 중학교 동창생 조원혁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중순경에는 둘째 누나 김화경에게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여, 누나들이 결혼하면 방을 얻어주어야겠다고 상의하기도 하였다), 홍성운도 위 청혼에 대해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4. 말에서 5. 초에 이르러서는 김기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사실, 한편 김기설은 박경민으로부터 한국방송통신대생 몇명의 모임인 '소리새벽'의 진로를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 5.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박경민, 송국영, 이지혜 등 회원들과 첫 모임을 갖고 자기 소개와 모임의 진로 등을 논의하였는데, 김기설은 위 모임의 지도자로 추대되어 있는 셈이고 그 회원들보다 대체로 6, 7세 정도 나이가 많은 사회인인데도, 모임 도중에 위 모임의 성격이나 체신에 걸맞지 않게 두 차례나 술을 사오게 하여 낮부터 술을 많이 마셨는가 하

면, 모임이 끝난 후에도 회원들과 식당과 술집을 옮겨 다니며 대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끝내는 여자들인 이지혜, 송국영과 함께 술을 사들고 백제여관에 들어가 그곳에서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신변잡담을 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고 울기까지 하면서 "5. 8.에 자살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겠다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다."고 5. 8.에 자살하려는 결심을 토로하였고, 그때 "왜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의문이 난다."고 물어보는 송국영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개새끼들" "죽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며, 5. 6. 오후까지 함께 있으면서 자살을 만류하는 이지혜에게 다시 5. 8. 자살할 계획을 확인해 준 사실, 또한 김기설은 이를 후 19:30경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홍성운을 만나 "분신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분신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같은가"라는 등 심각한 말을 하여, 홍성운은 전날과 그날 김기설과 두 차례 전화할 때에도 "당분간 못 만날 것 같다. 잘 살아라"는 등의 말을 들은 바 있고 그때는 이른바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분신자살이 잇따르던 상황이어서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것으로 눈치채고 울면서 "우리는 왜 이제까지 만났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나"고 애원한 항의반 자살하려는 결심을 들리도록 노력하였으나, 김기설은 끝내 22:30경 홍성운을 아련 전철역 플랫폼에 밀어넣다싶이 들여보낸 뒤 홍성운과 헤어져 버린 사실, 또한 이지혜와 박경민 등이 전민련측에 알리고 전민련을 통하여, 김기설이 위와 같이 이지혜, 송국영에게 같은 해 5. 8. 자살할 계획을 토로한 사실을 알게 된 임근재는 5. 7. 22:00경 그 자취방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 자취방으로 들어오는 김기설을 만나 부근 포장마차로 데려가 술을 마셨고, 임근재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전민련 관계자 이보은(여)와 함께 그곳에서 대학로까지 가서 함께 지냈는데, 김기설은 5. 8. 05:30경 전화를 걸겠다고 간 뒤 잠적하였고, 그날 06:30경 홍성운에게 신촌 이대 부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뒤 신나 두 통을 신문에 싸들고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 올라가 그날 08:07경 신나를 몸에 뿌리고

라이타 불을 붙인 뒤 약 16미터 아래 땅바닥에 떨어져 분신자살하였고, 그때 이 사건 유서 2장이 위 옥상에 벗어놓은 상의에 넣어져 있는 채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유서 2장 중 부모에 대한 유서에는, 김기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 1학년 중퇴 후부터 의지해 왔고 특히 자살 7개월 전 금 2,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당연히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을 큰 누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특히 어버이날을 골라 부모에게 인륜상 차마 하여서는 안될, 건전한 일반인이 가장 불효라고 보는 자살을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한 효도를 마지막으로 하려 한다고 하고, 자살후의 처리를 부모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말미에 '기설'이라고 이름만을 기재하고 다른 존칭을 쓰지 않은데 반하여 그 제3자에게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김기설 본인이 쓴 마지막 유서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기설은 이지혜 등을 만난 1991. 5. 5. 전에 이미 자살을 계획하였고, 5. 5. 이지혜 등을 만났을 때 내심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뒤 그들에게 5. 8. 자살할 계획을 털어놓은 것이 지 그날 즉흥적으로 자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5. 8. 자살을 고집할 사정이 없는 데도 결혼까지 염두에 둔 여자의 간절한 만류까지 끝내 뿌리치고 이지혜 등에게 공연한 대로 5. 8. 쫓기듯이 분신자살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는 일반인의 사회 통념을 뛰어넘은 자살로서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련에서 자살하려 한 것임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수첩의 조작 여부에 대하여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날 김기설의 유해가 안치된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영안실에서 김기설의 둘째, 셋째 누나들이 이 사건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1991. 5. 10.에는 김기설의 셋째 자형인 장병호가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유서 글씨가 김기설의 것이 아니니 그 사망경위를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이 있는 책표지 2장(검사가 제출한 증제-1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날 김기설이 소속되었던 전민련 관계자에게 김기설의 평소 필적자료를 요구하여 전민련측에서 같은 달 11. 김기설이 기재하던 일지라고 하면서 업무일지(검사가 제출한 증제-1호)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검찰은 같은 달 16. 홍성운이 김기설의 분신자살 전날 그로부터 동인의 수첩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전민련측에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민련 관계자에게 그 수첩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전민련측에서는 같은 달 20. 그 수첩이라면서 이 사건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첩이 바로 김기설이 홍성운에게 주고 홍성운이 전민련에 전달한 그 수첩인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첩의 본체와 글씨가 써 있는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의 각 절취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은 원래부터 이 사건 수첩에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수첩에 붙어 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전화번호 기재용지 3장의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문자 밑에 강한 필압형태가 나타나 있으나 그 뒷장에 나타나 있어야 할 필압흔적이 필흔재생기에 의하여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위 수첩을 김기설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전민련에 제출한 홍성운의 진술에 의하면 전화번호 기재용지 등에 기재된 글자의 필기구와 색깔이 원래와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전화번호 기재용지에 적혀 있는 안해정은 김기설의 광탄중학교 동창생으로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왔고, 김기설은 1991. 4. 초순경까지 안해정이 근무하던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과로 수시로 전화를 하곤 하였으며, 그 전화번호는 '386-3766'인데도 위 전화번호 기재용지의 안해정란에는 이와 다르게 '386-2776'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이 작성한 1991. 5. 25.자 및 5. 29.자 각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수첩의 필적이 김기설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첩은 원래 김기설이 남긴 수첩 그대로가 아니고 김기설의 분신자살 후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업무일지 조작 여부에 대하여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위 증제-1호)는 표지를

제외한 3장으로, 1991. 3. 20부터 같은 해 4. 15까지 그 행사 내용 등이 적혀 있는 바, 그 첫장에는 3. 20.자 행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채 그 아래 부분이 찢어져 남아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장에는 상단에 4. 15.자 행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채 그 아래 부분은 여백이며, 둘째장 다섯째 칸 '4. 9. 4월혁명 기념대회 준비' 부분만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민련 조직국 부장 김현수는, 전민련 상임의장 신창관 및 서울민 협회장 최규성으로부터 업무일지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김기설의 책상 위 책꽂이에서 이를 찾아 피고인 및 김형민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파란색 펜으로 쓴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 정운서도 전민련 사무실에 들렀다가 업무일지를 받아 위 최규성에게 전달해줄라는 부탁을 받아서 보았는데 연필로 써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래의 업무일지인지 의심이 가고, 한편 전민련 사회국 부장 임무영은 제1심 법정에서 둘째 장 파란 글씨는 자신이 썼고 전민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위 업무일지는 공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김기설이 편의상 만들어 기재하여 왔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이 기록한 일은 없고, 그 둘째 장의 파란색 볼펜글씨가 자신의 글씨체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기재한 것인지, 언제, 왜 기재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전민련 사회국 부장 이동진도 제1심 법정에서 첫째 장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어 작성시기나 기간, 모양은 알 수 없고, 사회국 업무진행표를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회국 업무일지의 첫째 장 첫 부분은 기재하였다면 그 업무일지를 동인이 처음 썼는가 아니면 그 앞의 부분을 누가 이미 작성하였는가, 증인이 기재할 때에도 첫째 장의 5분의 4 가량이 찢어져 없어졌는가"는 검사의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초 위 업무일지가 전민련 사회국의 공식일지가 아니고 김기설의 개인적인 필요(전민련 사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로 사용되던 것이라면, 이동진,

임무영이 그 일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더러, 위 일지의 기재내용은 1991. 3. 20.부터 같은 해 4. 15.까지의 것이어서 이 사건 검찰 조사시와 근접한 시기의 것이고 전민련에 관련된 행사들이므로 만일 동인들이 그 기재를 하였다면 위 행사내용과 대비하여 동인들이 기재한 이유를 쉽사리 떠올릴 수 있어서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보이는 바, '김기설이 그 업무일지를 기재하는 것을 본 일은 없다', '김기설의 필적을 잘 모른다'는 동인들의 진술까지 종합하면 위 업무일지의 첫째 장과 둘째 장의 파란글씨 부분에 관하여 동인들이 그후 기억이 새롭게 되살아났다는 연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당초의 검찰 진술을 반복하여 위 필적이 동인들의 것 이라거나 동인들이 기재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하여도 이를 쉽사리 믿어 이 부분을 동인들이 각 기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초 위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첫째 장과 둘째 장의 파란글씨 부분이 이동진과 임무영의 글씨같다고만 하였으며, 이동진, 임무영이 제1심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바꿨을 뿐인데도,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이동진과 임무영이 위 부분들을 기재하였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작성의 감정서 등을 공박하고 있는 점, 위 업무일지에는 뒤에 처분 행사가 거꾸로 앞에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김형영이 작성한 1991. 5. 25.자 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위 업무일지의 일부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요 김기설의 필적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들로 보아, 위 업무일지 역시 피고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메모지(검사가 제출한 증거7-2호)에 대하여

홍성은의 검찰 제2회 진술에 의하면, 이는 김기설이 자기가 보기도 잘 쓴 글이라고 생각된다며 읽어 보라고 주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위 김형영이 작성한 1991. 5. 29.자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첩과 위 메모지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위 메모지는 김기설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에 대하여

홍성은이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헤어져 집에 돌아온 날인 같은 달 7. 23.30경 참담한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은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세번이나 되풀이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1991. 5. 5. 14:00경 이영미 집에서 이영미, 김진수, 홍성은과 만났을 때 그곳과 호프집, 포장마차에서 다음 날 00:30경 까지 늦도록 술을 마신 일이 있었기에 이를 사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때 홍성은 등에게 특별히 실수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고 따라서 홍성은도 그때 피고인이 어떤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한 일이 없을 뿐더러 홍성은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한 일이 없는 사실, 홍성은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때,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연락해달라면서 김기설 부친댁 전화번호를 두번이나 불러주었는데도, 피고인은 그후 이에 대해 전화번호를 불러준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디 전화번호인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일도 없다고 검찰 이래 진술하고 있는 바, 홍성은의 참담한 심정이나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집으로 연락해달라는 취지로 보아, 같은 전민련 상근근무자인 김기설에게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쉽사리 간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에도, 홍성은에게 무슨 일이나고 물어보거나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8. 아침 텔레비전뉴스를 보고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였음을 알았다면서도 그 직후 이영미가 전화를 하여 김기설이 분신자살하였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 홍성은은 물론 이영미도 그날 12:00까지는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연세대 영안실에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날 14:00경에야 그곳에 나타나는 등 자살한 김기설과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사실, 그리고 홍성은이 같은 달 10. 15:00경 피고인을 찾아와 검찰에 출두할 경우의 진술대책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말 조심 하고,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하였고, 홍성은의 수첩(검사가 제출한 증거7-1호)에 이미 사망

한 김기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둔 사실, 게다가 피고인과 김진수, 홍성은, 이영미가 같은 달 12. 21:00경 종로5가 도위취호프집에서 만나, 김진수가 "내가 최덕수 등 분신사건 장례 등에 관여하였지만, 이번 일(김기설 분신자살 사건을 지칭하는 것)에 여자인 홍성은을 개입시킨 것이 최대의 실수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미 앞질러진 물이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5. 5. 이영미 집에서 만난 날 홍성은에게 "김기설이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보라"고 말해 놓고는, 분신자살 후인 5. 10.에는 동인에게 "김기설이 죽기 일주일 전쯤부터 김기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모순되는 말까지 한 사실, 홍성은이 같은 달 13. 검찰에 1차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3일 후 2차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어머니를 홍성은의 집에 보내어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왜 변호사를 안 대느냐. 홍양이 얘기를 잘 하지 못하면 아들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단순히 참고인에 지나지 않은 홍성은을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대응하도록 적극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고 강경대군 장례행렬에 참가하였다가 그날 연대앞 로터리에서 일간지를 보고 자신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을 처음 알았다고 변명하는 바, 그런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달 13.부터 귀가하지 않고 전민련 사무실, 연세대학교, 명동성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성에 참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도 검찰의 소환이나 사전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해 오다가 한달이 넘은 같은 해 6. 26.에야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업무일지를 본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그후 김형민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도 1991. 5. 10. 전민련 사무실에서 이를 본 일이 있음이 밝혀진 뒤에야 진술을 번복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양심과 명예를 걸고 결백하다', '과학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임의성을 인정한 검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수첩, 업무일지, 이 사건 유서의 글씨는 모두 같아 보이는데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고 다른 한 사람의 글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 업무일지, 수첩의 글씨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검사가 제출한 중

제8-1호, 서울지검 북부지청 85형제43084호 기록에 편철된 것)의 몇가지 글씨와 똑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하였는 바, 비록 위 진술들이 위 김형영의 감정서에 터잡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자신이 무죄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키는 한 얼마든지 그 감정서 내용대로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도, '위 필적들은 서로 같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일은 없다'고 답변받은 모순일 뿐더러, 유서 필적이 이 사건 수첩과 업무일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필적과 같다는 진술부분은 이 사건 감정서들의 감정결과와 일치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높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밖의 피고인의 행적이나 진술 취지 역시 이 사건 유서대필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이 작성한 감정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김형영과 공동심의회에 참여한 같은 감정인 양후열은, 한결같이 최초의 감정의뢰와 관련된 추가감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편의상 그 접수를 생략하고, 여러 건의 감정의뢰를 한데 묶어 회보해 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추가감정의뢰 중 일부 의뢰서에 대한 접수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처리하면서 의뢰공문과의 대조번호 기재가 누락된 것을 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회보가 되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제 2-1호(김기설이 작성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증제 3-1호(책표지 2장)와 이 사건 유서의 필적감정소견은 당초 대조자료 부족으로 일단 판정을 유보하였다가 추가자료의 현출로 대조자료가 충분해져서 김기설의 필적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기에 이 사건 유서와 다른 필적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접수기재가 생략되었다는 흠은, 추가 관련된 여러 건의 감정의뢰 중의 하나이고 결국 감정의뢰 사항에 대한 회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의외기관과의 문제일 뿐이며, 감정방법을 부동문자로 처리하는 것은 업무의 증가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의 여하만으로는 감정내용의 신빙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문제는 그 감정내용의 신빙성에 귀착된다.

원래 필적은 물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점과 선이 합쳐서 성립되는 것이고, 그 구성은 개인차에 의하여 천태만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점과 선이 합친 대소의 형태에 개인의 특징이 현출되며, 필적감정은 이러한 교유의 특징을 발견하여 필적의 이동을 식별하는 것이나, 현재 그 필적감정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한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여러가지 합당한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감정인 김형영이 뽑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필적대조표의 희소성 있는 특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경험 및 그 연구와 전문지식에 의하여 선정 제시된 것이고, 위 필적대조표에 나타난 필적을 보건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필적은 일반인의 통상적인 필적과 달리 아주 독특하여 동일한 반면에, 이들과 김기설의 필적은 판이한 뿐더러,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첩 등이 조작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유서의 필적 등이 피고인의 필적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 사건 감정서의 신빙성을 보태주는 자료가 되는 점에서 이 사건 감정서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본국인 오오니시 요시오의 감정서는 위 감정서와 다른 감정결과를 담고 있으나, 동인은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ㄹ" "ㄴ" "ㄷ"과 같은 한글 자모를 알지 못하고 "ㅏ"와 "ㅑ", "ㅓ"와 "ㅕ", "ㅗ"와 "ㅛ"같은 평이한 글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제일교포 4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모음과 자음의 숫자를 세어 주고 동인들이 한글에 해서체와 행서체가 있다고 하므로 스스로는 잘 모르면서 이에 따랐다는 것일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 "ㄹ" "ㄴ" "ㄷ"의 필법을 중심으로 감정하고 있는 점에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희소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원래 사본으로 필적을 감정하면 필기구의 종류나 복사기의 성능, 상태에 따라 필압의 형태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이 잘 현출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 유서와 수첩 등을 사본으로 감정하고도 자신의 감정결과는 정확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인은 한글에서 자모가 정서체와 속필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유서 이외의 자료들(이 사건 수첩 이외에도 아래 변호인들이 제출한 송의여전 메모, 방명록 노트 등)이 모두 김기설의 필적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하여 감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감정서는 감정인으로서의 기본능력과 감정의 기본조건을 결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7) 기타 증거에 대하여

증인 안혜정이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김기설과 광탄중학교 동기 동창으로서 중학교 재학시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1985. 12경 군에 입대하여 1988. 6경 제대한 김기설로부터 군복무기간 중 10여통 이상 편지를 받았는데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다음 날인 1991. 5. 9. 위 영안실에서 유서 사본 1장을 얻은 뒤 파주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찾아낸 김기설의 카드 및 편지(검사가 제출한 증제13-1, 2호)와 대조해 보았으나 그 필적이 달라 보여 그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는 바, 위 김형영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필적은 이 사건 유서의 필적과는 상이하다는 것이고 이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8) 변호인들이 제출한 필적 관련 증거들에 대하여

(가) 증제1호(방명록)는 대학노트에 방명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장기본존을 위한 방명록인 데도 그 사연을 기재한 부분 두장이 모두 떨어져 있을 뿐더러, 위 방명록에 처음 사연을 기재하고 서명한 전현철의 진술에 의하면 그 방명록의 형상과 기재내용이 위 증 제1호와 다르다는 것이고, (나) 증제3호(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은 우선 김기설의 필

적이라는 부분이 찢어져 칫장에 핀으로 철해져 있고 필기구의 색깔이 광대순의 검찰 진술과 다르며, (다) 증제4-1, 2호(대유학보 원고 및 대유학보) 중 대유학보에는 기 기고자 성명이 이용복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위 대유학보 원고에는 그 기고자 성명이 없는 바, 이용복이 김기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도중에 다른 필적임이 분명한 원고도 끼워져 있고, (라) 증제5호(송의여전 메모)는, 이는 원래 1991. 5. 20. 저녁에 그 보관자들이 이보령, 민수진 등에 의하여 전민련측에 전달되었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이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음이 동인들의 진술로 보아 명백한데, 당시 이 사건 유서대필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측에서 자문하던 변호사 중 한 사람이 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일문일답식의 문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위 증제5호의 원본을 같은 달 21. 기자회견 후에 전민련에 전달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동인들은 처음 검찰진술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유서의 대필 여부 및 이 사건 수첩의 조작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원본 전달시기의 조작은 결국 그 원본 존재의 신빙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아니할 수 없는 데다가, 이보령, 민수진 등은 당시 유서대필 사건으로 화제가 된 때여서 위 메모를 찾았을 때 이를 유심히 보았으리라고 여겨지는 데도, 각 그 진술서에서 원본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모른대거나 당초 복사해둔 사본과 원본이 같은 것으로 믿고 있다는 투로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고, (마) 증제10호(방명록)는 장수가 다른 5류음의 종이가 합쳐져 비정상적으로 제본된 것으로서 그 지질이 서로 다르고 제본상태도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앞뒤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 등 그 방명록 자체로 원래의 것인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바) 증제23-1호(각서)는, 그 소지자라는 한원석의 경위설명서(증제23-2)의 기재와 원심법정 진술이 서로 다를 뿐더러, 동인은 원심 법정에서 금원을 대어한 사람과 김기설을 단지 소개하기만 하였다고 하면서 동인이 그 돈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렇게 대위변제한 후 김기설의 체권자로부터 돌려받은 약속어음을 구상도 받지 않고 김기설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러고도 그 변제시각까지 위 각

서에 명기해 꼭 변제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경험칙에 어긋나고, (바) 증제20-1, 2(수첩 사본)은 이 사건 수첩이 조작된 후의 복사본으로 보아야 하며, (사) 그밖의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이 명백한 전민련측에서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것들이거나 필체, 지수, 형식 등에 비추어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거나 그 필적 등이 유사 필적과 동일 또는 상이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일 뿐더러 원심이 인용한 위 증거들과 어긋나므로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9) 위와 같은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김기철의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과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록을 정사하던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이에 터잡은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에 가입하고 제1심 판사와 같은 서적과 유인물들을 소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단체는, 현 정부를 '미·일 제국주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 독점제벌의 무한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와 독점자본가 놈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서, 제반 '파쇼적 약법'과 '권력기구' '수탈적인 조세제도' 등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어 타도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의회주의적 방식, 점진적 교계의 방식으로는 그 타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타도의 방법론으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산가 등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무장봉기에 의한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을 제시하면서 군대 및 경찰의 해체와 혁

명군 창설, 자본 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경제의 수립 등을 이루어 공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조직강령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유인물 등은 그러한 민중혁명을 명시적 목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이 전혀 상정하지 아니하는 혁명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헌법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공범들에 대한 형사 제재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3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4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박 만 호

☐자료 A-33 (동아, 92.7.25.)

**姜基勳씨 有罪 확정**

「유서代筆」 원심대로 징역 3년 선고

大法院

**유서대필** 「유서」는 「유서대필」의 죄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서대필이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서대필죄는 「형법」 제202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유서대필죄의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이다. 유서대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피해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당한 유언자 또는 유언의 효력을 방해당한 유언의 수신회이다. 유서대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피해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당한 유언자 또는 유언의 효력을 방해당한 유언의 수신회이다. 유서대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피해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당한 유언자 또는 유언의 효력을 방해당한 유언의 수신회이다.

1992. 7. 24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박 만 호

증거에 비추어 유서의 필적이 김기철의 것이므로 유서대필죄를 인정할 수 없다. 「유서대필」의 죄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서대필이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서대필죄는 「형법」 제202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유서대필죄의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이다. 유서대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피해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당한 유언자 또는 유언의 효력을 방해당한 유언의 수신회이다. 유서대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유서대필죄의 피해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당한 유언자 또는 유언의 효력을 방해당한 유언의 수신회이다.